

발 간 등 록 번 호

57-6310000-000794-10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울산광역시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이 보고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1. 1.~12. 31.) 위원회 운영상황을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발간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시민 고충 결정사례를 담은 2022년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감사업무를 감사실로 일원화시켜 시민들의 고충민원만을 전담하는 전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 위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민간 전문가로 변경함으로 고충 처리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한해는 위원회의 조례가 개정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편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워크숍 개최하여 위원회 역할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앙정부의 고충민원 교육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가입을 추진하여 10월에 임시회원으로 승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 시민의 권익 기구로서 본분을 다하고, 행정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시청 실·국·본부는 물론 구·군 감사부서,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 고충 사례 해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울산시의 또 하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Contents



총평

9



위원회 운영 현황

1. 2022년 주요 활동	13
2. 위원회 구성 현황	14
3. 위원 자격 및 현황	15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6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9



위원회 운영 성과

1. 민선8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개편과 위원회 정비	29
2. 고충민원 웹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29
3.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해결로 시정 신뢰도 향상	29
4. 시민의 편의와 정서를 고려한 대민서비스 제공	30
5.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30
6.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권익기구로서 위상 제고	30
7. 제도개선을 통한 빈발·다수 민원 적극대응	31



IV

고충민원 처리 현황

1. 고충민원 처리 실적	35
2. 제도개선 분야 실적	52
3. 주요 처리사례	55

V

기타 활동 분야 실적

1. 시민고충민원상담실 운영	205
2.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06
3. 국제 옴부즈만기구 회원가입	207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역량강화	208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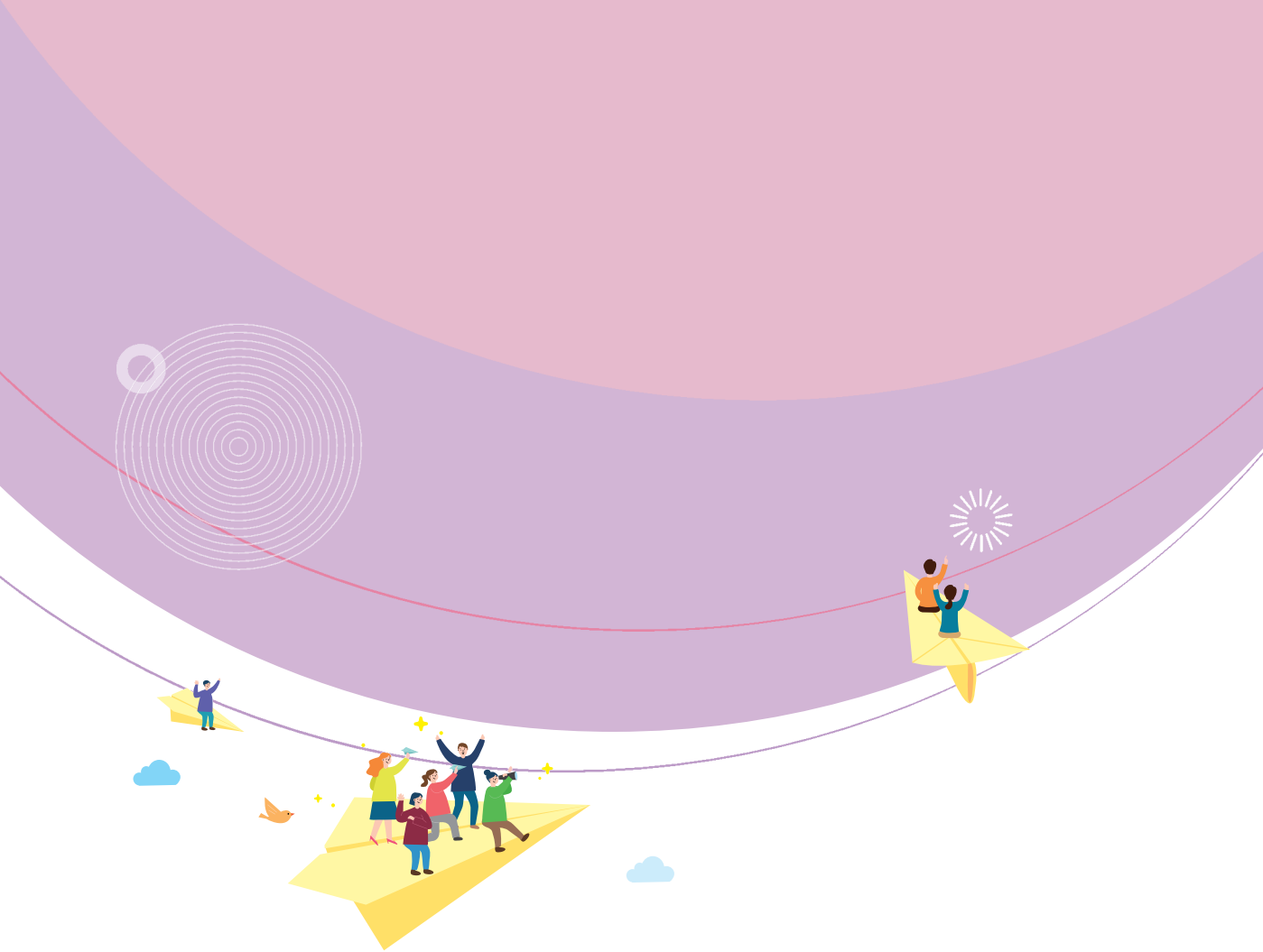
참고

1. 주요 언론 보도사례	211
2.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4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17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총평

1

총평



조직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개편과 업무 정상화 추진

- 합의제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좀더 가까이 민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조례·규칙 제·개정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제반 절차를 준수, 위원회 개편을 완료함
- 9. 28. 민간 신분의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됨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고충민원 관련 교육 참석과 자체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업무능력 배양



권익향상 활동 전개 및 권익기구로서 국내·외 위상 제고

- 전화·팩스 등 민원신청 방법의 다양화로 시민들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였으며, 제3자의 입장에서 권리침해·불편·부담 여부를 조사하고 해결함으로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2021년 세계옴부즈만협회의 정회원이 되었고 금년도에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의 임시회원 지위를 획득하여 권익보호기구로서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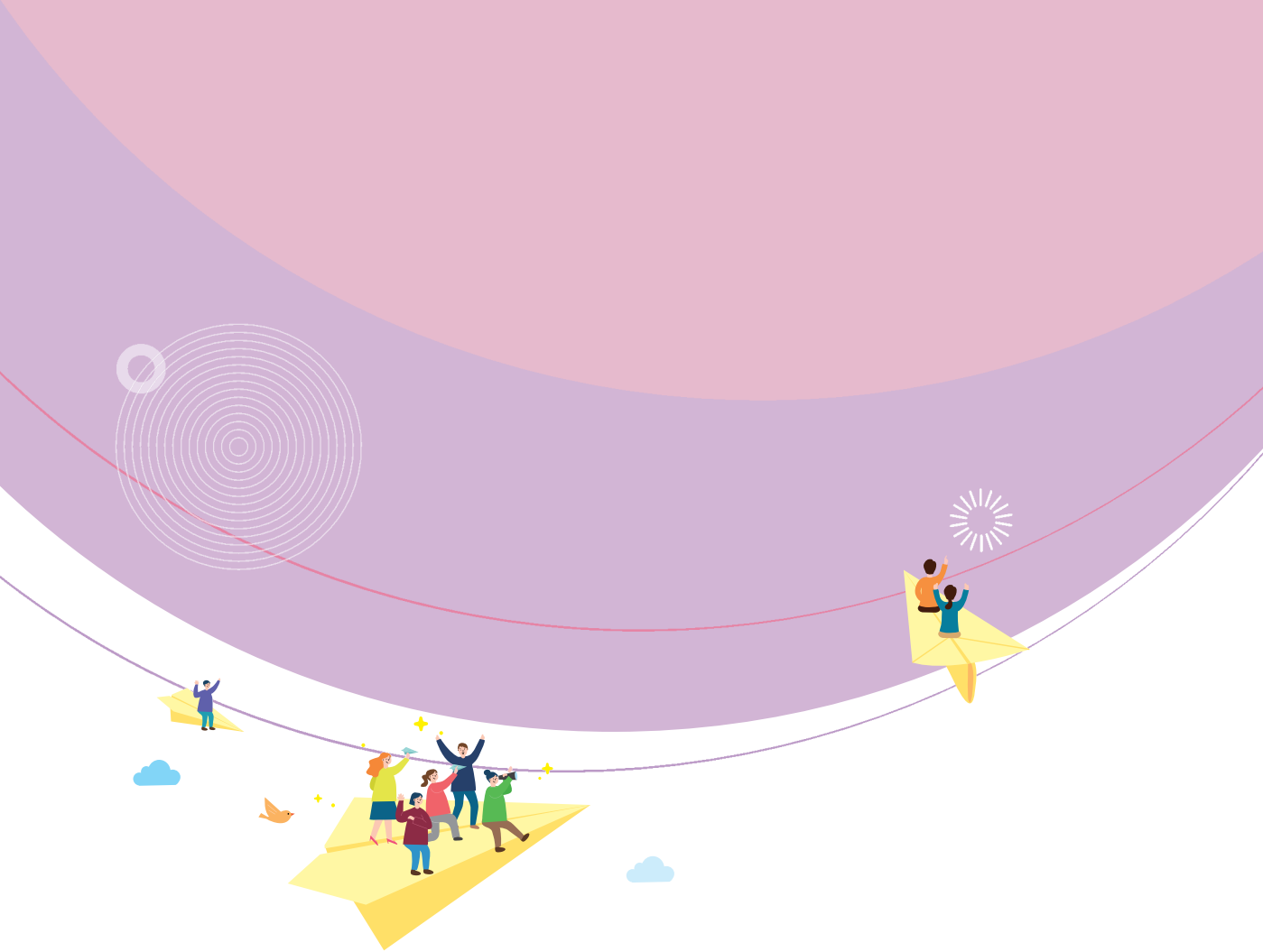


위원회의 활동실적 및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노력

- 조직개편, 위원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 등 대내·외적 상황, 코로나 지속 등으로 민원소통 기구로서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음
- ⇒ 위원회 개편·정비가 완료되어 2023년에는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기대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위원회 운영 현황

1. 2022년 주요 활동
2. 위원회 구성 현황
3. 위원 자격 및 현황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2022년 주요 활동

3월

- 3. 11.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가입신청

7월

- 7. 15.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 시민신문고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 폐지(9.10. 시행)
-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9.10. 시행)
 - 고충업무와 인권업무 통합, 감사업무 제외
 - 인권담당관, 시민신문고위원회 → 권익인권담당관으로 변경

9월

- 9. 8.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시행 9. 10.)
 - 시민신문고위원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 위원 신분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 위원 위촉 의회 동의
- 9. 27. 시의회 위원 위촉동의안 가결
- 9. 2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5명)

11월

- 11. 18.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임시회원 승인(이사회 의결)
- 11. 28.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12월

- 12. 29.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 제정

2

위원회 구성 현황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 5명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조례 제12조(사무기구)). 현재 권익인권담당관에 고충민원지원팀을 두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5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3)

• 구성현황

(2022. 12. 31. 현재)

계	전직 시의원	변호사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5	1	1	2	1

3

위원 자격 및 현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기관 추천을 통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하였다.

위원현황



이채홍 위원장

-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 ('16.~'17.)
-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14~'16)
- 울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12.~'14.)
- 울산 상안중학교 교장 ('11~'12)



윤정록 부위원장

- 7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8~'22)
- 울주군청 삼남면장 ('16~'17)
- 울주군청 총무과장 ('15~'16)
- 울주군청 안전위생과장 ('14~'15)



박호수 위원

- 울산시 체육회 우수협회 부회장 ('20~)
- 남구고래문화재단 인사위원회위원 ('19~'21)
- 울산시 남구청 복지경제국장 ('18~'19)



이상일 위원

-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1~'22)
-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등록담당 ('18~'21)
- 울산시 도시창조과 도시창조기획담당 ('18)
- 울산시 스마트시티담당관 정보보호담당 ('16~'17)



강승모 위원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21~'22)
- 법무법인 신세계 ('20~'21)
- 울산시 동구청 공공스포츠클럽 고문변호사 ('20~'21)

4

위원회 직무권한 및 기능

1 기능 / 범위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이다.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구·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2 주요기능

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권고(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의견표명)를 한다.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영상표출, 울산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 등재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홍보자료 배포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 인·허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3 주요 권한

① 민원 조사

-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된다.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민원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관련 부서의 장은 자료 등의 제출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조사의 방법)

-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정권고 및 권고(의견표명)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고(의견표명)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③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권고 및 권고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

5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① 고충민원 신청

- 민원인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은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 민원체계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민원의 조사

-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시행규칙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예외 대상(민원의 이송, 각하 등)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심의·의결 / 조사결과와 통지

1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된 민원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이 원칙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사결과 통지

-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 관계기관·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치(결정)유형



3 사후관리

-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조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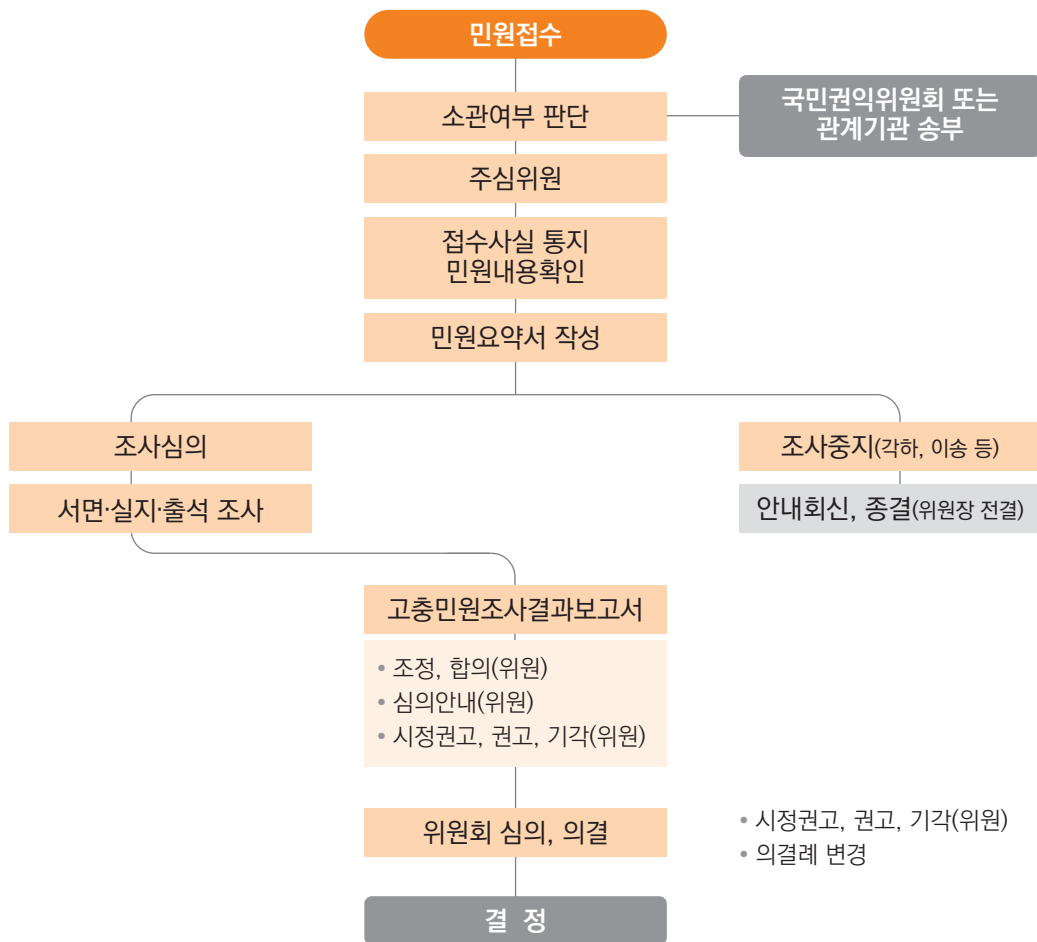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① 처리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

② 처리절차



-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③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구분

■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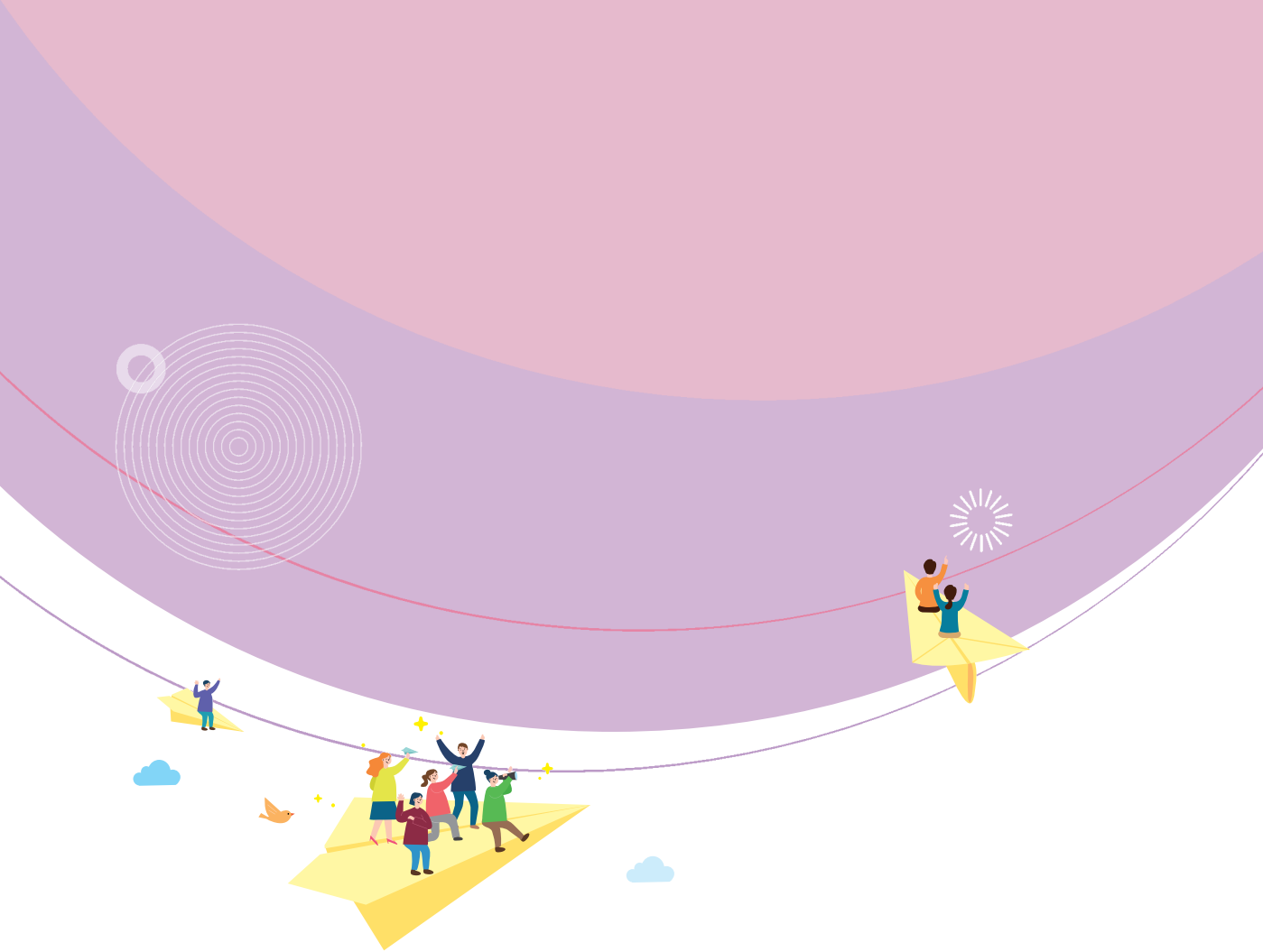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 VS 일반민원

구분	고충민원	일반민원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의 정의)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고충민원의 유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민원)
범위	- 법정민원에 대한 2차 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포함), 부작위 → 소극적 행정행위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 ※ 법령·제도·절차 등의 질의 및 상담, 제도개선 건의는 개인의 권리·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	- 일반민원의 종류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처리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위원회 운영 성과

1. 민선8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개편과 위원회 정비
2. 고충민원 웹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3.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해결로 시정 신뢰도 향상
4. 시민의 편의와 정서를 고려한 대민서비스 제공
5.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6.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권익기구로서 위상 제고
7. 제도개선을 통한 빈발·다수 민원 적극대응

1

민선8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조직개편과 위원회 정비

- 민선 8기 출범 후 고충업무를 전담할 합의제행정기구가 폐지되고 인권담당관에 고충업무를 포함하여 권익인권담당관으로 조직개편(9. 10.)
 - 법률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 위원 신분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촉
 - * 위원장 1명(개방직 4급), 위원 4명(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상당)
- 관련 조례개정(9.8), 위촉위원의 의회동의(9.27), 위원위촉(9.28), 규칙제정(12.29), 기타 근무 방법 확정 등을 통해 위원회 정비

2

고충민원 웹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웹페이지를 통해 8,304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중 7,796건은 “북구 울동지구 송전탑 이설 요구*”에 대한 민원(94%)이 차지
 - * 울산도시공사와 아파트시행사(울동PFV)간 사업비 30억(148m 이전)에 분담 50:50 합의하였으나 한전의 설계결과 43억 정도(194m 이전)가 소요 예상
 - ⇒ 울산도시공사, 비용 추가 부담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사와 재협의 추진
- 그 외에 도로·소음·교통·냄새 등 문제와 기타 생활민원 등 508건의 민원 제기, 이 중 고충민원 10건에 대해 직접 조사·처리, 나머지 이송처리

3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해결로 시정 신뢰도 향상

-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총 78(34)건의 고충민원 접수
 - 이 중 직접조사 대상은 53(23)건으로 월평균 4.4(7.7)건을 처리하였고, 그 외에 이송 13(11)건, 단순안내 3건, 취하 9건임
- 직접조사 대상 53(23)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민원을 조사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 * 시정권고·권고 11(6), 합의·조정 2(0), 조사중 해결 5(4), 심의안내 18(6), 기각 11(3), 각하 6(4) → 인용률 62.1%(76.9%) ※ () 민선8기 건수

4

시민의 편의와 정서를 고려한 대민서비스 제공

- 고충민원 평균 처리기간 단축 : 45일 → 30일 (단축 15일)
- 시민입장을 고려한 고충민원 상담 활동
 - 민간 위원들이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 상담
-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운영 (중구 중앙동, 11. 28.)
 - 민원 10건(현장상담 해결 6, 고충민원 접수·처리 4) 접수·처리

5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 위원회가 의결사항*에 대해 부서별 이행실태를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 시정권고, 권고, 합의조정, 조사중 해결 건
- 점검대상 민원 중 이행 완료 등으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은 종결처리하고, 그 외에 계속 관리 대상으로 분류 관리
 - * (상반기/하반기) 점검대상 24건 / 27건, 종결처리 12건 / 16건, 계속관리 12건 / 11건

6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권익기구로서 위상 제고

- 위원회가 세계옴부즈만협회(IOI)의 정회원('21.5.9.)과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임시회원
 - *('11.18.)이 되면서 권익기구로서 위상 제고
 - * 2023년 AOA 총회 개최 시 정회원 여부 결정
- 국제적 우수 옴부즈만 기관과 정보·경험 교환, 연구자료 수집·전파, 교류협력 및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시민권익 보호 강화

7

제도개선을 통한 빈발·다수 민원 적극대응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제도 개선 권고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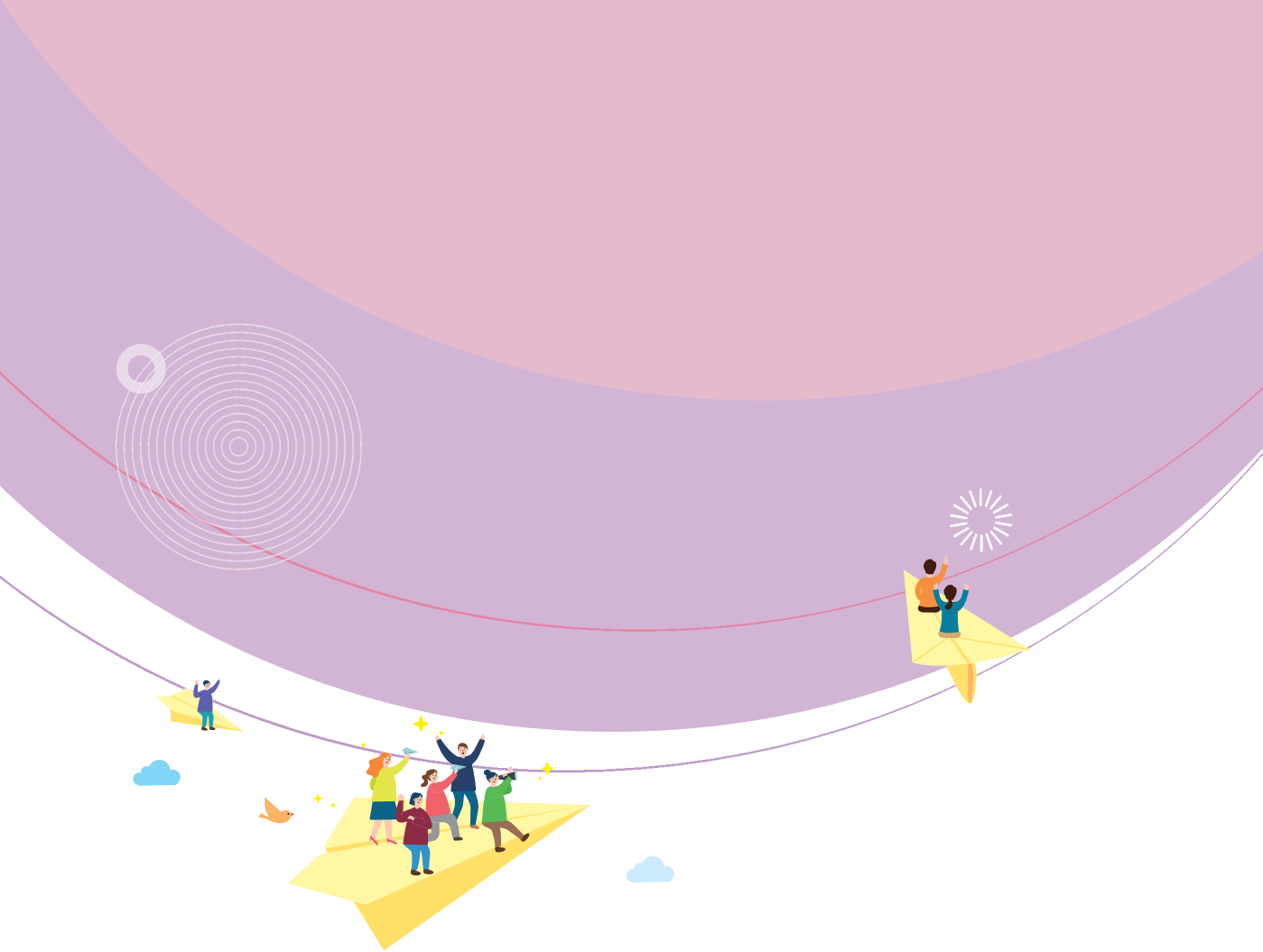
- (문 제 점)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매년 특정 업체와 독점적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정한 경쟁 저해
- (개선방안) 권고 (회계과)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 마련
 - 이행실적 배점축소 및 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경영상태 배점한도 조정 및 배점 차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완료)

②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고 제도개선 권고 (5. 16.)

- (문 제 점)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물에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관리 미흡으로 활용도가 낮음
- (개선방안) 권고 (건축주택과)
 -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활용하고, 공개공지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조치
 - 기존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시행, 전담 인력 총원과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제도화 및 시행(중장기)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IV

고충민원 처리 현황

1. 고충민원 처리 실적
2. 제도개선 분야 실적
3. 주요 처리사례

1 고충민원 처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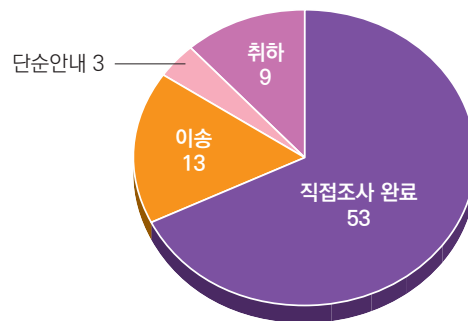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2022년도 접수된 총 78건의 고충민원 중 직접조사 처리하기로 한 민원은 53건(67.9%)으로 월평균 4.4건을 직접조사 하였으며, 이송·단순안내, 취하 등으로 종결한 민원은 25건(32.1%)임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단위 : 건)

계	직접처리			간접처리			
	소계	완료	처리중	소계	이송	단순안내	취하
78	53	53	.	25	13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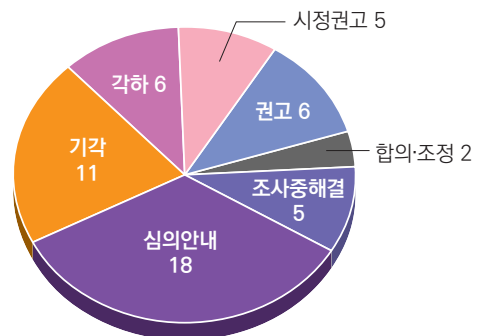


- 직접조사하여 심의·의결한 53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결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권고 5건, 권고 6건, 합의·조정 2건, 조사중 해결 5건, 심의안내 18건, 기각 11건, 각하 6건으로 나타남

▶ 직접조사 결정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합계	시정 권고	권고	합의 · 조정	조사중 해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53	5	6	2	5	18	17



2 위원회 인용 및 부서수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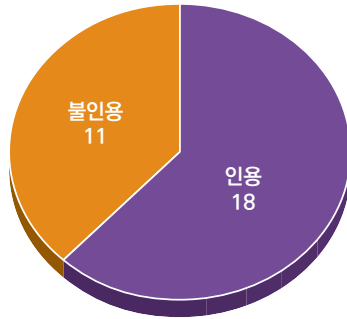
- 직접조사한 고충민원 중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 건수*는 18건(62.1%)이고, 불인용 건수는 11건(37.9%)으로 나타남

* 권고·시정권고·조사중 해결·합의조정 합산 건수

▶ 위원회 인용현황

(단위 : 건)

합계		인용		불인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9	100	18	62.1	11	37.9



- 시정권고, 권고 등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피신청기관(부서)으로부터 최종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출받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용결정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 기관(부서)이 수용한 건수는 15건(83.3%), 불수용한 건수는 3건(16.7%)임

▶ 부서 수용현황

(단위 : 건)

건수 (a+b)	수용			불수용 (b)	비 고
	계(a)	수용	자체 해결*		
18	15	7	8	3	* 자체해결 : 중재, 조정·합의, 조사중해결

※ 수용율 = $a/(a+b) \times 100$

3 창구별 접수 건수 및 처리기간

- 직·간접 처리한 고충민원 총 78건에 대한 접수창구별 현황을 보면 방문접수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홈페이지 10건, 우편 6건, 팩스 5건 순임
- 직접조사·처리한 고충민원 53건은 평균 처리기간은 30.7일, 최장기간은 73일, 최단기간은 7일로 나타남

▶ 창구별 접수 현황 및 처리기간

합계	창구별 현황(건)				처리기간(일)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	평균	최장	최단
78	57	10	6	5	30.7	73	7

4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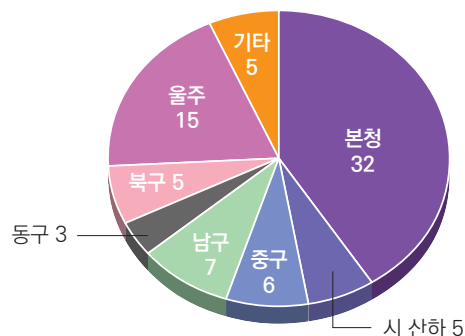
- 접수된 고충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총 78건 중 5개 구·군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 32건, 시 산하기관 5건 등으로 집계됨

▶ 피신청기관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본청	시 산하	구·군						기타*
				계	중	남	동	북	울주	
건수	78	32	5	36	6	7	3	5	15	5
비중	100.0	41.0	6.4	46.2	7.7	9.0	3.9	6.4	19.2	6.4

*기타 : 교육청, 자산관리공사, 민간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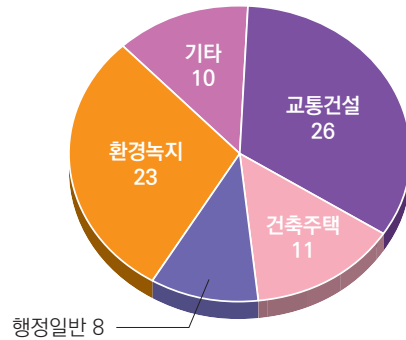
5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 고충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통건설 관련 민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녹지 23건, 건축주택 11건, 행정일반 8건 등임

▶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교통건설	건축주택	환경녹지	행정일반	기타
건수	78	26	11	23	8	10
비중(%)	100	33.3	14.1	29.5	10.3	12.8



▶ 분야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직접처리										간접처리			
		소계	시정 권고	권고	이행 촉구	합의 조정	조사중 해결	심의 안내	제도 개선	기각	각하	소계	이송	단순 안내	취하
계	1,055	669	38	42	1	56	87	251	2	150	42	386	195	105	85
2022	78	53	5	6	0	2	5	18	0	11	6	25	13	3	9
2021	224	135	7	8	0	14	42	20	1	31	12	89	14	52	23
2020	156	104	8	6	0	5	25	18	0	35	7	52	24	5	23
2019	348	201	5	7	0	26	15	107	1	33	7	147	107	16	24
2018	249	176	13	15	1	9	0	88	0	40	10	73	37	30	6

6 직접조사 민원 현황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 결과
		접수일	의결일		
1	건물 신축공사 피해보상	2022-02-09	2022-03-28	김승호	합의조정
2	농지진입로 개설	2022-02-17	2022-03-28	임용균	기각
3	도로사용 토지 보상	2022-02-21	2022-03-28	오영은	기각
4	축사진입로 옆 토지상의 돌과 철봉 제거	2022-03-07	2022-05-23	강승모	각하
5	폐기물처분 목록 발급	2022-03-07	2022-04-18	오영은	기각
6	구유재산 수익매각	2022-03-17	2022-04-11	오영은	기각
7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	2022-03-18	2022-05-09	오영은	시정권고
8	집앞 하천일부 복개 요청	2022-03-21	2022-05-02	임용균	기각
9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취소	2022-04-08	2022-04-18	임용균	시정권고
10	○○천 교량 및 보행로 설치로 예상되는 피해 예방	2022-04-11	2022-05-30	김승호	합의조정
11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2-04-11	2022-05-23	오영은	기각
12	하수관로 매립공사	2022-05-02	2022-06-14	임용균	심의안내
13	정관 변경허가 불허취소 요청	2022-05-11	2022-06-20	오영은	시정권고
14	부당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환급	2022-05-16	2022-06-27	오영은	심의안내
1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2022-05-16	2022-07-25	오영은	기각
16	도로공사 시 약속한 주차공간 및 통행로 확보	2022-05-16	2022-08-29	강승모	권고
17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2022-06-07	2022-07-11	김승호	심의안내
18	농경지 진입로 확보(개설)	2022-06-24	2022-08-29	임용균	심의안내
19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20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21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 결과
		접수일	의결일		
22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23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24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25	악취해결	2022-06-29	2022-08-03	임용균	심의안내
26	하수도 오수관 악취	2022-07-11	2022-10-05	강승모	권고
27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2022-07-14	2022-09-05	임용균	심의안내
28	축사용도 건축허가 부당	2022-07-14	2022-10-11	강승모	기각
29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부당	2022-07-15	2022-08-30	강승모	기각
30	도로지정 폐지 신청	2022-08-11	2022-09-21	강승모	각하
31	진입도로 포장 및 보수	2022-08-11	2022-10-31	박호수	심의안내
32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2022-10-07	2022-11-17	윤정록	권고
3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2022-10-07	2022-11-03	박호수	각하
34	신청인 소유 토지 중 도량부지 매수 또는 사용료 청구	2022-10-07	2022-11-21	이상일	권고
35	배관공사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2022-10-07	2022-11-21	박호수	기각
36	농경지 옆 태풍피해 제방 유실	2022-10-04	2022-11-07	강승모	조사중해결
37	토지 내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행정조치	2022-10-07	2022-10-26	윤정록	각하
38	○○○공원 내 ○○○○○ 조성 반대	2022-10-14	2022-12-23	이상일	심의안내
3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해관계인 동의서 첨부 요구 부당	2022-11-03	2022-12-14	강승모	권고
40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통지에 대한 구제 요청	2022-11-10	2022-11-30	강승모	시정권고
41	○○지구 조합의 채권자로서 피해보상 및 체비지 재산세 납부 현황	2022-11-10	2022-12-21	박호수	기각
42	○○○○○ 일부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구제 요청	2022-11-18	2023-01-30	박호수	심의안내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주심 위원	처리 결과
		접수일	의결일		
43	단독주택 주 출입구 통행방해 구제 요청	2022-12-09	2022-12-21	박호수	각하
44	공동주택 앞 도로교통 체계 개선 요청	2022-12-09	2023-01-16	이채홍	심의안내
45	상가 앞 변압기 이설 요청	2022-12-09	2023-01-16	윤정록	심의안내
46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2022-12-09	2023-01-09	윤정록	권고
47	○○○ 진입로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2022-12-09	2023-01-16	윤정록	시정권고
48	장애인 주차권 발급 요청	2022-12-09	2023-01-16	강승모	기각
49	하천 석축 및 박스형 다리 설치 요청	2022-12-09	2023-01-16	윤정록	조사중해결
50	배수로 맨홀 정비 요구	2022-12-09	2023-01-16	윤정록	조사중해결
51	주택균열에 따른 대책요구	2022-12-09	2023-01-16	박호수	심의안내
52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균열 발생	2022-12-28	2023-01-04	박호수	각하
53	제31도 국도 비탈면 편백나무 고사목 보완 식재 요청	2022-12-28	2023-01-30	박호수	조사중해결



7 주요사례

시정권고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2022-고-001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남구 소재 ○○○○○센터에서 주·정차금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가산금징수처분을 한 후 차량에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징수 처분, 압류처분 취소 요구	[시정권고] -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3/100)을 징수함 - 피신청인이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는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지만, 이 공시송달이 피신청인의 착오로 누락됨 - 이 민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교통 건설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거부 취소 (2022-고-0016) 남구 ○동 일부 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특정인의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함	[시정권고] ○○○○○○○○ 진·출입 도로는 ○○로에 접속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도로 부분을 분할한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종래 구 도로를 이용해 왔던 신청인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임 - 신청인 주택지 진·출입을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지라도 도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재산의 기능·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음	교통 건설
3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거부 처분 취소 (2022-고-0024) (재)○○○○○○○이 신청한 법인 기본재산 2필지(○동소재)를 신탁관리 하고자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뒤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신청인이 거부처분(재단법인의 형해화 및 공익적 통제기능 상실)한 것은 부당함	[시정권고] - 복지부 업무편람(14.7월)에는 기본 재산감소 정관변경은 불허해야 하지만, 법인운영에 지장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적시 - 신청인의 부동산을 담보 신탁하게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적 제약이 없으며, 추가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을 경우, ○○○ 설치 및 사업 영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민원 거부처분은 합리성을 결한 부당한 처분임	사회 복지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4	○○○ 진입로 공유수면사용료 부과 취소 요청 (2022-고-0070) ○○○ 진입로는 일반인들의 등산로로 겸하여 사용 되는 도로인데, 피신청인은 이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국토부 소유 같은 리 산○○○○번지 하천부지를 ○○○의 진입도로라고 보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	[시정권고] - 공유수면은 수류, 구거 등 국유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점·사용허가 대상 부지는 신청인이 점용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점용한 토지는 사유지로 공유수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이 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주장하나 지적 불부합지는 인접 토지와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지의 진실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는 것임 - 지적공부 정정 등의 과정 없이 지적공부상 타인의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시정 권고함	환경 녹지



권 고 (의견표명)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묘지진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등 (2022-고-0027) 피신청인은 ○○~○○○ 도로개설공사로 청량을 울리에 위치한 신청인의 소유의 임야를 협의 취득하였고, 이 도로공사로 신청인 소유지에 조성된 묘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니(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안전상 이유로 철거함), 묘지 진입 부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요구	[권고] ▶ 묘지지점은 별도의 인도나 주차공간이 없는 왕복 4~6차선의 차량전용도로로 신청인이 성묘를 하기 위해 갓길 주차를 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큼 ▶ 현재 가드레일을 계곡부 접면 쪽으로 이동하고 석축을 보강하면 추락위험을 최소화하고 확보된 공간에 약 2대의 차량주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제설장비 보관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법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	교통 건설
2	○○○길 일원 오수관로 악취 해결 (2022-고-0038) ○구 ○○○내 거주 중인 ○○○길○에서 ○○까지 도로 및 집 안팎에서 오랜 기간 오수관로의 악취가 진동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으므로 전문가를 불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권고] ▶ ○○○길은 오수관로 인근에서 201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악취포집 및 배출구 높이를 조정하는 등 민원해결에 임하고 있으며 2022년 7월에는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2018년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사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 악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함	환경 녹지
3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2022-고-0046) ○○읍 ○○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98m)로 수년간 지정되어 있음. 이 도시계획도로의 초입부분(20m)이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의 재지정 및 도로개설을 요구함	[권고] ▶ 도로 초입부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도시계획도로였던 초입부분을 해제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었음 ▶ 이로 인해 도시계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고, 인근 주택 진입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 등을 권고	교통 건설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4	도랑부지 매수 또는 사용료 청구 (2022-고-0048) 신청인 소유 ○○동 토지 내 도랑을 복구청에서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니, 사용료를 주거나 도랑 부분에 대해 매수하여 주시기 바람	[권고] ▶ 복구에서 태풍 피해 응급 복구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유재산 침해한 사실이 명백함 ▶ 2017년 신청인 소유 토지 전체에 대한 협의 매수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음 ▶ 복구는 신청인과 적극 협의 보상하여 신청인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교통 건설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첨부 요구 부당 (2022-고-0059) 신청인 소유 ○구 ○○동 토지는 공로로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서 건축신고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불필요한 인접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징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의 취소를 요청	[권고] ▶ 신청인에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동의대상자의 토지 진출·입에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음 ▶ 인접 토지의 소유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는 바, 이해관계인 동의서 징구는 정당한 요구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권고	환경 녹지
6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 요청 신청인은 부서의 안내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고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됨.(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에 폐차해도 된다는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 서류제출 후 성능검사를 거쳐 폐차 승인 통보 후 절차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성능검사 없이 사전에 폐차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 지원금 지급 요청	[권고] ▶ 보조금 신청 후 폐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 절차를 알았다면 그 절차에 따라 신청하였다고 인정되고, 주차장 출입기록 등으로 보아 폐차 직전까지 운행한 점, 신청인이 성능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기폐차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신청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 또한 배기가스 저감으로 환경보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환경 녹지

 합의·조정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건물 신축공사 피해보상 (2022-고-0004) ○○동 소재 주상복합 건축물 공사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침하,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실로 인해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결 요청	[합의·조정] ▶ 시공사와 신청인 간의 합의조정 • 시공사는 신청인에게 합의금으로 ○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따라 처리 종결	건축 주택
2	○○천 교량 및 보행로 설치로 예상되는 피해 방지 요청 (2022-고-0017) ○구 ○○동 일원에 위치한 ○○천 하천 보행로 및 교량의 부실공사로 인한 아래 하자에 대해서 수년 전 공사 이행시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 요청 • 강폭을 줄여서 길을 넓 • 하천 외벽 우측에만 길을 내고 좌측은 길을 내지 않고 있음 • 하천 외벽의 왼쪽에 하천 흙을 발라 놓아 악취가 진동함 • 중간다리공사는 4m로 약속 되었으나 2.5m만 길을 내었음 • 도로 위의 가벽에 대해 투명 처리, 다리색깔 통일 요청	[합의·조정] ▶ 인도 폭의 변경, 투명방음벽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이해시켰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사항에 대해 일부가 인정됨 ▶ 이에 따라 신청이 우려하는 사항을 즉시 개선하도록 피신청인에 권고하였으며, ▶ 향후 ○○천 정비공사 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합의함 ▶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조정으로 종결	교통 건설



조사중 해결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구유재산 수의 매각 (2022-고-0012) 민원인 소유 ○구 ○○동 대지 지상에 노후 및 파손된 주택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면으로 문의하였으나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 민원토지 통행을 위해 인접 토지(구유지)의 매수 요청	[조사중 해결]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매각 할 수 있음 ▶ 민원인이 일반재산인 공유지를 사도개설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매각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받음 ▶ 민원인도 이에 수긍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해결됨	건축주택
2	농경지 옆 태풍피해 제방유실 복구 요청 (2022-고-0053) 신청인 소유 ○○면 ○○리 토지 인근에서 주변 농경지 옆 소하천 제방이 지난 한남노 태풍으로 독이 무너져 농경지 피해가 발생 되었으므로 원상복구 및 제방설치 요청. 피신청인은 개인 사유지 옆 제방이 유실된 것은 개인이 보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조사중 해결] ▶ 신청인 제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 소유지 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수로로 확인 ▶ 피신청기관에서 해당 부지 인근에는 구거나 하천 부지 등 국유지가 없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로서 사유재산 보호 목적으로 우수배수로 설치하는 불가능함을 회신 ▶ 다만, 태풍 한남노로 인한 피해임을 감안하여 응급 복구 차원에서 미니굴삭기를 동원하여 물길정비 완료한 상태임	환경녹지
3	배수로 맨홀 정비요구 (2022-고-0073) ○○군 ○○ ○○○○○○ 인근 배수로가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간 배수로가 하천정비로 막혀 있어 맨홀에서 배수물이 넘치고, 장마 시 인근 농경지로 배수물이 흘러나와 농경지 침수됨으로 배수로 정비 요청	[조사중 해결] 피신청인은 2022년 하절기 ○○천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천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로의 하천 연결배관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천 준설토를 도로변 제방 경사면으로 밀어붙여 공사를 시행함으로 배수관이 막힘. 피신청인이 준설작업 잘못을 인지하여 2023년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기각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도로사용 토지 보상 (2022-고-0006) 민원인 소유 토지 지하에 상·하수관 및 배수구가 매립되어 있고 아스콘 포장에 되어 있어 사실상 피신청인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매수 요구	[기각] - 토지소유자에 의해 인근 토지 통로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청이 주민편의를 위해 하수도 매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도로계획상 도로로 지정하였다는 사정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 이 민원토지의 이용은 인접한 다세대주택 주민들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이 점유·관리하거나 이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행정 기타
2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 (2022-고-0018) 신청인 배우자 토지를 포함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있어 낙후되어 있으므로 낙후된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요구	[기각]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길 일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아 기각함	도시 계획
3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2022-고-0026) 1976년경 새마을 권장 사업으로 민원 주택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에 피신청인이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기각] - 민원 건축물은 19○○년에 최초 확인되는 바,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사용되어 온 것이 확인되므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 위반건축물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음	교통 건설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4	축사용도 건축허가 부당 (2022-고-0041) ○○면 ○○리 소재 축사허가로 냄새와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축사허가를 취소하거나 부실 공사에 따른 행정조치 및 재심의 요구	[기각] ▶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건의 축사 사업장이 확인되는 등, 이 민원대상 축사가 특별히 다른 축사에 비해서 마을회관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가축 수가 많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민원인이 주장하는 냄새, 정주 여건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행정조치 등에 달리 위법·부당한 점이 존재하지 않음	건축 주택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 취소 (2022-고-0043)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 단속 장소인 학교 쪽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없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부과처분 취소 요구	[기각] ▶ ○○○○ ○○○○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시·중점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는 노면 도색 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 ▶ 과태료 부과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교통 건설
6	배관공사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 (2022-고-0049) 상수도 옥내 내부 배관공사를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노후 배관 공사를 마쳤으나 피신청인이 절차 미이행 등을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음. 이는 부당함으로 보조금 지급 요청	[기각] ▶ 옥내누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사 전에 피신청인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점검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됨 ▶ 신청인은 이런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 ▶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고, 보조금 지급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사람들의 피해가 불가피함으로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환경 녹지



각 하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축사진입로 옆 토지상 돌과 철봉 제거 요청 (2022-고-0008) ○○군 ○○면 ○○리 소재 토지로 진입하는 옆 토지 소유주가 토지에 철봉을 박고 돌을 놓아두어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니 제거 요구	[각하] ▶ 일반차량이 민원토지에 출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개인 사유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권한이나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사인 간에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도로 관리
2	도로지정 폐지 신청 (2022-고-0044) 민원인 소유한 토지에 2000년 ○○○○ ○○○○○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도로포장을 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하였으니 취소 요구	[각하] ▶ 이 고충민원과 동일한 건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각하 사유가 됨	교통 건설
3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취소 요구 (2022-고-0047) ○구 ○○동 ○○○○○ 인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각하] ▶ 이 고충민원과 동일한 건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	교통 건설
4	토지 내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 (2022-고-0054) 경매로 취득한 신청인 소유 토지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매립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각하] ▶ 이 고충민원과 동일한 건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	환경 녹지
5	단독주택 주출입구 통행방해 구제 (2022-고-0066) ○구 ○동 소재 단독주택 주출입구에 인근 토지소유주가 벽돌로 담장을 쌓아 통행방해를 하고 있으니 구제 요청	[각하] ▶ 담장이 인근 사인의 토지 안에 위치 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는 사인 간에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각하한 사항임	건축 주택

 심의안내

연번	민원내용	심의·의결	분야
1	하수관로 매립공사 (2022-고-0022)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 토지 일원에 하수관로 매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인근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불편이 우려되니 공사를 조속히 시행 요구	[심의안내] ▶ 현지 여건상 하수관로는 사유지에 매설되어야 하므로, 사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시공이 가능함 ▶ 토지소유자와 사용 동의를 협의하였으나 동의를 구하지 못해 하수관로 매설이 어려운 실정임 ▶ 향후, 사용 동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함	교통 건설
2	악취해결 (2022-고-0031~0037) ○○리 ○○마을 인근 공장의 화학물질 배출로 새벽 시간대와 일몰 전후에 생선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해당 공장이 20년 이상 유해물질을 방출하였다는 것이 강력히 의심됨으로 주민들의 암발생, 폐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요구	[심의안내]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의 청원(환경보건법 제 17조)'을 울산광역시에 할 수 있으나 건강상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진정은 청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 악취와 관련 인근 공장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대기 오염물질을 중화하는 방지시설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추가시설 확인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것을 안내	환경 복지
3	○○○공원 내 ○○○○○ 조성 반대 (2022-고-0055) ○○청이 시행하고 있는 ○○동 ○○○○○ 내 ○○○○○을 설치해 주민들의 없이 설치하고, 소음 및 주차 등 주거 여건이 불편해짐으로 ○○○○○ 조성을 반대	[심의안내] ▶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과 ○구청 간 이견 조율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의 ○○○○○ 조성에 대한 양보 없는 강력한 반대와 ○구청의 지속 추진 의사 등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음 ▶ 사업추진 시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공익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안내함	도시 계획

2 제도개선 분야 실적

1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고 제도개선 권고

☑ 배경 및 문제점

-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물*에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활용도 낮음
 -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
- 시민 휴식공간인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 이용 정상화 및 공공성 회복
 - * 공개공지 현황 : 159개소(중구 36, 남구 80, 동구 9, 북구 20, 울주 14)

☑ 추진경과

- 2021. 9. ~ 2022. 5. : 공개공지 현황 및 각종 자료조사
- 2022. 4. 18. : 공개공지 조성·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협의(건축주택과)
- 2022. 5. 16. : 제도개선 권고 결정(위원회→건축주택과장)

☑ 개선방안(권고)

- 수준 높은 공개공지 제공을 위해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안내판 설치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정보입력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개공지 현황을 파악하여 대장 작성·관리할 것
- 기 설치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시행, 전담 인력 총원과 노후·기능 저하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제도화 및 시행 (장기과제)

☑ 조치결과 : 추진 중

- 안내판은 설치 의무는 조례 개정(‘22.3월)
- 가이드라인은 울산연구원 연구과제 반영 추진 중(2022. 12. ~ 2023. 9.)

- 구·군에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시스템 입력 확인 당부(시 → 구·군 등 / 6. 30..)
- 시범사업 근거 마련과 구·군 전담인력 총원 요구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제도 개선 권고

☑ 배경 및 문제점

-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매년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 형태로 운영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 신규업체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함
 - *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용역 적용」 받음
- 적격심사에 있어 이행실적·경영상태 등 배점한도와 하한점수의 차이는 신규업체가 최저가격을 제시해도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낙찰 불가

☞ 추정가격 10억 이상 경우 : 종합점수(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35점) + 경영상태(30점) + 신인도(+5.25~△8.0)) + 지역업체참여도(5점) + 입찰가격(30점)

☑ 추진경과

- 고충민원 접수와 자료조사, 업무협의 등('21. 12. 27. ~ '22. 3. 11.)
- 제도개선 권고 의결(위원회→회계과장)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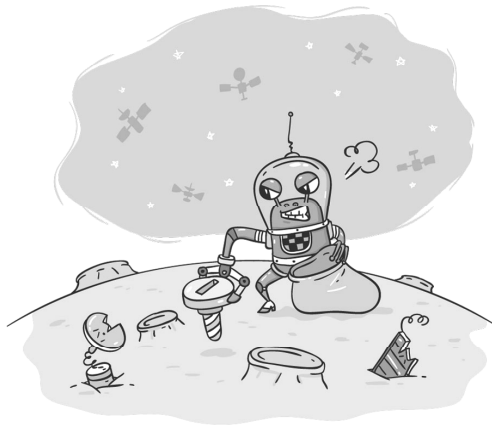
☑ 개선방안(권고)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추가 도입
-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경영상태 배점한도 조정 및 배점차 완화(10%→5%) 등 진입장벽을 낮춤

☞ 추정가격 10억 이상 경우 : 종합점수(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30점) + 수행능력*(15) + 경영상태(20점) + 신인도(+7.25~△13.0)) + 지역업체참여도(5점) + 입찰가격(30점)
* 차량운반 차량 확보여부

☑ 조치결과 : 완료

- '22. 5월 : 방침개정 및 구·군 의견 조회
- '22. 6월 : 행정안전부 협의(승인)
- '22. 7. 21.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8.10.시행)



3 주요 처리사례

시정권고

1.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13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22. 3. 18.) / '22. 5. 9.
- 신청인 / 피신청인 : ○○○(울주군 ○○길) / 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피신청인은 2020. 4. 20. 신청인이 울산 ○구 소재 ○○○○센터에서 질서위반행위(주정차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 납부기한 7. ○○.까지로 한 과태료 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고지 및 1,680원의 가산금징수처분(이하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같은 해 11. ○○. 신청인 소유의 차량(○○ ○○○○)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민원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이 민원 압류처분도 취소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센터 고정형 CCTV 영상물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 4. 20. ○○:○○경 질서위반 행위(주정차금지구역에서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주정차한 행위)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 고지서(과태료 40,000원, 고지금액 32,000원, 납부기한 2020. 5. 29.)를 신청인의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인 울산 ○○군 ○○읍 ○○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5. ○○.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같은 해 5. ○○. 울산시 ○구 누리집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과태료 40,000원, 납기후 금액 41,200, 납부기한 2020. 7.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의 사전통지서와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자 당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된 1,848건 중 반송된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들에 대하여 같은 해 6. 1○. 제2020-○○○○호로 공시송달하였지만, 부과처분 고지를 공시송달한 내용에는 피신청인의 착오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누락되었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의 납기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인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의 이행을 독촉하고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 고지서(과태료 40,000원, 납기후금액 41,680, 체납일자 2020. 9. ○. 납부기한 2020. 9.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20. 9. ○○. 제2020-○○○○호로 공시송달하였으며, 같은 해 11. ○○. 신청인 차량에 대하여 압류(압류관리번호 ○○○○-○○○ ○○○○-○○○○○○)하고 압류통지서를 일반등기로 발송하였다(교통행정과-○○○○○).
- 신청인은 2021. ○○. ○○.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뒤 2022. 3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압류처분 사실(가산금 1,680원, 차량압류)을 통보받고 유선전화로 감면·면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의신청 제기를 통한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화신하였다.

3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이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등기우편이 반송된 후에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및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 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 및 이 민원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4 판 단

- 신청인은 2020. 4. 20. 00:00경 0000센터에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주정차한 행위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한편,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의인 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등 과태료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의견 제출절차를 마친 때에는 서면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행한 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이 신청인에게 도달되어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등 참조).
- 이 민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 등을 순차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지만, 이 민원 과태료부과처분 고지에 관한 공시송달은 피신청인의 업무착오로 누락되었음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사전통지서 및 이 민원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과태료부과처분 이전이나 그 이후에 독촉고지서를 통해 알았다거나 또는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압류처분 사실을 통보받고 유선전화로 감면·면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신청인의 이 민원 신청취지 중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청구는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일련의 절차, 즉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 징수처분(독촉) 및 이에 따른 이 민원 압류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 이 민원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 및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의 취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2020. 6. ○. 및 같은 해 9. ○.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부과처분 및 가산금징수처분을 각 취소할 것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 ○○○○)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각 시정권고한다.

조치결과 → 수용(압류 해제 및 가산금 부과 취소, 추후 본 부과금액으로 재고지)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취소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1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취소('22. 4. 8.) / '22. 4. 18.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울산광역시장(보건환경연구원장)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김승호)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구 ○동 산○○ 임 2,○○○㎡ 중 3○○㎡에 단독주택(지상 1층, 1동, 연면적 ○○㎡)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같은 동 8○○ 대 1○,○○○㎡ 중 피신청인의 연구시설에의 진출입로 겸 ○○○○○○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재산 중 위 주택에 차량 1대가 진·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극히 일부분(이하 '이 민원 행정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특정 개인의 건축허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향후 이 민원 행정재산에 대한 소유권행사 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 민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이하 '이 민원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2005. 1. 작성된 구)지적도에 따르면,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구 ○동 산○○ 임 2,○○○㎡는 구)도로(즉, 울산 ○구 ○동 ○○○ 도로 ⇒ 같은 동 ○○○○-1 도로 ⇒ 같은 동 ○○○○도로 ⇒ 같은 동 ○○○○-2 도로 ⇒ 같은 동 ○○○○-3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접하였으나, 2005. 4. 피신청인이 울산도시계획시설(○○○○○○○○ ○○공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구)도로를 폐쇄한 후 대체도로 겸 피신청인의 연구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위 도로는 문수로에서 피신청인의 연구시설을 거쳐 ○○○○○, ○○○○○○ 진입로로 연결된 도로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위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완전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연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부분과 이 민원 행정재산이 포함된 도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도로의 지목은 ‘대’이나, 지목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3 피신청인의 주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울산광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의 건축허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없다.
-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 민원 행정재산은 같은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향후 피신청인의 소유권행사와 장래 행정·기타 목적으로 사용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이 민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2015. 3. 13. 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53호 참조).

4 판 단

-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의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 2005. 1. 작성된 구)지적도에 따르면,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구 ○동 산○○ 임 2,○○○는 구)도로(즉, 울산 ○구 ○동 ○○○ 도로 ⇒ 같은 동 ○○○○-1 도로 ⇒ 같은 동 ○○○○도로 ⇒ 같은 동 ○○○○-2 도로 ⇒ 같은 동 ○○○○-3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접하였으나, 2005. 4. 피신청인이 울산도시계획시설(○○○○○○○○ ○○공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구)도로를 폐쇄한 후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피신청인의 연구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함은 물론 ○○○○○○, ○○○○○○ 진입로 및 ○○로에서 ○○○○○○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도로는 피신청인의 연구시설 진·출입로 기능과 위 구)도로의 대체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도로 부분을 분할한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래 구)도로를 이용해 오던 신청인 등을 비롯한 인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9. 12. 9 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5호에도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의 지목을 여전히 '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제4항 및 2021. 6.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공유재산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여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행정재산이 포함된 도로부분은 피신청인 연구시설의 진·출입로 기능뿐만 아니라 구)도로의 대체도로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신축예정인 주택의 진출입을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민원 행정재산의 기능이나 그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15. 3. 13. 시행 회계제도와-1753호)은 본 민원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2009. 8. 27. 행정안전부지침 제2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장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2절 사용, 5.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 유의사항, 4)항 단서에 따르면, 본 민원의 경우 처럼 완전한 도로의 형태를 갖춘 행정재산이 아닌 나대지 또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지 아니한 형태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충족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수익을 요하는 해당 토지가 맹지이어서 불가피하게 행정재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명백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향후 이 민원 행정재산의 기능이나 그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 민원 거부처분을 행한 것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제4항 및 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 이 민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2022. 4. 〇〇. 신청인에게 행한 울산 〇구 〇동 〇〇〇 대 〇〇,〇〇〇㎡ 중 피신청인이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조치결과 ⇒ 불수용

- (검토의견) 공유재산 사용허가 불가
 - 공유재산 관리원칙은 공공성, 영구적 사용허가 불인정,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허가 인정사항이며
 - 지침상 주택건축을 위해 공유재산의 진입로로 사용·대부는 금지사항으로 적시



3.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거부처분 취소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24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거부처분 취소('22. 5. 11.) / '22. 6. 20.
- **신청인 / 피신청인** : 재단법인 ○○○○(○구 ○○길) / 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2003. 3. 피신청인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서 ○○시설 조성을 위한 조작채무방지, 공사대금 조성, 기본재산 보호 및 법인 존속을 목적으로 법인 기본재산인 울산 ○구 ○동 산○○ 임야 ○○○㎡ 및 같은 동 산○○ 임야 ○○○㎡를 신탁 관리하고자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뒤 피신청인에게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신탁계약은 재단법인의 형해화 및 주무관청의 공익적 통제 기능 상실을 이유로 정관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민원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정관변경 인가를 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에게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아래 내용으로 (가칭)재단법인 ○○○○○○(대표 ○○○) 설립 허가를 받았다.

법인명	재단법인 ○○○○○○
대표자	○○○
소재지	울산광역시 ○구 ○동 ○○○○-○
설립목적	○○시설 조성·공급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도모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사업종류	○○시설 설치·운영사업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부대사업의 설치·운영사업

- 당시 허가 통보서에는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제반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목적사업 설치·운영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법인 설립허가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의 허가조건에 명기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허가조건

⋮

2. 시설 설치에 관한 개별법의 저촉사항 등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고 목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과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법인의 정관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4. 울산광역시 도계 00000-000(2000. 0. 00.)호에 의거 0000 및 사설000 공개 모집자로 선정 당시 제시된 기부채납 조건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이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이행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반하거나 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00,000㎡(울산 0구 0동 산00-00 임야 0,000㎡ 및 같은 동 산00-0 임야 0,000㎡. 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 2000. 0. 0. 신청인(대표자 000)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0.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정관변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부동산 및 재산의 신탁관리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현행과 같음)

- 2000. 0. 00. 울산광역시 000장은 울산광역시 0구 고시 제2000-00호로 신청인에게 0동 0000 내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00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지정 및 이 민원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000 및 000 부지조성 0,000㎡, 000 0,000㎡, 000 0,000㎡)하였다.

3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정관 제6조에 따르면,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재산이 처분되는 형태가 되며 이는 재단법인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하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공익적 통제 기능이 상실 될 수 있으며, 통제 기능의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여 이 민원 거부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판 단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 19202, 19219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2014. 7.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불허해야 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또한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처분이유서를 통해 확인되는 ① 기본재산 처분의 목적과 사용용도, ② 그로 인하여 소실될 재산의 보충방법, ③ 처분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수 있다.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단법인이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의 허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재량권은 법인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와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지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거부처분의 취소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재산이 처분되는 형태가 되며 이는 재단법인의 형해화를 초래하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공익적 통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기능의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여 이 민원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민원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게 되면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

전되고 신청인은 담보신탁 수익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비록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신청인이 위탁자로서 이 민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 및 관리동의 경우, 현재 골조 공사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목적사업인 ○○○, ○○○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이 신청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오히려 유용한 면이 있고, 또한 신청인의 부채초과상태,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신탁이 신청인의 설립목적 실현하는데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하지만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등이 여전히 재단법인에 남아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참조) 신청인의 기본재산의 실질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의뢰하여 (주)○○○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울산광역시 ○구 ○동 산○○-○○ 및 산○○-○ ○○○○○(○○시설) 수익가치 추정 컨설팅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은 ○○,○○○기로서, 20○○년 ○○월을 기준시점으로 분양가격 ○,○○○,○○○원으로 초기에 ○○% ~ ○○%의 분양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 수익가치는 ○○○,○○○,000,000원 ~ ○○○,○○○,0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재산은 이로써 충분히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신청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재산이 처분되는 형태가 되며 이는 재단법인의 형해화를 초래하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공익적 통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외견상의 이유만으로 이 민원 거부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행사의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거부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이 민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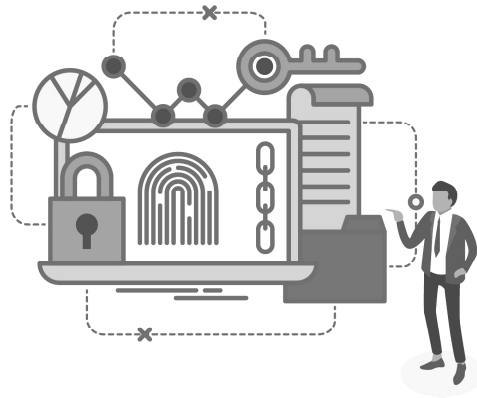
주 문

피신청인은 2022. 5. ○. 신청인에게 행한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조치결과 ⇒ 불수용(정관변경 허가 취소처분 불수용)

• (검토의견)

- 기본재산의 전부를 신탁 관리하는 것은 기본재산 전체를 처분하는 형태이므로, 법인의 실체가 소실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기본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할 주무관청의 의무가 상당함
- 분양 수익으로 재산 보충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 ○○○ 진입로 공유수면사용료 부과 취소 요구

- **민원표시/의결일자**: 2022-고-0070 ○○○ 진입로 공유수면사용료 부과 취소 요구 '22. 12. 9./'23. 1. 16.
- **신청인/피신청인**: ○○○(○○군 ○○길) / 울주군수(건설과장)
- **결정결과**: 시정권고(주심위원: 윤정록)

1 민원취지

- ○○○군 ○○○면 ○○○리 산○○○ 소재 ○○○의 진입로 겸 일반인들의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같은 리 산○○○, 산○○○, 산○○ 등)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청에서는 현행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리 ○○○○ 하천 1,○○○㎡(이하 '이 사건 민원하천'라 한다) 국토부 소유 하천부지를 ○○○의 진입로라 보고, 신청인에게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 10월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였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사항

- **신청인**: ○○○(대표 ○○○) / ○○○군 ○○○면 ○○○리 ○-○번지
- **신청장소**: ○○○군 ○○○면 ○○○리 ○○○○번지 / 면적 ○○○㎡
- **신청목적**: ○○○에 따른 진입도로 사용
- **설치하는 공작물**: 배수암거(4.0×2.0)~6.0M, 날개벽 2개소
- **기간**: 200○년 허가일 ~ 200○년 12월 31일 까지

-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0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을 하였고, 같은 해 10. 00.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허가 사항을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반복하여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오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

- 허가대상자 : 000(대표 000) / 00군 00면 00리 0-0번지
- 허가 위치 : 00군 00면 00리 0000번지
- 공사개요 : 진입로설치 B=6.0m, L=46m
암거설치(4.0×2.0) L=6m, 날개벽 2개소
- 점용면적 : 000㎡ 영구점용
- 점용기간 : 5년(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6개월)
- 목적 및 사유 : 00 진입로 개설
- 실시계획인가, 신고대상여부 : 실시계획 미인가 대상

-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한 국유지인 이 사건 민원하천은, 인근 000의 진입도로 용도로 허가를 하였으나, 지적공부 상 000은 이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000의 진입도로와 무관한 곳에 위치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하천을 진입도로로 점용·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민원하천은 신청인이 점용·사용을 신청한 000 진입로 상 하천의 다리와는 150m 이상 떨어져 있다.

3 피신청인 의견

-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당시 신청인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상 현재 지적불부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
- 현재 지적불부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은 00군 토지정보과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추후 지적불부합에 따른 문제가 해결된 후 관계자 입회 하 현재 사용현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 신청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판 단

- 신청인은 지적공부 상 ○○군 ○○면 ○○리 ○-○ ○,○○○㎡에 ○○○의 대표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해서 ○○○의 진입도로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현실적 위치는 지적공부 상 기재된 내용과 달리 ○○○는 같은 리 산○○○ 임야 ○○,○○○㎡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인이 실제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유지인 같은 리 산○○○(임야 ○○,○○○㎡), 산○○○(임야 ○○,○○○㎡), 산○○(임야, ○○,○○○㎡)를 따라 흐르는 수류(이하“이 사건 점용하천”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점용·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점용하천의 일부에 대해 점용·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하천·호소·구거·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였다는 이 사건 민원하천은 신청인이 실제로 점용·사용을 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용하천의 토지는 그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어 국유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공유수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한편, 피신청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이고, 지적불부합지라 항변하나, 점용·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점용·사용 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어 위법을 피할 수 없고, 신청인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과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

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따라 지적이 확정되나, 기술적인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실적 경계에 의할 수 있는데, 지적불부합지는 인접 토지와와의 권리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토지의 진실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각 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또는 개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하천은 지적공부 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이고, 이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이 점용·사용하기를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결론적으로, 지적공부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민원하천에 대해 점용·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도 토지 경계, 위치, 면적 등이 불확정되어 점용위치 및 점용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위법을 면할 수 없다.

5 결 론

- 이 민원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번지 진입로 (6×46m), 암거(4×2)L=6m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조치결과 ⇒ 수용(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유예,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



권고 사례

1. 묘지 진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27 묘지 진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등 / '22. 8.29.
- 신청인 / 피신청인 : ○○○(부산 ○○구 ○○로)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피신청인이 시행한 ○○~○○간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개설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군 ○○읍 ○리 산○○○ 임야 ○○,○○○㎡에 조성된 묘지(이하 '이 민원 묘지'라 한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도로개설공사에 신청인 소유였던 울산 ○○군 ○○읍 ○리 산○○○-○ 임야 ○○,○ ○○㎡가 편입되어 20○○. ○○.경 피신청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하였다.
- 이 민원 도로(○○군 ○○읍 ~ ○○면 구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시 행 사 :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
 - 시 공 사 : (주)○○
 - 기 간 : 20○○. ○○. ○○. ~ 20○○. ○○. ○○.
 - 사업내용 : 도로개설 4.8km (터널포함)
- 신청인은 20○○. ○○. ○○. 위 시공사인 (주)○○에게 이 민원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행하던 이 민원 묘지의 성묘를 못하게 되었으므로 묘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주)○○은 20○○. ○○.경 이 민원 도로부지의 일부에 임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 민원 도로의 법면에 점검계단을 개설하였다(아래 사진 3. 참조).

- 피신청인은 20○○. ○○. ○○. 이 민원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추락 위험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건설된 주차공간을 없애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이 민원 도로의 법면에 설치된 점검 계단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아래 사진 2. 참조).



사진 2. 현재 민원현장 도로구간(진입로 및 가드레일, 과속단속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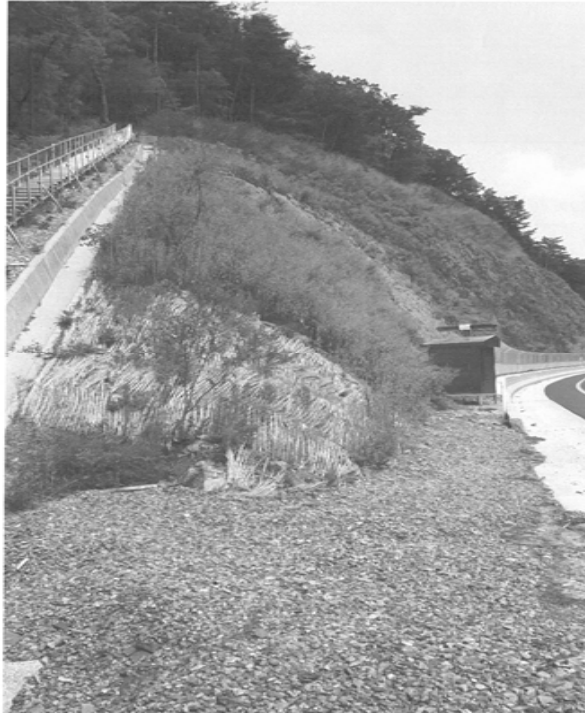


사진 3. 도로개설당시 2000. 0.경 임시주차장 및 진입로가 개설된 모습



사진 4. 도로 옆 계곡부 모습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도로 개설 당시 신청인이 요청한 대로 임시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묘지 진입을 위한 법면(경사로)에 점검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준공 이후 인접한 계곡부 방면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임시 주차공간을 없애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 단

-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개설공사 당시 신청인이 요청한 대로 이 민원 도로의 법면 일부에 임시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묘지 진입을 위하여 법면(경사로)에 점검 계단을 설치하였으나, 준공 이후 인접한 계곡부 방면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임시 주차공간을 없애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2000. 0. 00. 및 2000. 0. 00. 이 민원 도로의 구간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구간은 별도의 인도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왕복 4~6차선의 차량 이동 위주의 도로에 해당하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이 민원 도로에서 신청인이 성묘를 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갓길 주차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해당 구간의 대부분이 산지의 경사면과 접해 있는 지형인 관계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전반적인 추락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부 계곡부 접면 구간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계곡부 접면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하단부에는 석축을 보강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한다면 추락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확보된 공간에 약 2대 가량의 차량주차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위 구간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기온이 낮아 겨울에는 도로결빙의 우려도 있어 위 주차공간을 제설장비용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묘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민원 도로의 법면 일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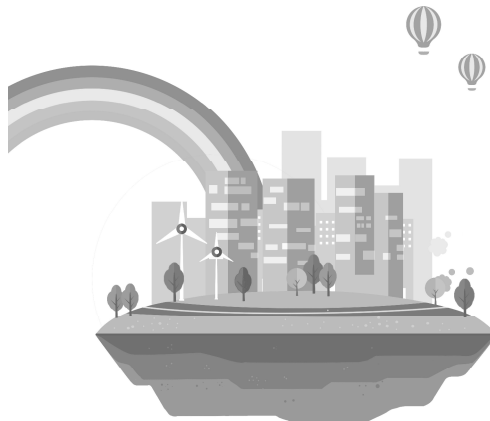
5 결 론

- 이 민원 도로의 법면 일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조상묘가 조성된 ○○군 ○○읍 ○리 산○○○ 임야 20,000㎡에 접근할 수 있도록 ○리-○○간 도로의 법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 수용(접근성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가드레일 위치 조정)



2. 오수관로 악취해결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38 증가9길 일원 오수관로 약취해결 / '22. 10. 5.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울산광역시장(하수관리과장), 중구청장(건설과장)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신청인이 거주중인 울산시 ○구 ○○○길 일원에 오랜 기간 오수관로의 악취가 진동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 2000. 00. 00. : 울산시 ○구 ○○○길 인근 오수관로 맨홀 악취 발생 민원
 - 2000. 00. 00., 2000. 00. 00., 2000. 00. 00. : 유사 민원 접수
 - 2000. 00. 00. : 유사 다수인 민원 접수 (○○○외 39인)
 - 2000. 00. 00. : 위원회 민원 접수
- 신청인 거주지 일원 오수관로의 흐름 현황 및 민원발생지는 아래 사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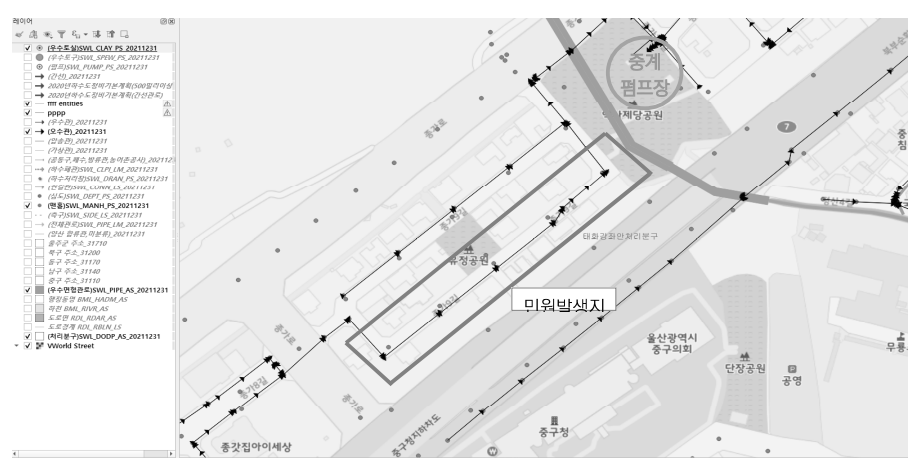


사진 1. ○구 ○○○길 일원 오수관로 현황

- 위 사진 상 확인할 수 있듯이, ○○○길은 상하로 두 갈래가 존재하고 그 두 갈래 모두에 오수 관로가 묻혀 있으나, 특히 ○○○길의 오수들이 합쳐져서 흘러가는 사진 상 아래쪽에 위치한 오수관로 인근에서 2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이 건 유사 민원들에 대응하여, 악취 포집을 실시하거나 악취 탈취설비 배출구의 높이를 조정 및 탈취기의 소모품을 적극적으로 상시 교체하는 등 민원 해결에 임하고 있으며, 20○○. ○○.경에는 오수 오점관로 조사 3차례 실시, 20○○. ○○.경 공공 오수맨홀 점검을 통하여 잠금식 폐쇄 맨홀로 교체, 20○○. ○○.경 이 민원 발생지 인근 주택들 내부 개인배수 설비 재확인, 20○○. ○○. ○○.경에는 이 민원 신청인과의 사이에 해당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 의 서	
1. 민원표시	기존 오수 정화조 시설물로 인한 오염 등 악취해소 건의 진정서
2. 합의일시	20○○. ○. ○.(수) 15:00
3. 합의장소	○구청 2층 ○○○
4. 합의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존 오수 정화조 시설물로 인한 오염 등 악취 해소 건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기로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에서 2022. 8월 중에 현장 확인(주변 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조사) 후 민원인에게 현장확인 결과를 알려주기로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부서 검토)를 실시하고, -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끝. 2022. 7. .	

사진 2. 20○○. ○○. ○○.자 신청인 및 피신청인 작성의 합의서

3 피신청인 의견

- 해당 민원은 2000년경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원으로 지속적인 관리중에 있다. 또한 해당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오수관로를 우회·신설할 목적으로 2000년도 중구 약사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4 판 단

- 신청인의 민원은 신청취지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련 민원이 2000년경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우리 위원회가 2000. 00. 00.경 및 2000. 00. 00. 양일간 민원 현장에 방문 해 본 결과, 해당 기일에는 별다른 악취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현장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도로 및 주택 내부에 있을 때 오수 악취가 느껴진다고 한다.
-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2000. 00. 00.자 합의서에 따라 2000. 00. 00. 용역금액 00,000천원원으로 한 우·오수관로 실태조사 및 악취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00. 00. 00.자 우리시 하수관리과장 발신의 공문에 의하면 이 건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도 0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를(00동, 00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금 000백만원) 골조로 하는 예산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이 민원은 별다른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의 행위(사실행위 혹은 부작위)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위 사실관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유사 민원이 2000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하여 온 점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에게 이 건 악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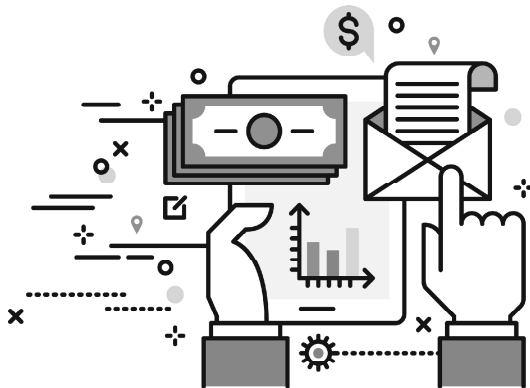
5 결 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 ○구 ○○○길 일원의 악취 해결을 구하는 신청인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울산 ○구 ○○○길 일원 (오수관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악취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 수용



3.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46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 '22. 11. 17.
- 신청인 / 피신청인 : ○○○(○○군 ○○읍 ○○길) / 울주군수(도시과장, 도로과장)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윤정록)

1 민원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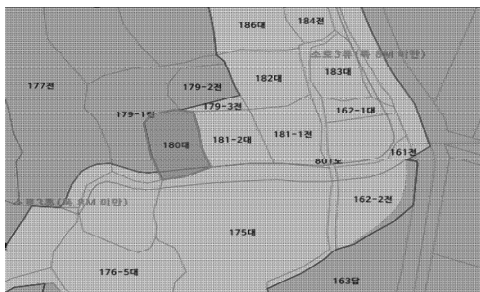
- ○○○군 ○○○읍 ○○○리 ○○○○-○번지 일원에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98m 정도)(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수년간 지정되어 있었으나, 울주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초입부 20m를 도시계획 도로에서 해제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니, 해제한 부분을 다시 도시 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달라.

2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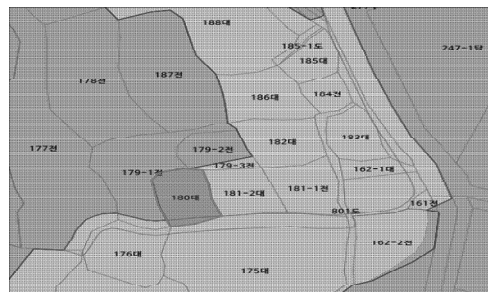
- 이 민원 도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경위는 아래와 같음.
 - 2005. 3. 24.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6호)
 - 2021.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신청인 지주 김○○)
 - 2021. 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조회 (도시과 → 도로과, 청량읍)
 - 2021. 2. ○○. 의견서 제출(청량읍 → 도시과)
 -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설 요구
 - 2021. 2. ○○. 의견서 제출(도로과 → 도시과)
 - 사업추진계획은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울주군 공고 제2020-2953호)상 2-2단계(2026년 이후)로 분류되어 있어 실효시기(2025.03.24.) 내 사업추진 어려우며, 민원발생지인 ○○○리 ○○○○-○번지가 포함된 노선 일부를 제척 또는 현황도로 반영하여 변경 해제하는 것은 도시계획수립부서에서 결정
 - 2021.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검토

- ▶ 기존 도로(마을안길)로 각종 주택 진입이 가능하고, 해당시설 실효시기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없어 해제 입안신청 민원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 입안 수용
 - 2021.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결과 통지(수용)
 - ▶ 토지 소유자(신청인) 편입 면적($A=○○.○○\text{m}^2$) 해제 결정
 - 2021. ○. ○○.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1. ○○. ○.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주군 고시 제2021-○○○호)
 - 2022. 9. ○. 다수인민원 접수
 - 2022. 9. ○○. 다수인민원 처리계획 검토보고
 - 2022. 9. ○○. 다수인민원에 대한 회신
- 민원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 설명
 - 이 민원 도로(소○-○○호선)는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 3. ○○. 지구 단위계획구역(○○지구) 지정 시 최초 결정되었음.
 - 피신청인은 20○○. ○. ○○. ○○읍 ○○리 ○○○-○(전, ○○○ m^2) 토지소유자 김○○ 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 신청이 접수 되자, 해당 시설은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실효 시기인 20○○. ○. ○○. 내 사업추진 계획이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2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8-3-2-4”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민원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제 입안 수용하였으나,
 - 신청인과 ○○읍행정복지센터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설을 요구 하고 있음.

[사진 1.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현황]



해제 전 《2021년 1월 21일 현재》



해제 후 《2022년 10월 5일 현재》

[사진 2. 이 민원 도시계획도로 주변 현황]





3 피신청인 의견

- 울주군에서 5년마다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할 수 있고,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인접 토지 소유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라 울주군 도로과 및 청량읍의 의견조회 후 일부구간 해제되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울주군 공고 제 2021-2861호 2021. 12. 29.) 상 202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실효기간(2025. 3. 24.)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
※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현장 확인 결과 농지 진·출입으로 이용되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존재하여 도시계획도로 재지정 및 개설이 되지 않아도 진·출입이 가능함.
-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기준(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이 충족될 시 재검토하겠음.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9-1-3.

4 판 단

- 이 민원 도로(소○-○○호선)는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5. 3. 24.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지정 시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0년 이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이 연기가 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오다, 피신청인이 2021. ○. ○○. ○○음 ○○리 ○○○-○ 토지소유자 김○○의 입안 해제 요청을 수용, 도시계획도로 초입부 20m를 해제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피신청인은 해당 시설이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실효 시 기인 2025. 3. 24. 내 사업추진계획이 없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의 2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2-4”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민원에 대해 반려했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입안을 수용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5. 3. 24.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 지정 시 수립된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여 시기를 일실 하였으며, 또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3-6에 따르면 ‘실효 또는 해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계획 등 실질적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재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도로개설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 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도로 재지정도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에서 각종 불편을 묵묵히 참아오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굳게 믿고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초입부 20m를 해제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읍 ○○리 ○○○(대, ○○○㎡) 주변 지역은 맹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같은 리 ○○○ 소재 주택 및 ○○○-○ 소재 주택 두 필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미개설로, 진입로가 현재 사유지인 같은 리 ○○○-○, ○○○, ○○○에 걸쳐 있어, ○○○-○ 토지소유주의 사유권 주장 시 해당 주택으로의 진입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민원 도로의 개설을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공익성, 도로 연계성, ○○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결 론

- 이 민원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5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고시 제 2005-106호로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 도로임.

- 이 도시계획도로 전체 구간 중 초입부를 해제함으로 인해 ○○읍 ○○리 ○○○ 일원에 위치한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폭 1.4m 정도의 현행 도로가 있다고 하나, 그마저도 일부 구간은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어, 장래에는 맹지가 되어 농경지와 주택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기를 권고함.

주 문

피신청인은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 불수용



4. 도랑부지 매수 또는 사용료 청구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48 토지 매수 또는 사용료 요구 / '22. 11. 21.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북구청장(건설과장, 부과담당관)
- 결정결과 : 권고(주심위원 : 이상일)

1 신청취지 및 이유

- 신청인이 소유 중인 울산시 ○구 ○○동 산○○-○번지 임야 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내 일부 토지(도랑 부분)를 수년간 세금감면도 해주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

2 사실관계

- 그간 추진 경위
 - 2016. ○○. ○○. : 진정 민원 접수
 - 2016. ○○. ○○. : 진정 민원 회신
 - 2017. ○. ○○. : 민사소송 제기(울산지방법원2017○○ ○○○)
 - 2017. ○. ○○. :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 2017. ○. ○○. : 진정 민원 접수
 - 2017. ○. ○○. : 진정 민원 회신
 - 2017. ○. ○. : 태풍(차바) 도로복구공사 준공
 - 2017. ○. ○. : 민사소송 판결(기각)
 - 2022. ○○. ○○. : 울산광역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 이 민원 토지는 ○○천으로 흐르는 계곡의 낮은 지점으로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류가 흐르고 있고, 토지 일부는 ○○학교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피신청인은 2011. 03월 계류보전사업(○지구)을 시행하였고, 2011. ○.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 정도가 계류보전사업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 2016년 제18호 태풍 차바(CHABA)는 2016년 9월 28일에 발생해 2016년 10월 5일 남해 안 거제시와 부산광역시에 상륙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태풍으로, 이 태풍으로 인하여 ○○ 학교 진입도로 일부가 유실되어 피신청인은 2016. 10월 ○○학교 진입도로 응급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당시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일부 유로를 인접 국유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유로변경 공사를 시행하였다.
- 피신청인은 다음해인 2017. 03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학교 진입도로에 대하여 항구 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도로 응급복구공사 시에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유로 구간을 인접 국유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2017. ○. ○일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유로 변경이 아닌 토지 매수함이 타당하다는 내부검토를 거쳐, 2017. ○. ○. 및 2017. ○. ○○. 신청인에게 토지 매수 검토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두차례 발송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본인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2017. ○. ○○. 울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2017○○ ○○○)을 제기하였다.



2017년 항구복구공사시 민원관련 도면



현재 전경사진 1)



현재 전경사진 2)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부재로 인해 현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가 불가하며,
- 이 민원 토지는 계곡의 낮은 지점으로 계류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흐르고 있었으며, 산사태 발생 및 도로유실 등의 재해 예방 목적으로 2011년 계류보전사업 추진 당시 신청인의 사업시행 동의를 득하여 추진하였고, 이 민원 토지는 당초부터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원상 복구할 사항은 없다.
- 또한, 2016. 10월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학교 진입도로 복구요청에 따라 2017. 03월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은 2017. 03월 도로복구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 07월 민사소송 판결 결과 ‘기각’ 되었다.

4 판 단

- 신청인의 민원은 신청취지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련 민원이 2016년경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우리 위원회가 2022. 11. 17.경 민원 현장에 방문해 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등의 수해복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 보상이나 세제 혜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신청인의 민원제기는 타당하다고 본다.
- 이 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민원회신을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 서나 이 민원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문서나 회의 자료가 부존재하며,

- 일련의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고령의 나이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그동안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과 2017년 ‘공사정지가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가 “기각”된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피신청인은 태풍으로 인한 도로 유실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 복구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 사유 재산권은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고,
- 아울러 피신청인이 2017년 이 민원 토지 전체 2,000㎡에 대한 협의 매수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이미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재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행정은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2022. 11. 17. 현지조사 시에 신청인과 유선 통화하여 이 민원 토지 전체 2,000㎡를 매수해줄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신청인도 같이 청취하여 그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적극 협의보상하여 이 민원 토지 임야 2,000㎡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 10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 및 하천, 구거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5년 내의 재산세(토지)는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임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공유수면(하천)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민원의 토지 구간에 대하여는 재산세(토지) 감면과 기존에 과 부과된 재산세(토지)에 대하여는 환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도로 및 공유수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동 산 ○○-○번지 임야 2,○○○㎡를 매수하고, 재산세(토지)를 감면 및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 수용



5. 부당한 건축신고 보완 처분 취소 요구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59 부당한 건축신고 보완 처분 취소 요구 / '22. 12. 14.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북구청장(건설과장)
- **결정결과** : 시정권고(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구 ○○동 ○○○번지 답 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동 ○○○○-○ 하천 ○○,○○○㎡의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이하 '이 민원 진입도로'라 한다)로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점·사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점·사용을 허가를 바란다.
- 인근 같은 동 ○○○-○외 1필지의 경우 같은 동 ○○○○-○번지의 일부 토지(신청인의 진입도로와는 상충되지 않음)를 점·사용허가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고, 피신청인은 같은 동 ○○○○-○ 토지가 폐천이 되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인접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점·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와 인접지의 진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는 부당한 보완요구라고 주장한다.

2 사실관계

-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는 지적도 상 맹지에 해당하나, 이 민원 진입도로를 진입도로 하여 영농을 해오던 중, 2021. ○. ○○. 울산광역시북구청 건축주택과(이하 '건축주택과'라 한다)에 접수번호 2021-3720000-○○○호로 이 민원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 건축주택과는 2021. ○○. ○○. 건축허가를 위해 이 민원 진입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축)신고 협의 공문을 피신청인에 발송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21. ○○. ○○.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다.

1. 건축주택과-○○○○○○(2021. ○. ○.)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사용 및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제3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동 ○○○○-○번지(천)은 현재 다수인이 사용하는 임시 농로이며, 건축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로 개인에게 전속시킬 경우 향후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크므로 점용허가 불허함. 끝.

• 이 민원 진입로는 202○.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호에 따라 하천구역 변경을 사유로 폐천부지로 고시되었고, 20○○. ○. ○. ○. ○○동 ○○○○-○ 천 1,○○○㎡, 같은 동 ○○○○-○ 천 1○○㎡, 같은 동 ○○○○-○ 천 4○,○○○㎡로 지적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이 민원 진입로는 같은 동 ○○○○-○에서 ○○○○-○로 변경되었다.

• 신청인은 202○. ○. ○. 이 민원 토지에 재차 건축허가(단독주택, 신축)를 건축주택과에 신청하였고, 건축주택과는 건축허가를 위해, 202○. ○. ○. 이 민원 진입로가 폐천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가 아닌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축)신고 협의 공문을 피신청인에 발송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2○. ○. ○.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건축주택과-○○○○○○(202○. ○. ○.)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관련하여, ○○동 ○○○○-○번지(천)은 현재 다수인이 사용하는 임시 농로로서 해당 진출입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재협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진입도로는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00호(2022. 0. 0.)에 따라 폐천부지 로 고시 된 곳으로,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진입로의 현 이용현황은 구거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통행은 가능하나, 향후 인근 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접 주변 토지이용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있는 곳으로 다수인이 사용하는 임시도로로 판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접 필지 소유자의 동의를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서류를 요구하였다.
-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해 인접 필지인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시 점용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4 판 단

- 피신청인은 2022. 00. 0.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허가 대상인 이 민원 진입도로와 인접한 토지인 00동 000-0 답 000㎡ 및 같은 동 000답 0,000㎡ 두 필지의 소유자(이하 “동의대상자”라고 한다)로부터 동의를서를 받아올 것을 보완 요청한 바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

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제1호),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제2호)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소유자 등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 여부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두2164 판결 공유수면점용등).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①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의대상자 중 같은 동 ○○○-○번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접 토지소유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우리 위원회가 현장 확인한 결과, 신청인에게 점용·사용허가를 하더라도 동의대상자의 토지 진출입에 장애가 되어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¹⁾

피신청인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동의대상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1) 우리 위원회가 2022. 12. 01. 이 민원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논의한 결과 ① 신청인은 동의대상자들이 이 민원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인하여 각 토지들의 사용에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점용허가 대상 토지(이 민원 진입로)에 허가 목적 외의 일체의 인공구조물, 그 외 설비나 형질변경 등을 행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서로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② 나아가 이 민원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목적인 단독 주택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신청인은 건축 대상 토지에 우수 등이 갑작스레 불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수 관경을 확장하고 인근(10m이내에 위치함) 하천으로 직배수 되도록 설계하는 등 동의 대상자들의 토지에 수해를 입히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현장에서 직접 살펴봐도 신청인과 동의 대상자들 소유 각 토지들 사이에 실제 경사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동의대상자의 토지 진출입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설계 자료상의 건폐율을 살펴보면, 신청인 건축대지 면적(○○○㎡)중 약 9.6% (○○㎡) 밖에 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여 무조건적으로 그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처분은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사료 되고, 또한 신청인은 인접토지의 소유자 간에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공유수면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 론

- 피신청인의 이 민원 진입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위해 인근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징구 보완 요청은 부적합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고, 피신청인은 2022. 10. 7. 신청인에게 한 건축신고 보완 처분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신청인 토지의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울산 ○구 ○○동 ○○○○-○번지(변경 후 ○○○○-○)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권고(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신청인은 2022. ○○. ○. 신청인에게 한 건축신고 보완 처분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 신청인 토지의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울산 북구 ○○동 ○○○○-○번지(변경 후 ○○○○-○)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권고한다.

조치결과 ⇒ 수용

조사중 해결

1. 구유재산 수의 매각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12 구유재산 수의 매각('22. 2. 21.) / '22. 5. 9.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동구청장(총무과장)
- 결정결과 : 조사 중 해결(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울산 ○구 ○○동 ○○○-○ 대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 노후 및 파손된 주택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문의하였으나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이 민원 토지 통행을 위하여 인접 토지(구유지)인 같은 동 ○○○-○ 대 ○○㎡(이하 '이 민원 구유재산'라 한다)를 사도 개설을 조건으로 매수하여 건축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지상 1층에 블록조 단독주택 ○○.○○○㎡(19○○. ○. ○○. 사용 승인)과 1층 목조 단독주택 ○○.○○㎡(19○○. ○. ○. 사용승인)의 소유자이다.
- 이 민원 토지는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 토지대장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구유재산은 20○○. ○. ○○. 당시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협의취득 하고 남은 것으로 현재 피신청인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 계약 등 별도의 관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신청인은 2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조건부 공유지 수의 매수 및 건축 허가 진정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건설과, 건축주택과에 각각 민원 공유지의 사도 개설 가능 여부와 사도개설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을 검토의견 요청하여 그 결과 이 민원 공유지는 이미 도로에 접해있어 사도개설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도개설허가 대상이 아니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실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는데 사도 개설이 불가하므로 이 민원 공유지를 활용한 건축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총무과-0000, 2000. 0. 0.)
- 우리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 및 지상 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동쪽 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은 이 민원 공유재산으로 인하여 단절된 상황이며, 서쪽으로는 폭 약 3m 현황도로(지목 대지)가 연결되어 있으나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다.

3 결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제1항제9호에 따르면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일반재산인 이 민원 공유지를 사도개설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 신청할 경우, 매각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조례 시행규칙 [서식 25]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재산 관리관인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민원 공유재산 매수 신청이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도 개설 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도 피신청인 의견 및 우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수긍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충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매수 신청 접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답변 및 우리 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였으므로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2. 농경지 옆 태풍피해 제방유실 복구 요청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53 농경지 옆 태풍피해 제방유실 복구 요청('22. 10. 4.) / '22. 11. 7.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울주군수(농업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 결정결과 : 조사 중 해결(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한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면 ○○리 ○○○번지 일원 소하천 둑이 무너져서 제방이 유실되었으므로, 기존처럼 원상복구 해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울산 ○○군 ○○면 ○○리 ○○○번지 및 ○○○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들')에서 농경을 하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태풍 한남노는 2022. 9. 6.경 우리나라를 관통한 바 있으며,
- 신청인은 태풍 한남노가 지나가면서 내린 비로 불어난 물이 수로를 넘어서 농경지로 침입한 탓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 론

- 신청인의 민원은 신청취지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요청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토지에 방문하여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 등의 소유가 아닌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들 내부에 위치한 폭 2미터도 채 되지 않는 ‘물길’ 수준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인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현저하게 마른 채로 보존되는 지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지 내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수로)에 관한 법령상의 복구 의무나 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다만, 피신청인이 이 건 민원의 조사 중에 해당 피해가 국가적 재난인 태풍 피해임을 감안하여 2000. 00. 00.경부터 같은 달 00. 무렵까지 미니 굴삭기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물길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인의 고충을 해결한 바 있다.





민원 토지들 지상의 물길 정비 모습



민원 토지들 지상의 물길 정비 완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민원은 우리 위원회가 조사 중에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를 조사 중 해결로 종결한다.

3. 배수로 맨홀 정비요구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73 배수로 맨홀 정비요구('22. 12. 09.) / '23. 1. 16.
- 신청인 / 피신청인 : ○○○(○○군 ○○길) / 울주군수(건설과장)
- 결정결과 : 조사 중 해결(주심위원 : 윤정록)

1 민원취지

- 울산 ○○○○○○○○와 ○○○○ 사이 배수로가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마지막 구간의 배수로가 하천정비사업으로 막혀 있어 맨홀에서 배수물이 넘치고, 장마 시에는 인근 농경지로 배수물이 흘러나와 농경지가 침수되므로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

2 사실관계

- 그간 추진 경위
 - 2022. ○월 : ○○○ 준설작업 시행
 - 2022. ○월 : 한남노 태풍 집중호우로 도로변 배수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 2022. ○월 : 태풍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 요청
 - 2022. ○○. ○○. : 민원 회신(유선 통화)
 - ▶ '23년 1월 해당 구간[○○천] 원활한 유수와 하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 및 하상정리 시행 안내
- 신청인이 민원 제기한 배수로는 ○○○○○○○○와 ○○○○ 사이 도로에 위치하며 위치는 다음과 같다.



3 결 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년 하절기 00천 준설작업을 시행하면서, 00천변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로의 하천 연결배관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천 준설토를 도로변 제방 경사면으로 밀어붙여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하천으로 연결된 배수관이 막혀 한남노 태풍 집중호우시 배수로 물이 넘치고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주장대로 00천 준설작업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예산 부족과 우선순위 선정의 이유로 정비를 미루어 왔으나, 2023년도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0. 00. 00. 우리 위원회와 현장조사시 2023년도에 확보된 하천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2000년 00월중 정비 완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민원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2000. 00. 00. 우리 위원회와 현장조사시 2023년도에 확보된 하천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2000년 00월중 정비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이 민원은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주장대로 00천 준설작업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하고, 2023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이 민원 배수로 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하고 조사중 해결로 종결하고자 한다.

기각

1. 도로사용 토지 보상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06 도로사용 토지 보상('22. 2. 21.) / '22. 3. 28.
- 신청인 / 피신청인 : ○○○(○○시 ○○길) / 동구청장(건설과장)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구 ○○동 ○○○-○○ 도 ○○㎡(이하 '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는 지하에 상·하수관 및 배수구가 매립되어 있고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 등 사실상 피신청인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8○. ○. ○○. : 인접토지 ○○○-○ 전 지상건축물 준공(건축물 대장 부재)
 - 198○. ○. ○. : 이 민원 토지 모지번(○○○-○) 구획정리 시행신고
 - 198○. ○○. ○. : 모지번에서 이 민원 토지 분할(○○○-○ → ○○○-○○)
 - 199○. ○. ○. : 인접토지(도로) ○○○ 환지(울산시)
 - 199○. ○. ○○. : 이 민원 토지 모지번(○○○-○)도로구획정리 완료
인접토지 ○○○ 합병
 - 20○○. ○. ○. : 인접토지 ○○○ 울산도시계획시설(소로○-○○○) 사업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호)
 - 20○○. ○. ○. : 인접토지 ○○○-○ 소유권 이전(○○○ → ○○○)
 - 20○○. ○. ○. : 인접토지 ○○○-○ 단독주택(다가구) 사용승인(○○○)
 - 20○○. ○. ○. : 이 민원 토지 소유권 이전(○○○ → ○○○)

- 2000. 0. 0. : 인접토지 000-0 소유권 이전(000 → 000000000)
 - 2000. 0. 0.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미지급용지해당·보상청구 가능여부 문의)
 - 2000. 0. 0.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미지급용지 및 보상 해당하지 않음)
 - 2000. 0. 0. : 이 민원 토지 소유권 이전(000→(주)0000, 신청 외 000)
 - 2000. 0. 0.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이 민원 토지 보상 요청)
 - 2000. 0. 0.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미지급용지 아니므로 보상 불가)
 - 2000. 0. 0. : 시민신문고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0. 0. 0. 이 민원 토지를 ‘공유 물분할을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 민원 토지와 인접 토지인 같은 동 000-0 다세대주택은 동일인(000) 소유의 토지였던 것이 확인된다.
 -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00. 0. 0. 이 민원 토지 모지번(같은 동 000-0 도 000㎡)이 도로로 지목 변경된 후 1900. 0. 경 구획정리사업에 이 민원 토지 모지번 일부(00㎡)가 포함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해 10. 4. 모지번에서 분할되었고, 1900. 0. 00. 해당 도로구획정리사업 완료되면서 모지번은 폐쇄되었다.
 - 피신청인은 2000. ~ 2000.에 걸쳐 도시계획도로(소로0-000호선, L=350m, B=6~8 m) 개설(확·포장사업)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도시계획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사실은 없다.
 - 2022. 3. 00. 위원회의 현지 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에는 북측 경사지형에서부터 이어지는 배수관과 인접 다세대주택이 사용하는 상수도계량기 및 상하수관이 매립되어 있고 다세대주택 주차장 조성시기에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아스콘 포장에 이 민원 토지 일부까지 연속하여 시공되어 있다.

3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이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등기우편이 반송된 후에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 및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 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민원 과태료 부과처분, 이 민원 과태료 가산금징수처분 및 이 민원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4 판 단

- 이 민원 토지가 피신청인이 실제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인근 건물의 통로로 제공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의 자력으로 도로포장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수도 매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도로계획상 도로로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개설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시가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 22032 판결 참조).
- 위원회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 피신청인이 배수 측구를 설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민원 토지로 이어진 아스콘 포장은 인접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당시 이 민원 토지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상·하수도관 또한 다세대주택 개별세대 이용을 위하여 인입된 것으로 이 민원 토지의 이용은 주로 인접한 다세대주택 주민들로 한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이 점유·관리하거나 이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18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22. 4. 11) / '22. 5. 23.
- **신청인 / 피신청인** : ○○○(○○군 ○○길) /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울산 ○○군 ○○읍 ○○리 ○○○-○ 과수원 〇,〇〇〇㎡(이하 '이 민원 토지'이라 한다)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20〇〇. 〇. 〇〇.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있어 낙후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인 공영개발사업 추진,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는 바, 도로 및 철도로 인해 단절되어 주거 환경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20〇〇. 〇. 〇〇. 같은 리 산○○○-○ 임야 〇,〇〇〇㎡가 등록전환되어 이 민원 토지인 같은 리 ○○○-○ 과수원 〇,〇〇〇㎡ 및 같은 리 ○○○-○ 과수원 〇〇〇㎡, ○○○-○ 과수원 〇,〇〇〇㎡ 3필지로 분할되었다.
- 신청인 배우자는 20〇〇. 〇. 〇〇. 매매를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분할 전 면적에 대한 공유지분 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〇〇. 〇. 〇〇. 이 민원 토지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2/3에 대해서도 공유물 분할(지분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 이 민원 토지 동쪽으로는 대로1류 주간선(국도)이 이어지고 있고, 동쪽으로는 광로2류 주간선(고속도로)이 위치하며, 신청인 배우자 소유인 ○○○-○ 과수원 〇,〇〇〇㎡ 중 〇〇㎡의 평면적 범위 좌우용지폭 수직적 범위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 이 민원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0. 0. 00. : 000 지구, 000 1·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 2000. 0. 00. : 진정민원 접수 (신청인 → 울주군 관광과, 울주군 도시과)
 - ※ 0000 행사 운영권 00000000 이관 요청
 - 2000. 0. 00. : 진정민원 접수 (신청인 → 시의회)
 - ※ 0000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 0000 운영권 00000000 이관사실 안내
 - 2000. 0. 00. : 진정 민원 회신 (시의회 → 신청인)
 - ※ 국책사업 등 공영개발사업 추진의 경우에 검토 가능, 0000000 주관으로 울주군 결정사항
 - 2000. 0. 00. : 진정 민원 회신(00군 관광과 → 신청인)
 - ※ 전문성 강화를 위한 0000000 위탁 운영, 0000 개최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노력 계획
 - 2000. 0. 00. : 진정 민원 회신(울주군 도시과 → 신청인)
 - ※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서(울산시 도시계획과) 안내
 - 2000. 00. : 진정 민원 접수 (신청인 → 울주군 의회)
 - 2000. 00. 00. : 진정 민원 회신 (울주군 의회 → 신청인)
 - ※ 주민소통 행사 추진 안내 등 해당 부서 의견 회신
 - 2000. 00. 00. : 진정 민원 회신 (시 도시계획과 → 신청인)
 - 2000. 00. 00. : 진정 민원 접수 (신청인 → 울주군 도시과 → 시 도시계획과)
 - 2000. 00. 00. : 진정 민원 회신 (시 도시계획과 → 신청인)
 - ※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사유 미해당으로 불가, 기반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군 협의안내
 - 2000. 00. 00. : 고충민원 접수, 시 도시계획과 방문 민원 접수
 - 2000. 00. 00. : 진정 민원 회신 (시 도시계획과 → 신청인)
 - ※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사유 미해당으로 불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규정 안내

3 피신청인 의견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3. 6. 27. 지정되어 관리해오고 있는데, 신청인이 요구하는 개발제한 구역 조정(해제)에 관한 사항은 국책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집단

취락,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나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군 ○○읍 ○○○ ○길 일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대상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 마을회관, 경로회관 설치·정비 등 주민 지원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안내 회신하였다.

4 판 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는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필요없게 된 경우, 종로2류 15미터이상 도로나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 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 ○길 일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의 단절 토지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26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22. 5. 16.) / '22. 7. 25.
- 신청인 / 피신청인 : ○○○(○○군 ○○길) / 울주군수(건축과장)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오영은)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울산 ○○군 ○○읍 ○○리 ○○○○-○ 대지 ○○○㎡ 상 주택(○○.○○㎡,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1976. 경 새마을 권장 사업으로 이 민원주택 부속건축물(○○㎡, 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창고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 ○.○에 와서 위반건축물이라며 피신청인이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은 20○○. ○. ○○. 1층 시멘트블록 단독주택(창고) ○○○㎡ '무단증축'을 원인으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었고, 이 민원 주택은 20○○. ○○. ○.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따라 건축면적 '0'→'○○.○○',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0'→'○○.○○'로 직권변경된 사실이 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 위치 및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지위치	건축주등 (행위자)	행위년도	구 조	용 도	위반면적	층수 /동수	위반법령
○○읍 ○○리 ○○○○-○번지 [대 ○○○㎡] (자연녹지지역)	○○○	19○○	시멘트블록	단독주택(창고)	○○㎡	1층 /1동	건축법 제14조 (무단증축)

- 경상남도 울주군 〇〇면 〇〇리는 19〇〇. 〇. 〇. 건설부고시 제〇〇〇호로 도시관리계획(녹지지역)이 결정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20〇〇. 〇. 〇〇.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울산광역시 고시-〇〇호)로 지정되었다.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행위년도를 항공사진을 통하여 최초 확인되는 19〇〇년으로 보고 있고, 신청인은 고충민원 신청서 및 현지조사에서 19〇〇년 경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9〇〇년, 19〇〇년, 19〇〇년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 이 민원 관련 추신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〇〇. 〇〇. 〇〇. :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접수
 - 20〇〇. 〇〇. 〇〇. : 민원 회신(피신청인 → 신고인)
※ 현장 확인 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회신
 - 20〇〇. 〇〇. 〇〇. : 현장 확인
 - 20〇〇. 〇〇. 〇〇.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서)(피신청인 → 신청인)
 - 20〇〇. 〇〇. 〇〇. : 시정명령(1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시정명령 촉구(1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1차, 〇〇,〇〇〇원 완납)
 - 20〇〇. 〇〇. 〇〇. : 시정명령(2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시정명령 촉구(2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이행강제금 부과통지(2차, 〇〇〇,〇〇〇원 완납)
 - 20〇〇. 〇〇. 〇〇. : 시정명령(3차)
 - 20〇〇. 〇〇. 〇〇. : 시민신문고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건축물은 신청인이 1900년 경 신고 없이 증축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관련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인(양성화) 또한 불가하다.

4 판 단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이 민원 건축물은 1900년, 1900년, 1900년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1900년에 최초 확인되는 바, 19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고, 00군 00읍 00리 0000-0 토지는 1900년 도시관리구역(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구 건축법」(1987.4.1. 법률 제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 2항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민원 주택의 창고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확인되므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 한편, 위반건축물이 개정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2008. 3. 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철거)을 명령한 뒤, 그 후에도 신청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축사용도 건축허가 부당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41 축사용도 건축허가 부당('22. 7. 14.) / '22. 10. 11.
- 신청인 : ○○○(○○군 ○○길)
- 피신청인 : 울주군수(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환경자원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신청인 거주지 인근의 ○○면 ○○리 ○○○번지 축사 허가로 인한 냄새, 정주여건 불리함으로 인한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축사 허가를 취소하거나,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조치(공사중단) 및 재심의(또는 영구 가림막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사실관계

- 축사 건축허가 개요
 - 건 축 주 : ○○○
 - 대지위치 : ○○면 ○○리 ○○○번지외1필지(○○○번지, 총면적 ○,○○○㎡, 답)
(○ ○○시설의 경우 ○○면 ○○리 ○○○번지에만 위치)
 - 용도지역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구역(○○천)
 - 용 도 :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퇴비사, 퇴비저장시설, 창고)
 - 규 모 : 1동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퇴비사및퇴비저장시설 ○○○.○㎡)
2동 동·식물 관련시설(창고) ○㎡
- 이 민원 관련 그간 추진 상황
 - 20○○. ○○. ○○. : 축사 건축신고 신청
 - 20○○. ○○. ○○. : 협의
 - 20○○.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수용)
 - 20○○. ○○. ○○. : 건축신고 처리

- 2000. 00. 00. : 착공신고 수리
- 2000. 00. 00. : 피신청인에 다수인 민원 접수
- 2000. 00. 00. : 피신청인 민원 회신 (축사 건축허가 취소 불가)
- 2000. 00. 00. : 신청인 우리 위원회 민원 접수
- 2000. 00. 00.경 : 이 민원 축사 건축 현장 석축 붕괴
- 2000. 00. 00.경 : 축사 소유주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사 중단 통보

3 피신청인 의견

- 00면 00리 000번지 축사 허가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당초 설계와 달리 부실 시공한 부분이 발견되어 공사중단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건축허가에 대한 재심의는 허가(축사허가) 부서에서 검토 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로 재심의 상정 할 수 있다.

4 판 단

① 서설

- 신청인의 민원은 이 민원 대상 축사 건축 신고상의 각 항목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문의하는 등 다소 복잡한 면이 있으나 이를 선해하면 신청인의 민원은 신청취지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00. 00.경 축사 건축허가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② 신청인

- 우선,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5호 및 울산광역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 혹은 소극적인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민원인의 요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③ 건축허가 취소

- 건축법상 소정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행위나 소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관할 시장·군수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관할 시장·군수 등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나 도시계획법 제4조 등의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허가는 그 본질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건축과 관련된 위해의 방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과 같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일반적 금지도 원래 자유로운 것을 개별적인 해제를 예정한 채 단지 예방적 차원에서 금지시켜 둔 것일 뿐 원래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진압적 목적에서 금지시킨 것이 아니므로, 개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위와 같이 사전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누13934 판결 등 참조)
- 이 민원 축사 건축허가 신청이 2000. 00. 00.경 접수되어 피신청인(환경자원과, 축수산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등)이 건축복합민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해당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 나아가 신청인이 2000. 00. 00.경 피신청인에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결과, 건축허가를 득한 축사 소유주에게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이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민원 축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화신 역시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④ 건축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거부

- 이 건 축사 건축 허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00. 00. 00. 개최되었는 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3-3-1에 따라 재심의를 위해서는 건축신고 내용 중 주요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할 것이나, 이 건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바는 없어 보인다.

⑤ 축산업허가 취소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규정에 따르면, 축산업의 인·허가 검토는 처리 시설, 즉 이 민원의 경우 축사 건축물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완비된 이후에 축산업 허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축산업 인·허가 여부는 이 민원 축사의 준공 이후에 검토될 사안이다.

⑥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조치(석축 매쌓기 설계 및 시공 부실 사항 관련-공사중단)

-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이 건 민원 축사의 경우 20○○. ○○. ○○.경 건축물 기초를 이루는 석축이 붕괴되면서 추가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시공 부실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방지 차원의 행정조치를 요구한 바, 피신청인이 20○○. ○○. ○○.경 즉각적으로 이 민원 축사 건축주에게 추가 토사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지 조성 및 건축물의 안전 확보전 까지 공사 중지 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공사 중지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즉시 발령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⑦ 영구가림막 설치 거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이를 설치할 법령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민원 신청인 혹은 축사 소유주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경우 설치가능할 것이다.

⑧ 결어

- 이 민원 신청인이 거주중인 ○○마을 ○○○○을 중심으로 반경 1km내의 축산업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마을 주민인 ○○○의 경우 ○○○○에서 이 민원 축사보다 가까운 곳인 ○○군 ○○면 ○○리 ○○○-○번지, 이 민원 축사보다 멀리 떨어진 곳인 같은 리 ○○○번지에도 축사를 하고 있는 등, ○○ ○○○○을 중심으로 1km 이내에는 현시점 ○○건의 축사 사업장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민원대상 축사가 특별히 위 다른 축사들에 비하여 마을회관에 가까이

위치하였다거나 가축의 수가 많다거나 인근에 주택이 산재하여 있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민원 축사만 특히 다른 축사들과 달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냄새, 정주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따라서 위 각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신청인의 민원은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회신이나 행정조치 등에 달리 위법·부당한 점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 **민원표시/의결일자**: 2022-고-004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22. 7. 15.)/'22. 8. 30.
- **신청인/피신청인**: ○○○(○구 ○○로) / 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 **결정결과**: 기각(주심위원: 강승모)

1 민원취지

- 신청인은 20○○. ○. ○○.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받았는데, 단속장소인 ○○○초등학교 맞은 편 ○○○○○○○○는 황색실선 안에 주차구역을 마련하여 놓은 반면, 학교 쪽은 같은 도로 상황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없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20○○. ○○. ○○. ○○:○○경 피신청인에게 단속지점(○○○초등학교와 ○○○○○○○○ 사이 도로)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단속근무조가 출동하여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 및 신청인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였다.
- 신청인은 단속 사실을 인지한 후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진술을 신청한 바 있고, 심의한 결과 부과 판정을 받아 교통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부과 결정문을 SMS 및 등기 우편의 방식으로 통보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종점 구간



민원인 단속 구간 (2000. 0. 00.)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과태료 부과에 적정성 여부
 - 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2000. 00. 00. 주차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이 민원 단속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유무
 - 어린이보호구역 사중점에 표지판 설치 및 진행방향 노면에 노면도색 작업을 하여 어린이보호 구역임이 표시되어 있고 또한 000초등학교 정문에 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노면도색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이 재차 표시되어 있음.

4 판 단

- 신청인의 민원은 신청취지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 우선, 신청인의 단속 시간을 확인해보면 2000. 00. 00. 00시 00분 및 00시 00분으로 약 20분 간격으로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구역에 비해 과태료가 3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20분가량 사이렌을 울리며 계도 및 이동을 유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한편, 우리 위원회가 2000. 00. 00.경 민원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000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사중점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는 노면도색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특히 민원 현장 도로의 경우 도로 외곽으로 황색 실선이 도색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민원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6. 배관공사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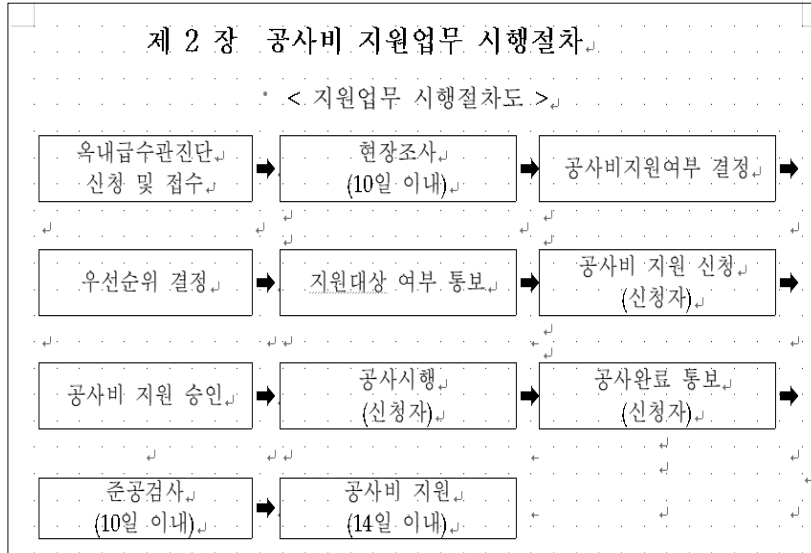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49 배관공사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22. 10. 7.) / '22. 11. 21.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로)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남부사업소장)
- **결정결과** : 기각(주심위원 : 박호수)

1 민원취지

- 노후 배관공사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말을 듣고, 신청인은 울산시 ○구 ○○로 ○○번길 ○-○○(○○동 ○○○-○○) 주택에 대해 노후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으나, 피신청인은 절차 미이행 및 선정업체 미이용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음용률 향상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매년 일정 사업비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편성하여 각 사업소로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에 대한 처리절차와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공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 ○○월경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업무지침」을 규정하여 각 사업소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량사업 범위는 기존 노후관을 새로운 내식성 수도관으로 바꾸는 “교체”,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 수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이며, 공사비 지원업무 처리절차 및 지원금액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처리절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안내

| 옥내급수관 노후 부식으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나요?
| 옥내급수관 개량으로 수돗물,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 옥내급수관 비내식성 자재(아연도 감관 등) 사용으로 내부 부식 및 녹물이 나오는 경우
-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 지원 우선순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일반주택
(면적 165㎡이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교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액

교체 :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 (단, 공공주택은 최대 100만원)
 세척·관생 :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00만원 (단, 공공주택은 최대 60만원)

제외대상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주택법 제47조 및 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수도개랑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개랑기까지의 배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water.ulsan.go.kr>

☎ 229-5670-2 | 남부사업소 229-5700-9 | 동부사업소 229-5730-4 | 북부사업소 229-5760-4 | 울주사업소 229-5790-7

공사비 지원 안내문

- 2000. 0. 00.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옥내누수 감면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000,000원의 수도요금 등에 대한 감면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한 견적서 및 작업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0000설비에서 2000. 00. 00.부터 00.까지 4일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기존 옥내 노후 급수관을 절단 및 폐쇄하고, 새로운 경로로 급수관을 재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상 신청자는 공사완료 후 증빙자료로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중·후 사진을 구비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우리 위원회는 공사업체에게 공사금액 확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계좌이체내역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받았고 세금계산서는 개인에게 끊어주지 않는다는 말과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유선 통화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화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관련 법령(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경우 사전 접수 및 현장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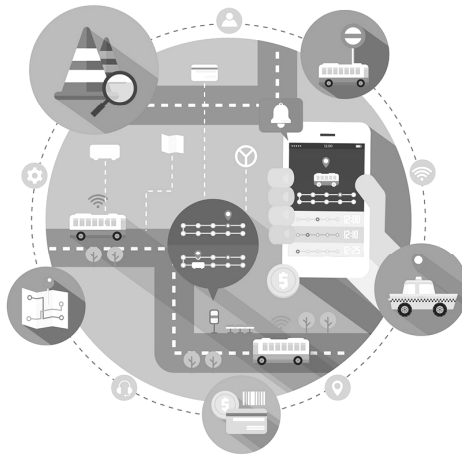
4 판 단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9조 제5항에서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은 피신청인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도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검사결과, 노후화 및 수도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서는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 제24조의3제4항에서는 공사비 지원은 대상자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조례 등 제 규정을 고려할 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급수설비의 소유자는 피신청인에게 옥내급수관 진단 및 수질검사를 신청하고 현장조사 또는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달리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택은 1900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어 40년 이상 경과한 오래된 건물이고, 2000. 0. 00. 옥내누수 감면 신청을 하여 누수에 따른 요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옥내급수관은 노후 급수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① 신청인이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급수설비 상태 등을 점검을 받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옥내 급수공사비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사전 확인·점검을 거쳐 지급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 ②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을 한 모든 사람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는 점, ③ 신청인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④ 금전지원을 목적하는 사업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 더욱이, 신청인의 경우 ⑤ 옥내급수관 교체한 사유가 지원요건인 조례 제19조제8항에 규정한 비내식성 자재 사용으로 녹물의 출수 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⑥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등이 부재하여 공사금액 지급사항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비록, 신청인이 자치법규에 규정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에 따라 지원금 신청 절차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이 아닙니다.

5 결 론

-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각하

1. 축사진입로 옆 토지 위의 돌과 철봉 제거 요청

- 민원표시/의결일자: 2022-고-0008 축사진입로 옆 토지 위의 돌과 철봉 제거 요청(22. 3. 7.) / '22. 5. 23.
- 신청인 / 피신청인: ○○○(○○군 ○○리) / 울주군수(농업정책과장)
- 결정결과: 각하(주심위원: 강승모)

1 민원취지

- 울산 ○○군 ○○면 ○○리 ○○○○-○번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옆 토지(○○리 산○○○번지) 소유주가 토지에 철봉을 박고 돌을 놓아두어 위 ○○리 ○○○○-○번지로의 대형차량(2.5톤 트럭) 진입이 어려우니 철봉과 돌을 제거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울산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인근의 같은리 ○○○○-○번지 답 〇,〇〇〇㎡(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지상 일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이 소유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입은 그 인접토지인 신청외 ○○○ 소유의 울산 ○○군 ○○면 ○○리 산○○○번지 임야상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폭 약 3m의 농로를 통하여 가능하며, 위 농로와 이 민원 토지는 폭 약 4m로 접하고 있다.
- 한편, 농로와 이 민원 토지가 접한 부분의 외곽(가각부 외곽)에 (신청인의 말에 따르면) 신청외 ○○○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철봉들과 돌이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신청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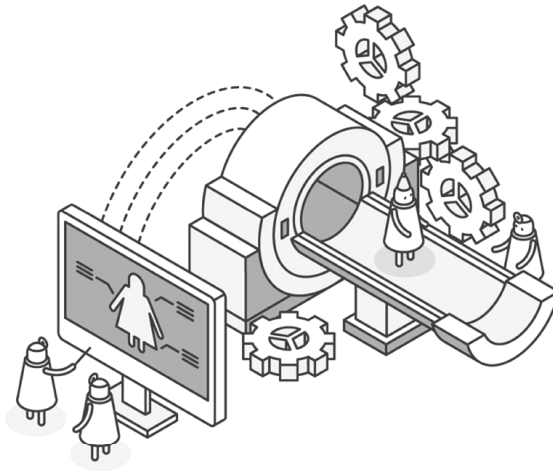
- 신청인이 요청한 구역은 포장도로가 아닌 그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사유지에 해당하며, 사유지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철거명령이 불가능하다.

4 판 단

- 신청인의 요청은 위 신청취지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사항이 개인 사유지내의 시설물에 대한 것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 우선, 우리 위원회가 2000. 00. 00.경 위 농로와 이 민원 토지가 접한 곳에 방문하여 현지 조사하여 본 결과 농로의 폭은 3m, 농로와 이 민원 토지의 접합부의 폭은 약 4m에 달하여 우리 위원회 차량이나 1톤 트럭과 같은 일반 차량이 이 민원 토지에 출입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보인다.
- 다만, 신청인은 2.5톤 대형 트럭도 위 농로에서 이 민원 토지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신청 외 000 소유 토지상에 설치된 철봉과 돌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 취지로 보여지는데,
-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대형 차량 진입을 염두하여 위 농로상이 아닌 그 외곽 개인 사유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고,
- 신청인이 철거 요청하고 있는 대상물(철봉, 돌)들이 농로상이 아닌 신청외인(000)의 사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점은 명백한 상황이므로,
-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철거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달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사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행위(혹은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인간에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써 신청인의 민원은 각하로 종결한다.



2. 도로지정 폐지 신청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44 도로지정 폐지 신청(22. 8. 11.) / '22. 9. 21.
- **신청인** : ○○○(○구 ○○길)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군 ○○면 ○○리 ○○○번지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군에서 20○○년 ○○ ○○○ ○○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도로 포장을 하고, 신청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을 했으니, 도로 지정을 취소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도로지정 폐지 요청 건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전인, 20○○. ○. ○○. 행정소송(○○ ○○법원, 20○○ ○○ ○○○○, ○○ ○○○○ ○○○○ 청구의 소)을 접수하여 진행중인 사건임

3 판 단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 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

4 결 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로 종결한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로 부과취소 요구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47 주·정차 위반 과태로 부과취소 요구(22. 7. 15.) / '22. 8. 30.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로) / 북구청장(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강승모)

1 민원취지

- ○○동 ○○○○○ 주위에 매주 ○○○이 개장되어, 인근에 주차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

2 사실관계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건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20○○. ○○. ○○. 이의신청서를 피신청인인(○○○○시 ○구 ○○○○○)에게 제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20○○. ○○. ○○. ○○○○법원으로 이송되었는 바, 처분 받은 과태료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임

3 판 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

4 결 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로 종결한다.

4. 토지 내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

- **민원표시 / 의결일자**: 2022-고-0054 토지 내 불법폐기물 매립에 따른 행정조치 요구(22. 10. 7.) / '22. 10. 26.
- **신청인 / 피신청인**: ○○○(○○시 ○○길) / 울주군수(환경자원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 **결정결과**: 각하(주심위원: 윤정록)

1 민원취지

-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있어, 해당 관청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

2 사실관계

- 폐기물재활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촉구 건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전, 동일한 건으로 20○○. ○. ○○. 행정소송(○○○○법원, ○○○○○○ ○○○○ ○○○○ ○○)을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임.

3 판 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

4 결 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로 종결한다.

5. 단독주택 주출입구 통행방해 구제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66 단독주택 주출입구 통행방해 구제(22. 12. 9.) / '22. 12. 21.
- 신청인 : ○○○(○○시 ○○길)
- 결정결과 : 각하(주심위원 : 박호수)

1 민원취지

- 단독주택 용도변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중 인접 지번 지주가 토지경계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통행하던 길 주택의 주 출입구에 조적으로 담장을 쌓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처리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동 ○○○번지 지적측량성과도 및 우리 위원회에서 2022. 12. 20.(화) 현장을 확인 한 결과, ○동 ○○○-○번지 도로 일부가 ○동 ○○○번지의 대지경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

3 판 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

4 결 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로 종결한다.

심의안내

1. 하수관리 매설공사 요청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22 하수관로 매설 공사 요청('22. 5. 2.) / '22. 6. 14.
- **신청인 / 피신청인** : ○○○(○구 ○○길) /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장), 북구청장(건설과장)
- **결정결과** : 심의안내(주심위원 : 임용균)

1 민원취지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일원에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매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근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향후 침수 및 오수관 역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니 공사를 시행하여 달라.

2 사실관계

- ○구 ○○동 ○○○-○~○번지 일원에는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매설계획(D200mm, L=121m)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하수관로가 설치되어야 하는 현행도로에 개인사유지 2필지(○○동 ○○○-○번지 전 〇,〇〇〇〇㎡, ○○○-○번지 대 〇〇〇㎡)가 일부 포함되어 하수관로 매설을 위해 피신청인이 사유지 사용 동의를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동의 불가로 해당 구간은 사업물량에서 제외 되었다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
 - 위 치 : 북구 ○○, ○○, ○○, ○○, ○○, ○○, ○○○ 등
 - 공사개요 : 오수관로(D200mm) L=16.6km, 배수설비 634개소
 - 총사업비 : 10,133백만원(국비 3,284, 시비 6,849)

- 발 주 청 :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
- 시 공 사 : (주)○○
- 건설사업관리 : (주)○○ 외 1개사
- 공사기간 : 2020. 5. ~ 2022. 5.
- 준 공 일 : 2022. 5.

3 피신청인 의견

- ○구 ○○동 ○○○-○~○번지 일원은 『○○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이 추진 중인 구간으로, 당초 공사발주 시 하수관로 매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사 추진을 위한 사유지 사용동의 협의가 어려워 공사 제외된 구간임.
- 해당 구간에 하수관로 연결을 위해서는 현행도로 내 사유지에 매설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사용동의를 득하거나 도로개설 등을 통해 공유지를 확보하여야 공사 시행이 가능함.

4 판 단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로 매설구간은 피신청인(울산광역시)이 시행한 『○○하수처리구역(○○, ○○) 지선관로 부설사업』 사업구간 내로서 사유지 사용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구간에서 제외 되었으며 20○○. ○. ○○. 공사가 준공 되었다.
- 현지여건상 하수관로 매설은 현행도로 내 사유지에 매설되어야 하므로, 사유지 사용동의를 득하여야 시공이 가능하여 피신청인과 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용동의 협의(유선)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 현재 공사가 준공되었고 향후 사유지 사용 동의 또는 인근 지역 도로개설 등 공유지 확보 시에 관리청인 북구청에서 예산 확보 후 관로 매설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현지에서 안내하였고 이에 이해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관로 매설 전 악취 예방 및 주민보건 건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존 우수관로 준설 시행 등 관리토록 협조 요청한다.

5 결론 : 안내회신

- 이 하수관로 매설은 사유지 사용 동의 및 공유지 확보 시에 관리청인 북구청에서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기존 우수관로는 주기적으로 준설 시행 등 관리토록 협조 요청한다.



2. 약취해결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31~37 약취해결('22. 6. 29.) / '22. 8. 3.
- **신청인 / 피신청인** : ○○○(○○군 ○○길) / 울주군수(환경자원과장)
- **결정결과** : 심의안내(주심위원 : 임용균)

1 민원취지

- ○○○군 ○○○읍 ○○○리 ○○○마을 인근 공장(주)○○, ○○○리 ○○○-○○○번지의 화학물질 배출로 새벽시간대와 일몰 전·후에 생선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니 원인 화학물질을 밝혀 주시고, ○○○마을 주민의 암, 폐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요청

2 사실관계

- 신청인 등은 ○○○읍 ○○○리 ○○○마을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가구 ○○○명)으로서 마을과 인접(L= 500m)해 있는 (주)○○의 유해물질 배출로 건강상 위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로서 메틸에틸케톤 등을 반응시설에서 처리하여 에폭시경화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여 운영중에 있다.

3 피신청인 의견

- ○○○(주)에서 발생한 악취(생선비린내)로 인한 생활 불편으로 민원 발생으로 현장확인 시, ○○○사업장 내 비린내 발생 확인
 -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복합악취 시료를 포집하였으나, 시료 분석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행정처분 불가하여 악취 발생 저감토록 행정지도

- 주민대상 역학조사 가능여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사·도 소관사무이며, 악취저감방안으로 지속적인 환경순찰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사업장 점검계획

4 판 단

- 신청인 등이 거주하는 ○○군 ○○읍 ○○리 ○○마을 인근 (주)○○의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악취 발생 원인 화학물질을 밝혀줄 것과 ○○마을 주민의 암, 폐질환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요청은 그간 신청인 등이 수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복합악취 시료를 포집하였으나, 시료 분석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사실이 있다.
- 역학조사는 환경유해인자와 건강피해(암발병 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사항으로 건강영향조사결과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 등 요건을 갖추어 건강영향조사 청원(환경보건법 제17조) 할 수 있으나,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은 청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현지에서 안내하였고 이에 이해하고 동의하였으며
-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주)○○에서는 악취 저감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증설(8월 설치예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중화하여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방지시설 추가설치 확인 등 악취 예방 및 주민보건 건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 등 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 안내회신

- 이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견과 공익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3. ○○○○○ 내 ○○○○○ 조성 반대

- 민원표시 / 의결일자 : 2022-고-0055 ○○○○○ 내 ○○○○○ 조성 반대('22. 10. 14.) / '22. 12. 23.
- 신청인 / 피신청인 : ○○○외 ○○○명(○구 ○○로) / 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 결정결과 : 심의안내(주심위원 : 이상일)

1 민원취지

- 울산 ○구 ○○동 동○○○○○ 내 ○○○○○ 조성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주거 여건이 불편해지고,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고, 소나무를 제거하면서까지 ○○○○○을 조성하게 되면, 소음과 주차문제로 인해 생활여건 및 주거환경 여건이 불편해지며, 여러 사람(노인, 청소년, 부인 등)들이 사용하는 공원을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반대하며, 기존의 공원으로 계속 활용하여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사실관계

- 이 민원 공사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 및 조성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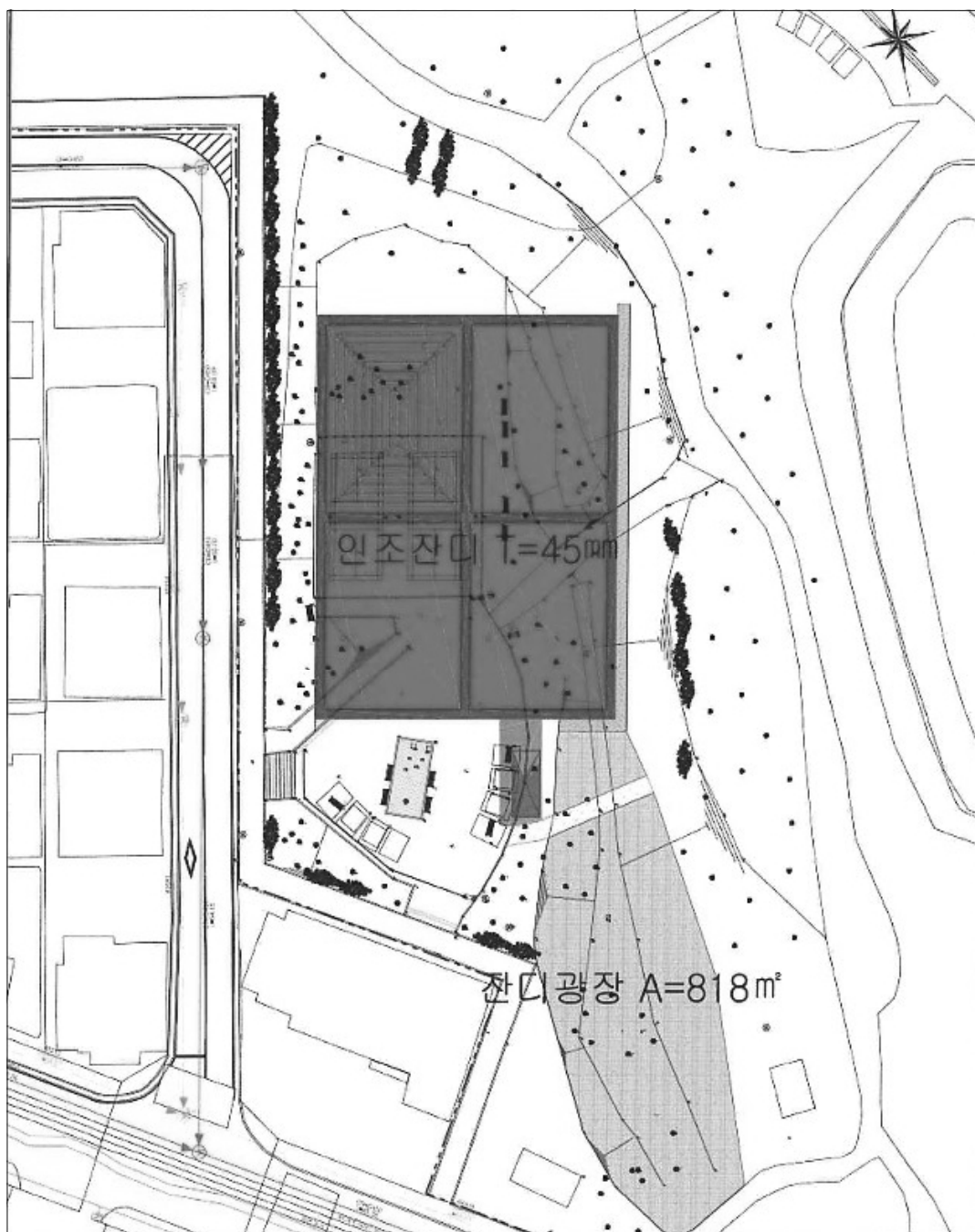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 ○○○○○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
- 위 치 : ○구 ○○동 ○○-○번지
- 용 역 비 : ○○,○○○천원 정도
- 용역내용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 1식
{공원 기본계획(시설물 배치계획 등), 위원회 심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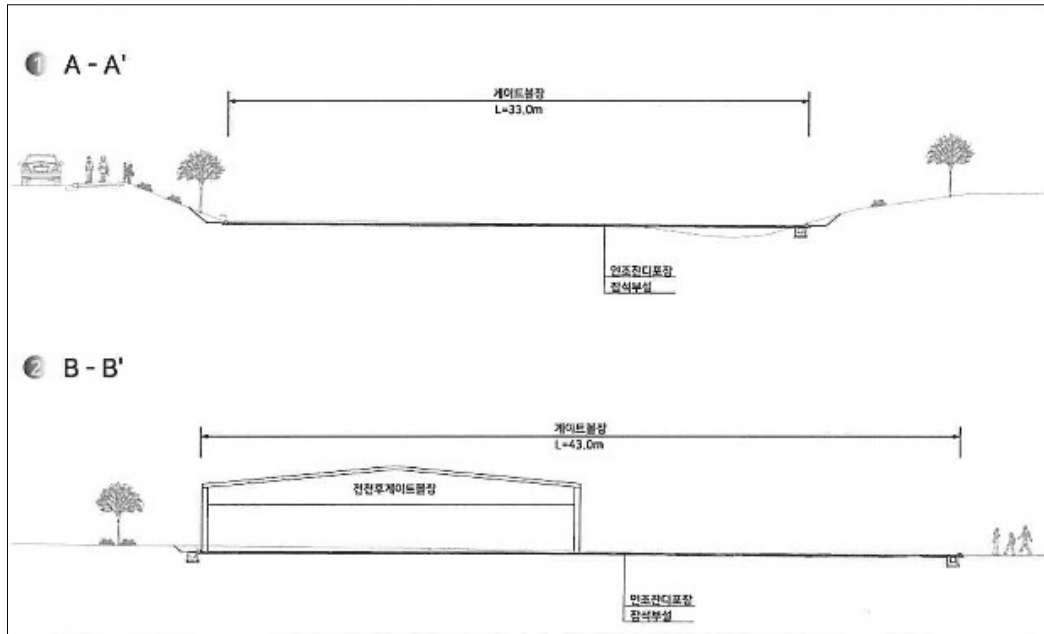
2) ○○○ ○○○○○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 사업규모 : ○○○○○ 4면 조성 및 휴게시설 등 설치
- 사업기간 : 20○○. ○. ~ ○○월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구20, 특교금 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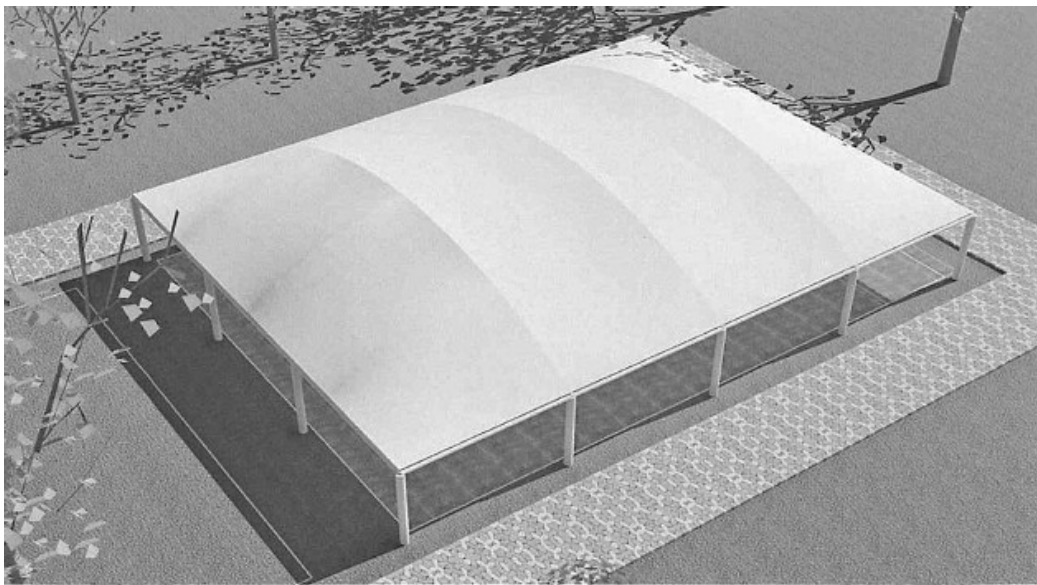
- 이 민원 관련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1. 3. ~ 9.: ○○○○협회 ○○○○○ 조성 건의 및 사업대상지 조사
 - 2021. 11. 12.: ○구 ○○○○○○ 간담회
 - 2021. ○○. ○○. ~ 2022. ○○. ○○.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
 - 2022. ○○. ○○.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호)
 - 2022. ○○. ○○. :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市 도시공원위원회)
 - 2022. ○○. ○○. ~ 2022. ○○. ○○. :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 2022. ○○. ○○. : 소음민원 관련 현장확인(법령 기준에 적합한 소음 확인)
 - 2022. ○○. ○○. : 주민설명회 개최(1차, ○○○○○ 내 광장)
 - 2022. 7. ~ 9월 : 인근 거주자 개별 방문 사업 설명
 - 2022. 09. ○○. : ○○○○○ ○○○○○ 조성공사 착공
 - 2022. 10. ○○. : 현장 내 공사 방해 등 현장 확인(공사 일시 중지)
 - 2022. 10. ○○. : 현장 내 공사 반대 현수막 설치 현장 확인
 - 2022. 10. ○○. : 주민설명회 개최(2차, ○○○○○복지센터)
 - 2022. 10. ○○. : 주민설명회 개최(3차, ○○○○○)
 - 2022. 11. ○○. : 현장 확인 및 의견 수렴(시민고충처리위원회)
 - 2022. 11. ○○. : 민원관련 회의(1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 신청인)
 - 2022. 11. ○○.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 2022. 12. ○○. : 민원관련 회의(2차, ○○청 ○○○○○, 피신청인)
 - 2022. 12. ○○. : 민원관련 회의(3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 신청인)



민원 공사 현황 및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전천후구장 조감도(안)

3 피신청인 의견

- 이 민원 공사 추진배경

○○○○○ 이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추가 조성되지 않아 대기시간 증가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년 전부터 ○○○○○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관내 ○○○○○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주장 사항

- ① 이 민원 공사 결정 시 사전 주민동의 여부
- ② ○○○○○ 조성 완료 시 주변 소음 문제 및 주차 문제 발생 여부 및 대책
- ③ ○○○○○ 조성 완료 시 기존 ○○○ 및 공원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
- ④ 공원으로서는 기능이 잘 활용되고 있는 ○○○○○을 철거하고, ○○○○○ 설치이유
- ⑤ ○○○○○ 내 100년 된 소나무를 베어내고 조성하는 것에 대한 사실 여부

2) 1)항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토의견

2022년 ○○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했으나, 지방선거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 인근 거주자 개별 방문 사업안내문 배부로 대체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2022년 ○○월 소음측정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소음) 기준 적합함을 확인했으며, 종목 특성 상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자가용 이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근 거주자들의 직업적 특성(야간근무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조정(일출 전, 일몰 후 이용불가) 및 예산 범위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차 문제는 기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관련 부서에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 하겠다.

기존 운동시설(○○○)은 일반적으로 3~4회/월(2~3시간/회)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동 호회에 사전 의견 수렴 및 안내를 하였으며,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는 광장 일부 및 ○○장 1면이며, 금회 계획된 사업으로 광장 실 면적 증가 및 ○○○○○ 4면 조성이므로, 도시공원 및 운동시설로서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나무를 베어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66주의 수목이 저축되어 사업구역 내 전체 이식 예정으로 사실이 아니다.

- 이 민원 공사에 대한 피신청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
 - 2) 매년 노인인구 증가('20년 20.64%, '21년 22.49%, '22년 23.89%)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체육시설 1개소(○○○○○ ○○장)로 열악한 실정이다.
 - 3) 인근 거주자들의 직업적 특성(야간근무 등) 상 이용시간 조정(일출 전, 일몰 후 이용불가) 및 예산 범위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도 시공원 활성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4 판 단

- 이 민원은 위법 및 부당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① 이 민원 공사 결정 시 사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 조성 완료 시 주변 소음 및 주차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③ 기존 ○○○ 및 공원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④ 공원 내 100년 된 소나무를 베어내고, 공원으로서는 기능이 잘 활용되고 있는 ○○○○○을 철거하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 설치라는 이유로 민원 제기하였고,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 ○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 이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신청인과 수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① 이 민원 공사에 대해 ○○○○○ 면수를 4면에서 2면으로 줄이고 ② 주차문제 적극 해결 및 휴식공간 마련, 방음벽 설치 ③ 공사 진행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반드시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민원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도 있으나, 신청인들의 ○○○○○ 조성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표명과 피신청인의 지속추진 의사 등으로 상호간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현황, 이용자 수 및 주민들의 건전한 신체활동과 여가선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의 설치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소음·주차, 주거환경의 침해정도를 상호 충분히 검토하여 이 민원공사를 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 안내회신

- 이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견과 공익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제도개선

☑ 주요사례

연번	내용	관계기관	조치의견
1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고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	권고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제도개선	울산광역시 (회계과장)	권고

1.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고 제도개선

- 의안번호/ 의결일자 : 제2022-33호/ 2022. 5. 16.
- 관계기관 : 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장)
- 결정결과 : 권고

주 문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고 제도개선’ 권고 안을 별지와 같이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에게 제도개선 권고한다.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 추진 배경

-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건축물에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도가 낮음
- 시민의 공적공간인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정상화 및 공공성 회복 등 제도개선 코자 함

- (계획·조성단계)

- 공개공지는 사유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간으로, **제도적 뒷받침에 따라 양적으로 증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다소 낮음**
- 형식적인 제공이나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경향이 있어, 계획·설계단계부터 **수준 높은 공개공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 필요**

- (이용·관리단계)

- 시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공개공지는 **안내표지가 없어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유화 및 기능 저하** 등이 우려됨
- 공개공지 **안내 및 정보제공 확대**,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인력충원**, **공개공지 정비 지원** 등을 통해 기능 정상화 및 이용 활성화 필요

☑ 추진 경과

- 2021. 9. 2. : 공개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요청(위원회→구·군)
- 2021. 9. 24. : 공개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회신(구·군→위원회)
- 2021. 10. 8. : 기획조사 계획 수립
- 2021. 10.~12. : **기획조사 추진**
 - 공개공지 현황 확인(67개소, 68,988㎡), 표본조사(15개소, 구·군별 3개소)
 - 자료 수집 및 관계부서(기관) 논의, 타지자체 사례 수집, 조례 검토 등
- 2021. 12. 13. : 제16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심의(의결보류) - 재조사 필요 등
- 2022. 1. 26. : 기획조사 계획 수립(2차)
- 2022. 2. ~ 5. : **기획조사 추진(2차)**
 - 공개공지 현황 확인(159개소, 106,412㎡), 전수조사 및 실태분석(159개소)
 - 관리대장 작성, 타지자체 사례 검토, 전문기관 연구보고서 검토, 가이드라인 검토, 안내판 디자인 개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2022. 3. 22. ~ 4. 8. : 위원회 현장조사 및 실태분석
- 2022. 4. 12. ~ 4. 22. : 구·군 합동 현장조사 및 협의, 의견수렴
- 2022. 4. 18. :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 내실화 제도개선 협의(건축주택과)
- 2022. 5. 12. :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안내판 디자인 개발(도시재생과)

관계기관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17. 7. 24.)
- 국토교통부 공문 - 공개공지 등의 활용 증진을 위한 협조 요청 ('20. 1. 17.)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 공개공지 유지관리 등 신설 ('22. 3. 10.)

II. 일반 현황



1 공개공지 제도

☑ 제도개요

- 정의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시설 공지·공터(건축법 제43조)
- 개념 :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일반인에게 개방 되는 공적공간
- 근거 : 공지 확보, 인센티브(용적률 등), 위반 건축물 제재 등 기본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연혁 : 건축허가 요건으로의 용적률 도입('70년) 이후 도시의 효율적 이용·개발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 전면 개정('91년) 시 도입

☑ 설치대상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7조 등
- 대상지역 :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대상건물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시설(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의무면적** : 대지면적의 **10%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 바닥면적 합계 (5천~1만㎡) 5%, (1만~3만㎡) 7%, (3만㎡이상) 10% 이상

☑ 주요시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7조 등
- **설치위치**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
 -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로 변경 가능
- **주요시설** : 긴의자,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대, 조명 등
- **시설기준**
 - 1개소 면적은 최소 45㎡ 이상으로 하되 2개소 이내
 - 최소 길이 및 폭은 5m 이상, 필로티는 유효높이 6m 이상
 -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부분에 안내판 1개소 이상 설치

☑ 유지관리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3조 제3,4,5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7조 등
- **제한행위** : 영업행위, 물건적치, 이용방해, 출입차단, 시설훼손 등
- **유지관리** :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 제출
 - 구청장은 공개공지 등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할 것
 - *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1조 제5의2)
 - ** 관리대장 및 점검 등 유지관리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시 신설(2022. 3. 10.)

2 공개공지 현황

☑ 조성현황

- 관내현황 : 159개소, 106,412㎡
- 면적수준 : 남구 달동 **울산문화공원** 면적의 1.9배 수준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태화지구) 면적의 22% 수준
- 현황조사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일정 지역, 규모, 용도 등에 적합한 건축물 추출 및 확인
- 구·군별 현황

구 분	개소(개)	면적(㎡)	비율(개소 기준)	비율(면적 기준)
계	159	106,412	100%	100%
중 구	36	22,494	23%	21%
남 구	80	32,737	50%	31%
동 구	9	7,868	6%	7%
북 구	20	30,423	12%	29%
울주군	14	12,890	9%	12%

* 공공청사 등의 공개공지 일부는 제외하였으며, 현황 미관리 등으로 일부 자료는 누락으로 추정, 면적 및 위치확인 등이 추가로 필요한 현황이 일부 있음

☑ 관리현황

- 관리기준 : 영업행위 및 물건적치 등 **제한행위 단속, 정기점검** 등
- 관리기관 : 구·군 건축부서 ※ 조례제정 및 제도화 등은 시 건축주택과
- 현황파악 : 미흡(구·군에서 제출된 현황은 67개소, 실제 159개소보다 △92개소 누락)
- 점검실적 : 없음(최근 3년간 기준)
- 관리대장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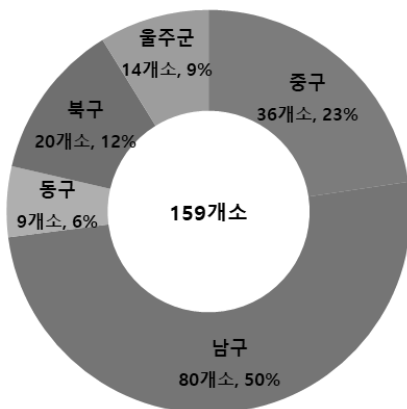
III. 조사 및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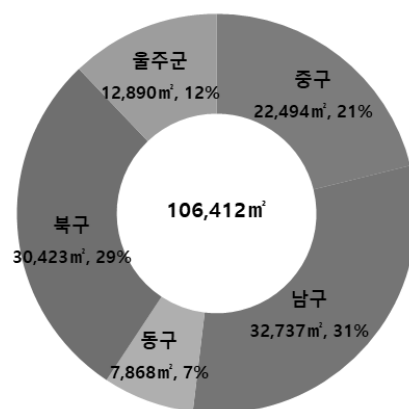
1 공개공지 조성 실태

☑ 구·군별 현황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구·군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59개소, 106,412㎡ 중에 개소 기준은 남구가 80개소(50%)로 가장 많으며, 면적 기준도 남구가 32,737㎡(31%)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남구는 신정동, 삼산동 일원의 삼산로와 변영로 등 상업지역 가로변으로 대형 건축물인 백화점, 호텔, 병원, 오피스텔 등의 다양한 판매시설 및 주상복합시설 등이 많아 개소와 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 북구는 진장동 일원의 진장명춘지구, 진장물류단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형종합유통센터, 쇼핑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많아 면적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분석됨
- 중구는 성남동 일원의 구시가지에 판매시설 및 주상복합시설 등과 교동, 우정동, 성안동의 우정 혁신도시에 대규모 공공기관의 업무시설 등에 주로 있으며, 동구, 울주군은 개소 및 면적이 다소 작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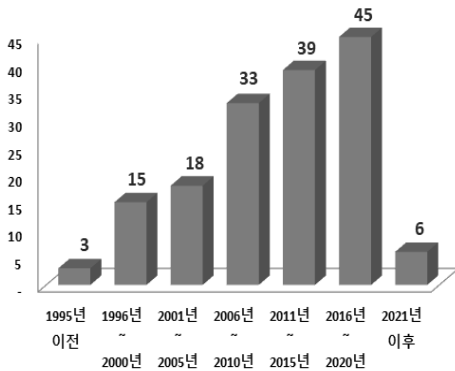
〈차트1〉 공개공지 구·군별 현황(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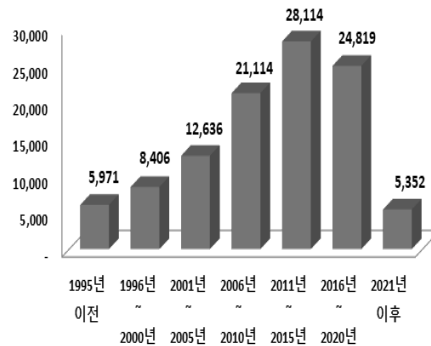
〈차트2〉 공개공지 구·군별 현황(면적 기준)

☑ 연도별 현황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연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개공지가 법적으로 도입된 1991년 「건축법」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0년대 후반(준공년도 기준)부터 급속도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되며, 도시 재개발 및 재정비사업 등에 따라 필지가 합해지거나 층수가 높은 대형 건축물 등이 지속적으로 건축되고 있음
- 2006년 ~ 2010년경에는 북구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진장유통단지쇼핑몰 등 대형 건축물이 준공되고, 2014년부터 중구의 우정혁신도시 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이 준공됨에 따라 3,000㎡ 이상의 대규모 공개공지가 늘어남
- 현재까지도 공개공지의 설치 개소 및 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공개공지 조성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따라 공개공지는 양적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됨



〈차트3〉 공개공지 연도별 현황(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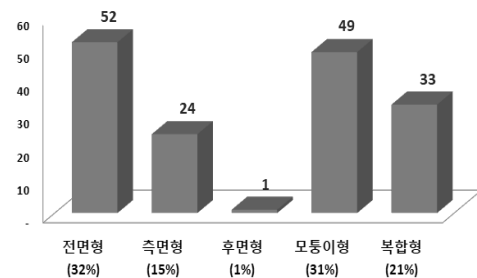
〈차트4〉 공개공지 연도별 현황(면적 기준)

☑ 위치별 현황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는 대지 내 위치 등에 따라 전면형, 측면형, 후면형, 모퉁이형, 복합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위치분류 : 5개 유형

위치	전면형	측면형	후면형
배치 예시			
위치	모통이형	복합형	
배치 예시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위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면형 52개소(32%), 모통이형 49개소(31%), 복합형 33개소(21%) 등의 순으로 분석됨
- 위 표의 위치분류(배치예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이 건물 전면을 포함하여 측면, 모통이 등에 걸쳐있거나, 전면 출입구를 기준으로 양측에 위치되어 분류가 다소 애매함
- 개방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전면부 또는 주출입구측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지여건 및 건물배치, 가로환경과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 선정이 필요함



〈차트5〉 공개공지 위치별 현황(개소 기준)

☑ 유형별 현황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는 위치, 규모, 형태, 기능 등에 따라 가로휴게형, 썸지형, 광장형, 공원형, 필로티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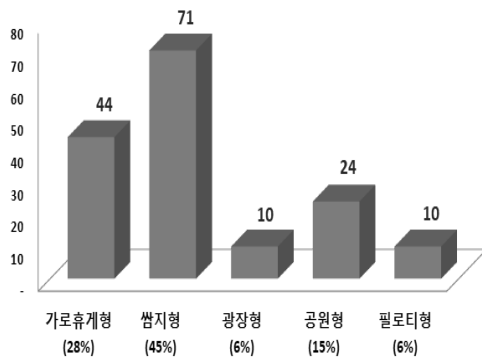
• 유형분류 : 5개 유형

구분	유형	특징
1	가로휴게형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보도확장 및 휴게공간 제공
2	쌈지형	공개공지 면적이 비교적 작은 곳에 소규모 쉼터 위주의 공간 구성
3	광장형	대규모 상점가 등에 다양할 활동(이벤트, 전시회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4	공원형	근린공원, 소공원 등의 형태로 휴게와 산책이 가능한 공간 조성
5	필로티형	기후변화 대응 및 외부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실내 등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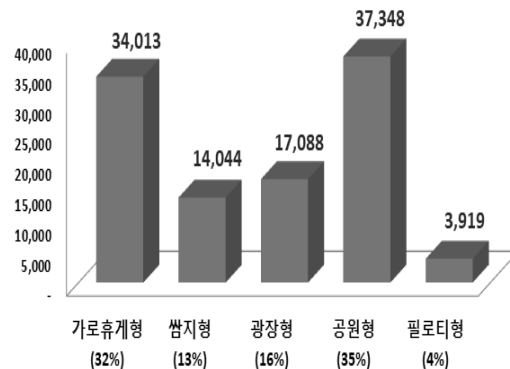
• 유형별 조성사례

유형	가로휴게형	쌈지형	광장형
조성 사례			
특징	보행로가 협소하나, 넓어진 보도가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가로변에 위치한 포켓형태의 쉼터로 담소를 나눌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됨	건물 전면의 대형공간에 잔디마당, 계단식 돌의자 등 조형적 요소와 함께 체육·문화 공간 등이 조성됨
유형	공원형	필로티형	선큰형(기타)
조성 사례			
특징	경사지의 자연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근린공원 형태로써, 산책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됨	외부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필로티형으로 조성하여 비나 눈을 피하고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함	상부가 개방되고 지하상가 등의 연결통로와 접하면서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함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소 기준은 **쌈지형**이 71개소(45%)로 가장 많으며, 면적 기준은 **공원형**이 37,348㎡(35%)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쌈지형**은 공개공지의 면적이 비교적 작은 규모이므로, 설치 개소에 비하여 전체 조성면적은 크지 않으며, 건물 전면 또는 모퉁이 등에 포켓형 쉼터로 잠시 쉬어가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휴게공간**임
- **공원형**은 개소당 면적이 500㎡이상되는 대규모 공개공지이므로, 설치 개소에 비하여 조성면적은 매우 크며, 공원(녹지) 등에 접하거나 대규모 주택건설지역 등에 식재 위주의 **휴게 및 산책 공간**임
- **가로휴게형**은 공개공지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광장형**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활동이 가능한 공간, **필로티형**은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임
- 공개공지의 배치, 규모, 형태, 기능,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결정되어지나, **유형별로도 조성형태 및 질적수준이 제각각**이거나 **짜투리 공간에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유형별로 접근성, 편의성, 활동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



〈차트6〉 공개공지 유형별 분석(개소 기준)



〈차트7〉 공개공지 유형별 분석(면적 기준)

2 공개공지 관리 실태

☑ 공개공지 안내 부족

- 공개공지는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서 공공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 표지가 부족함
- 안내표지가 없으므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또는 조경시설 정도로 이해하고, 쉽게 접근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건축주의 사유공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안내판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9개소 중 30개소(19%)에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내판의 설명, 내용, 디자인 등도 제각각이며, 일부 안내판은 관리 상태도 미흡함
- ‘22. 3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되고, 표기내용, 규격 등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공개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등으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 안내판 설치사례

설치 사례				
				
형식 (실태)	지주형	지주형	부착형	위 : 내구성 낮은 플라스틱재질 아래 : 가독성 낮은 안내판(탈착)

☑ 공개공지 사후관리 미흡

- (관리) 공개공지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나, 관리주체가 건축주에게 있어 건축주의 의지와 역량 등에 따라 관리의 질적 수준이 달라짐
- '14년부터 인센티브 의무화가 법령에 규정되고, '19년과 '22년에 법령과 조례에 각각 유지관리 사항이 신설되어 제도화되었으므로, 건축주의 관리 의무는 더욱 강화되었으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제한행위인 물건적치, 영업행위 등 위반사항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사유화와 일반에 개방하였으나 방문자의 주차공간 등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행위임
- (점검) '19. 4월 「건축법」에 공개공지의 제한행위 유형과 기준이 신설되어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의 단속 및 점검이 제도화되었으나, 구·군에서는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으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임
- '22. 3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와 관리대장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을 더욱 강화하여 사유화 방지 및 이용 정상화 등이 필요함
- 공개공지 위반사례

위반 사례			
내용	공개공지 제한행위(가판대 등 영업)	공개공지 사유화(쓰레기수거함)	공개공지 부적절이용(주차장)

☑ 공개공지 기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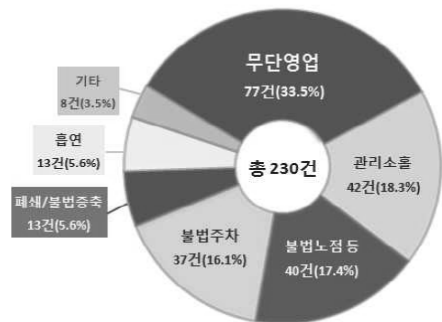
- 공개공지의 공공성과 활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에서 '공적공간'으로의 조성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상의 질적 관리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나,

- 건축주의 **공개공지에 대한 비용 투자 기피** 등으로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거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개공지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실정임**
- 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노후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9개소 중 76개소(48%)가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준공 당시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도시의 휴식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등 공개공지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대기업 및 대형건축물 등의 대규모 공개공지는 관리도가 높으며, 영세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을 위주로 공개공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 도시정책이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재정비 또는 재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공개공지 또한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간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한 개선** 등으로 기능 정상화 및 공공성 회복이 필요함
- **공개공지 기능저하 사례**

기능 저하 사례			
내용	공개공지 노후화(10년이상 경과)	공개공지 시설물 파손방치(벤치)	공개공지 시설물 파손방치(모장)

☑ 공개공지 관련 민원분석(국민권익위원회 자료, '17.7월)

- **국민신문고 민원분석**(‘14~‘16년 자료)
 - 민원유형은 주로 신고성 민원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
 - 건물상가 **무단영업**(77건, 33.5%)
 - **관리소홀**(42건, 18.3%)
 - **불법노점 및 적치**(40건, 17.4%)
 - **불법주차**(37건, 16.1%)



〈차트8〉 공개공지 민원분석(전국, 국민신문고 등)

- 폐쇄불법증축(13건, 5.6%)
- 흡연(13건, 5.6%) 순으로 분석
- 국민생각함 의견분석('17년 자료)
 - '국민생각함'에 제시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관리·제재 강화, 기능제고, 정보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
 - 관리강화 : 지자체의 관리 명문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 폐쇄 및 관리소홀 등 위반 시의 제재 강화
 - 기능제고 : 설치장소(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설치방식(소공원 형식 등), 휴식시설 설치 기준 등을 보완하여 기능을 제고할 필요
 - 정보제공 : 안내판 설치 의무화, 바닥 색깔 통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공지에 대한 정보 적극 제공
 - 기타의견 : 그 밖에 공개 공지가 생소한 개념으로 홍보 확대가 필요,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의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의견, 명칭 변경(개방 공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문제점 : 공개공지 무분별 조성, 양적 증대에 비해 질적 수준 저하

- 공개공지는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심지 내에서 사유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그 기능과 가치는 커지고 있으나,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음
- 공개공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자투리 공간에 조성하여 접근 및 활용성이 떨어지거나, 제도적 의무화에 따라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강해 공개공지의 양적 증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떨어짐

- 공개공지의 위치, 규모, 형태, 기능,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결정하고, **계획·설계단계**부터 유형별로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조성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수준 높은 공개공지 제공

- 도심 속의 작은 쉼터인 공개공지가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친근한 공개공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전반에 걸쳐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 설계기준**과 고려할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공개공지 제공

*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운영 지자체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인천 미추홀구, 서울 중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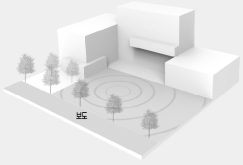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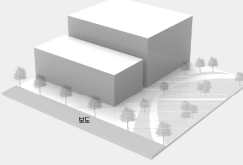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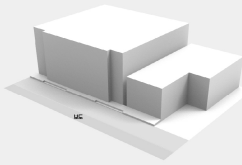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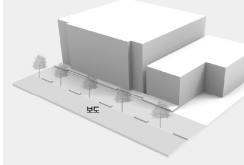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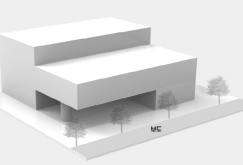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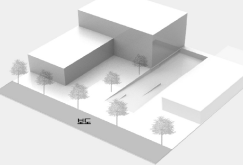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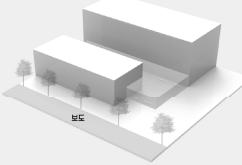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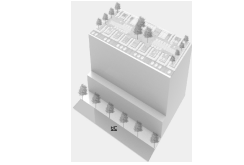


개선(안)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 가이드라인 운영 분석

☑ 울산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첨부2 : 가이드라인(안)]

- 가이드라인 개요 : 정의, 목적, 주요내용, 이용지침
- 계획기준 :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정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 유형별 가이드라인 : 적용대상, 설치목적·특징, 조성방법, 조성사례
- 시설물 설치기준 : 파고라, 벤치, 분수대, 조형물, 장식품, 조명, 바닥재 등
- 안내판 디자인 : 심벌마크, 디자인컨셉, 컬러, 유형(지주형, 부착형, 매립형) 등
- 울산시 공개공지 유형(안)

			
(유형1) 광장형	(유형2) 공원형	(유형3) 가로확장형 / 가로휴게형	
			
(유형4) 필로티형 / 선큰형		(유형5) 실내형 / 옥상형	

☑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분석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인천미추홀구
유 형	5개	6개	5개	6개	3개
유형별 분 류	①가로휴게형 ②정원형 ③공원형 ④광장형 ⑤필로티/선큰형	①공원형 ②광장형 ③보행가로형 ④필로티형 ⑤선큰형 ⑥보행통과형(실내형)	①가로휴게형 ②정원형 ③공원형 ④광장형 ⑤필로티/선큰형 ※ 서울시 동일	①보행가로휴게형 ②삼지형 ③광장형 ④필로티형 ⑤보행통과형 ⑥실내통과형	①필로티/선큰형 ②보행가로형 ③광장형
시 행	2015년	2014년	2020년	2020년	2020년

2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및 정보제공

☑ 문제점 : 시민들 공개공지 생소한 개념, 공개공지 안내 부족

- ‘공적공간’인 관내 수많은 공개공지에 안내표지가 없어 일반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며, 이는 공개공지 접근과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쉽게 판별하기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함
- 관내 일부 설치된 공개공지 안내판도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이거나 내구성 낮은 재료의 사용으로 품질이 떨어지므로, 상징성, 시인성, 심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 적용 및 설치가 요구됨
- 공개공지에 대한 위치, 면적 등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지도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 개선방안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및 전산DB 활용, 공개공지 정보제공

- 관내 공개공지에 대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을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전달, 시인성 증대 등으로 공개공지 안내 효과 및 이용 활성화
- ‘22. 3월 조례 개정으로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의무가 제도화되었으므로, 신규 공개공지는 사용승인 시 철저히 확인하고, 기존 공개공지는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여 안내·홍보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예시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안)

- 설치목적 : 공개공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적공간”임을 안내
- 선정기준 : 안내판이 미설치된 공개공지 중 설치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곳
- 선정방법 : 건축주와 협의한 구·군에서 추천받아 선정
- 소요예산 : 20백만원 정도(개소당 40만원 정도, 50개소 기준)

- 2018년 국토부에서 전국 공적공간 행정주제도를 구축하여 공개공지의 위치, 면적, 시설 등 상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공개공지를 이용하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공개공지 정보 입력 및 시스템 활용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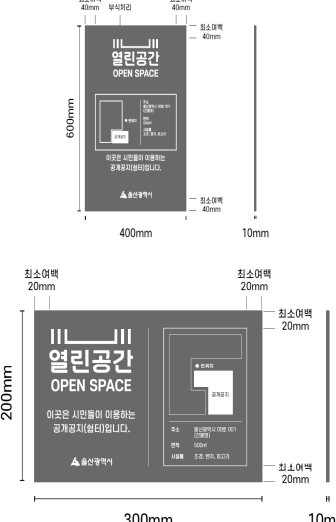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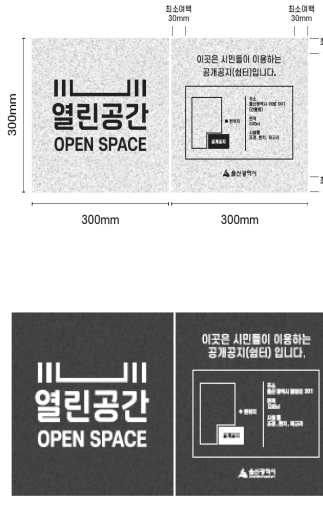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제공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활용

☑ 울산시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제공 [첨부3 : 안내판 디자인]

-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팀
- 공개공지 심벌마크 및 디자인 컨셉

 열린공간 OPEN SPACE	 SPACE - 공간 비우다, 띄우다 울산의 “U” 세로선 - 건물 공백기호 - 공개공지
울산시 공개공지 심벌마크	디자인 컨셉(스페이스바, 울산 U, 세로선 II)

• 유형별 안내판 디자인

 1,500mm (1,000mm 이상) 최소여백 50mm 부식 처리 최소여백 50mm 최소여백 100mm 최소여백 200mm 600mm 20mm	 최소여백 40mm 부식 처리 최소여백 40mm 최소여백 40mm 600mm 400mm 10mm 최소여백 20mm 최소여백 20mm 최소여백 20mm 최소여백 20mm 200mm 300mm 10mm	 최소여백 30mm 최소여백 30mm 최소여백 30mm 300mm 300mm 300mm 300mm
지주형	부착형	매립형(모듈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DB 활용(모두의 공간 - 공적공간통합지도)



3 공개공지 체계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 공개공지 현황관리 및 점검 미실시, 사후관리 미흡

- 공개공지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공개공지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구·군에서는 **공개공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 등 문제발생 시 대처가 어려움
- 공개공지의 공공성과 활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공개공지 정기점검 실적은 전무하며 **점검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개선방안 :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전담인력 충원, 사후관리 강화

- '22. 3월 조례 개정으로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제출 의무가 제도화**되었으므로, 신규 공개공지는 사용승인 시 관리대장을 제출받고, 기존 공개공지는 **현황 재파악 및 실태조사 후 관리대장 작성·관리**
- 구·군별 건축 인·허가 및 관리의 이원화 등으로 **공개공지 점검 및 단속, 시정명령, 행정조치** 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며, 우리 시도 공개공지 정기점검 주관, 가이드라인 운영, 정비 및 활성화 지원, 건축위원회 심의 등 **공개공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조례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 관리가 의무화되었으나 전담인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개공지(공적공간) 관리 및 제도 운용 전담 인력 충원(시·구·군별 1명씩)
-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공개공지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충원에 장기간 소요 시 전문기관 또는 건축사협회 등에 용역을 통한 점검 및 사후 관리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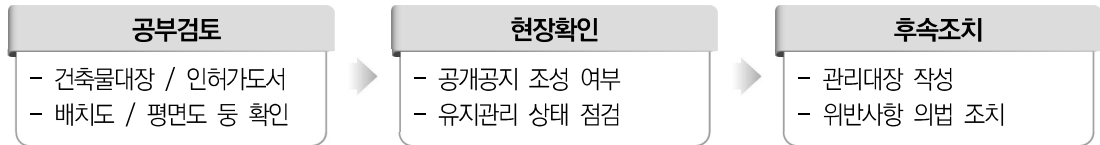


개선(안)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관리 / 정기점검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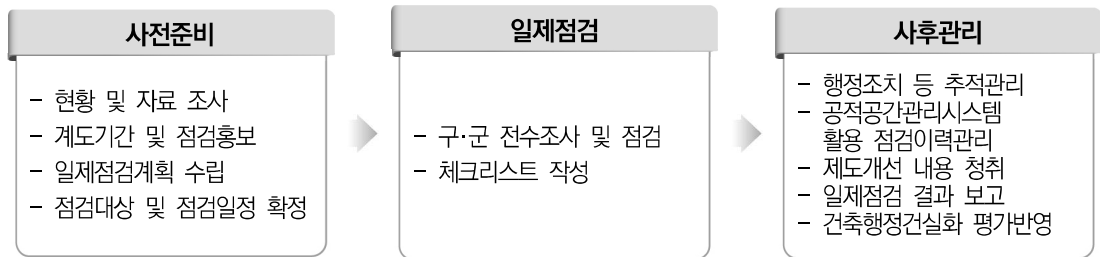
☑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관리 [첨부4 : 관리대장(안)]

- (신규) 현황관리 : 사용승인 시 건축주 관리대장 작성 및 제출
- (기존) 현황관리 : 현황 재파악 및 실태조사 → 관리대장 작성·관리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활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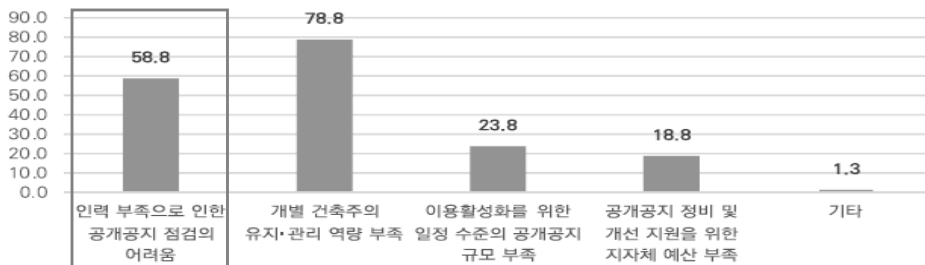
☑ 공개공지 정기점검 실시



* 원활한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 시 “공개공지 관리 업무지침” 마련 검토

☑ 공개공지 유지관리 문제점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 출처 :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건축공간연구원, '20.12월) 〉



• 설문기간 : 2020. 7월 ~ 8월, • 설문대상 : 100명(지자체 공개공지 관련 담당공무원), • 복수응답 가능

4 공개공지 기능 정상화 및 이용 활성화

☑ 문제점 : 공개공지 노후화 및 기능 저하, 시민 이용도 낮음

- 공개공지는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
- 새로운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를 잘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성 및 활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나, 건축주의 비용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공익적 관점에서의 공개공지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의 정비 및 활성화 등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공개공지 정비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문화, 전시, 음악, 공연, 버스킹,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에 공개공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 개선방안 :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 기능 정상화 및 이용 활성화

- 노후화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시민 이용도가 낮은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여 공적 공간으로의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 검토
- 공개공지의 노후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 것이며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검토**

* 공개공지 정비 지원 시행(조례 제정) 등 지자체 : 서울, 부산, 경남, 순천, 등

개선(안)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제도화 / 사업 절차 등

☑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등 제도화 (서울, 부산 조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16. 1. 7. 신설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시·구간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6항제3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 등을 점검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의2(공개공지 등의 관리) ▷ '19. 5. 29. 신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정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개공지 리모델링 사업 절차 (부산 사례 참고)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사업대상지 공모 신청	대상지 선정 및 공공건축가 자문	사업비교부 및 협약체결	설계 및 공사시행	준공 및 정산
(부·산·시)	(구·군 → 시)	(부·산·시)	(구·군 ↔ 시)	(구·군)	(구·군 → 시)

☑ 타지자체 조례 분석

구분	공개공지 확보 규정	관리대장 작성 규정	안내판 설치 규정	관리실태 점검 규정	리모델링 등 지원 규정	주민이용 근거 규정
서울	1993. 04. 10.	2007. 05. 29.	2007. 05. 29.	2007. 05. 29.	2016. 01. 07.	2015. 10. 08.
부산	1999. 11. 25.	2019. 05. 29.	×	2019. 05. 29.	2019. 05. 29.	2010. 03. 03.
대구	2005. 05. 30.	×	2015. 12. 30.	2020. 07. 10.	×	2009. 11. 10.
인천	1993. 05. 15.	2021. 07. 16.	2021. 07. 16.	2021. 07. 16.	×	2009. 10. 05.
광주	2004. 03. 25.	2007. 08. 01.	2007. 08. 01.	2007. 08. 01.	×	2011. 03. 02.
대전	1999. 11. 26.	×	×	×	×	2010. 01. 08.
울산	1997. 07. 15.	2022. 03. 10.	2022. 03. 10.	2022. 03. 10.	×	2010. 05. 13.
세종	2012. 07. 02.	×	2012. 07. 02.	2016. 06. 20.	×	2012. 07. 02.
제주	2007. 01. 08.	2018. 02. 08.	2018. 02. 08.	2018. 02. 08.	×	2013. 07. 26.

V. 제도개선 권고



☑ 권고사유

- ① 공개공지 무분별 조성으로 양적 증대에 비해 질적 수준 저하
- ② 시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공개공지 안내 부족
- ③ 공개공지 현황관리 및 점검 미 실시 등 사후관리 미흡
- ④ 기존 공개공지 노후화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이용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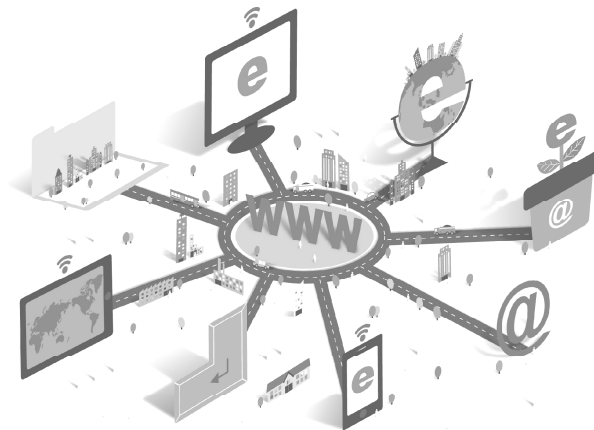
☑ 권고사항

- ①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수준 높은 공개공지 제공을 위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 [첨부2]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 참고하여 마련
- ②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및 정보제공
 - 상징성, 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 제공
 - ⇒ [첨부3] 공개공지 안내판 디자인 적용(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팀 개발)
 - 기존 공개공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시행(장기과제)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공개공지 정보 입력 및 시스템 활용
- ③ 공개공지 체계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기존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 재파악 및 실태조사 후 관리대장 작성·관리
 - ⇒ [첨부4] 공개공지 관리대장(안) 참고하여 작성
 - 공개공지 관리 및 제도 운용 전담인력(시·구·군별 1명씩) 충원(장기과제)
 - 인력충원에 장기간 소요 시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통한 점검(장기과제)
- ④ 공개공지 기능 정상화 및 이용 활성화
 - 노후 및 기능 저하 공개공지의 리모델링 사업 제도화 및 시행(장기과제)

☑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장)

참고문헌 및 자료

1.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17.7월)
2. 공개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공공디자인학회 /'21.9월)
3.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건축공간연구원 /'20.12월)
4. 도시 공공공간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개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12.10월)
5.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서울 중구, 인천미추홀구)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제도개선

- 의안번호 / 의결일자 : 제2022-23호 / 2022. 4. 4.
- 관계기관 :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 결정결과 : 권고

주 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제도개선’ 권고 안을 별지와 같이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에게 제도개선 권고한다.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직무권한 및 관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규정」 제3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2021-고-02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선정의 불공정] 관련 제도개선

☑ 추진 배경

- 2021. 12. 27. (주)○○○○환경 대표로부터 복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선정의 불공정” 관련 고충민원(2021-고-0221)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방식 및 용역 적격 심사 기준 등의 제도개선 필요
- (계약방식) 5개 구·군에서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영업구역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고 있음

-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누어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최근 2년간 계약방식 : (중구·남구·동구·울주군) 수의계약, (북구) 입찰

- (적격심사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점수와 계약이행 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함**
- 그러나, 위 세부기준의 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의 배점한도와 하한점수의 차이는 **신규업체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낙찰받기 불가한 실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1401호(2019. 11. 4.)

추진 경과

- 2021. 12. 27. : 고충민원 접수
- 2022. 1. 13. :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 및 자료 제출(위원회↔회계과, 북구 회계담당관, 환경미화과)
- 2022. 1. 27. : 고충민원 관련 회의(1차)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협의
- 2022. 2. 15. : **제도개선 기획조사 계획 수립**
- 2022. 2. ~ 3. : 자료수집 및 조사, 관련법령 검토, 타지자체 사례분석, 의견수렴·협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2022. 2. 16. : **고충민원 관련 회의(2차)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협의**
- 2022. 2. 18.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및 의견 조회(위원회→구·군)
- 2022. 3. 2. : **고충민원 관련 회의(3차)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협의**
- ※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심위원, 제도개선담당, 시 회계과 및 자원순환과, 구·군 환경담당 참석
- 2022. 3. 3.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및 의견 조회(위원회→회계과)
- 2022. 3. 11.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부서 의견 화신(회계과→위원회)**
- 2022. 3.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최종 확정**

〈 주요 언론보도 사례 〉

- 남구, ‘폐기물 운반수수료’ 불법지급 의혹 논란 확산 (울산제일일보, '22.03.04.)
- ‘울산 생활폐기물 처리 독점 체제’ 변화 오나 (울산매일, '22.01.20.)
- 수십년 특정업체 계약 울주군, 신규 진입 제한 행정소송 패소 (울산매일, '22.01.19.)
- 쓰레기 운반업 독점... 기울어진 기준 (ubc, '22.01.11.)
- 울산 북구지역 생활폐기물 업체 4곳 20여년간 ‘유지’... (울산매일, '20.06.15.)

II. 일반 현황 및 실태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 폐기물 분류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 폐유, 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 **생활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일반가정쓰레기(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포함), 시장쓰레기 등을 통칭하며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

[표 1. 폐기물 분류체계]



☑ 생활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를 대행할 수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을 말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구·군 위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관련법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맞게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여야 함

※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2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표 2.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 울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체계로 구분

- 울산시 관내 5개 구·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관할구역 내 권역(영업구역)을 나누어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민간업체에 대행(용역)하여 처리

※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류쓰레기, 대형폐기물 등을 생활폐기물로 수집·운반함

- 2022. 1월 기준 구·군별 업체수와 권역수를 살펴보면 <표 3>, <표 4>와 같으며,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업체수와 권역수가 동일함

[표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 현황]

구·군	구분	상호	대표자	구·군	구분	상호	대표자
계		26개					
중구 (6)	1	(주)○○○○○	최○○	북구	1	○○○○(주)	김○○
	2	○○○○	홍○○		2	○○○○(주)	김○○
	3	(주)○○○○○	방○○		3	○○○○(주)	연○○
	4	○○○○(주)	박○○		4	○○○○(주)	이○○
	5	○○○○(주)	김○○		5	(주)○○○○○	이○○
	6	○○○○(주)	최○○		6	○○○○○(주)	김○○
남구 (4)	1	○○○○(주)	김○○		7	○○○○○○○○(주)	방○○
	2	○○○○(주)	김○○		8	○○○○	김○○
	3	○○○○(주)	김○○	울주군	1	○○○○(주)	엄○○
	4	○○○○(주)	손○○		2	(○○)○○○○	손○○ 외 2
동구 (5)	1	(주)○○○○○	홍○○		3	(○○)○○○○	송○○
	2	○○○○(주)	김○○				
	3	○○○○	이○○				
	4	○○○○	이○○				
	5	○○○○	이○○				

[표 4.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현황]

구·군	대행업체		대행구역(권역)	비고
계	22개			
중구 (6)	1권역	(주)○○○○○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종량제, 재활용, 공사장, 대형
	2권역	○○○○○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종량제, 재활용, 공사장, 대형
	3권역	(주)○○○○○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종량제, 재활용, 공사장, 대형
	4권역	○○○○○(주)	병영1·2동	종량제, 재활용, 공사장, 대형
	5권역	○○○○○(주)	학성동, 성안동, 반구1·2동, 복산1·2동, 병영1·2동, 약사동	음식물
	6권역	○○○○○(주)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음식물
남구 (4)	1권역	○○○○○(주)	신정1·2·3동, 선암동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공사장
	2권역	○○○○○(주)	달동, 삼산동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공사장
	3권역	○○○○○(주)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공사장
	4권역	○○○○○(주)	신정4동, 아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공사장
동구 (5)	1권역	○○○○○(주)	방어동	종량제, 음식물, 공사장, 대형
	2권역	○○○○○	화정동, 전하2동(남쪽)	종량제, 음식물, 공사장, 대형
	3권역	○○○○○	일산동, 전하2동(북쪽)	종량제, 음식물, 공사장, 대형
	4권역	○○○○○	대송동, 전하1동	종량제, 음식물, 공사장, 대형
	5권역	(주)○○○○○	남목1·2·3동	종량제, 음식물, 공사장, 대형
북구 (4)	1권역	○○○○○(주)	농소1동, 농소2동	종량제, 대형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공사장
	2권역	○○○○○(주)	농소3동	종량제, 대형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음식물
	3권역	○○○○○(주)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종량제, 대형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음식물, 공사장
	4권역	○○○○○(주)	양정동, 염포동	종량제, 대형
			농소1·2·3동, 강동동	재활용
울주군(3)	1권역	○○○○○(주)	범서읍, 온양읍, 웅촌면, 두동면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대형
			범서읍,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공사장
	2권역	(○○)○○○○○	언양읍, 삼남읍, 두서면, 상북면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대형
	3권역	(○○)○○○○○	온산읍, 서생면, 청량읍, 삼동면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대형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 삼동면	공사장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

☑ 관련법령

-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등)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법 제1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한국환경공단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대행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에는 **대행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북구의 경우를 예로 들었음

☑ 울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

- 울산시 관내 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의 계약방식을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음
- 대행 업체의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기간은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울주군 27년 이상, 북구 20년 이상이며, 그 외 구(區)에서도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북구의 경우에는 ○○환경(주)의 신규업체 참여기회 제공 등 민원 제기에 따라, 대행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2021년부터 대행 영역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로 시행 하였음

[표 5.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

구·군	대행업체	폐기물분류	대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식	비고
중구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520,052	수의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642,797	수의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93,907	수의계약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수의계약	
	○○○○○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860,592	수의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735,556	수의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124,710	수의계약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수의계약	
		원도심	2022.1.1. ~ 12.31.	445,622	수의계약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119,034	수의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559,188	수의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115,084	수의계약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수의계약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561,021	수의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401,726	수의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106,664	수의계약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수의계약	
	○○○○(주)	음식물류	2022.1.1. ~ 12.31.	1,059,743	수의계약	
	○○○○(주)	음식물류	2022.1.1. ~ 12.31.	967,914	수의계약	

[표 5.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계속)]

구·군	대행업체	폐기물분류	대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식	비고
남구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109,487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935,694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761,746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274,729	수익계약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691,006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1,139,352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821,710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305,267	수익계약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655,696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807,991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755,660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267,812	수익계약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404,542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660,646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609,861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218,219	수익계약	
동구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620,395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38,624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386,848	수익계약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739,180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123,998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378,896	수익계약	
	○○○○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450,384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77,126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198,018	수익계약	
	○○○○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414,744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78,008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237,918	수익계약	
	○○○○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454,080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71,736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258,666	수익계약	

[표 5.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현황(계속)]

구·군	대행업체	폐기물분류	대행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식	비고
북구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995,392	입찰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295,365	입찰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입찰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411,404	입찰	
		음식물류	2022.1.1. ~ 12.31.	952,778	입찰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입찰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036,953	입찰	
		음식물류	2022.1.1. ~ 12.31.	1,132,540	입찰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274,438	입찰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입찰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375,675	입찰	
		재활용품	2022.1.1. ~ 12.31.	654,458	입찰	
		대형폐기물	2022.1.1. ~ 12.31.	독립채산제	입찰	
		폐형광등 외	2022.1.1. ~ 12.31.	105,687	입찰	
울주군	(주)○○○○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546,929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955,843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935,507	수익계약	
		대형폐기물 등	2022.1.1. ~ 12.31.	235,412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125,504	입찰	
	○○○○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083,124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847,263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746,985	수익계약	
		대형폐기물 등	2022.1.1. ~ 12.31.	331,471	수익계약	
	○○○○	종량제봉투	2022.1.1. ~ 12.31.	1,348,730	수익계약	
		음식물류	2022.1.1. ~ 12.31.	672,940	수익계약	
		재활용품	2022.1.1. ~ 12.31.	735,672	수익계약	
		대형폐기물 등	2022.1.1. ~ 12.31.	249,731	수익계약	
		공사장생활폐기물	2022.1.1. ~ 12.31.	85,362	입찰	

☑ 울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 변경 계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영역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례 및 감사원 감사사례 등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근거한 수의계약은 부적정함
- 이에, 구·군에서는 2023년부터 대행 계약(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및 자유로운 입찰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

- 법령해석례 : 법제처 21-0153, 2021. 6. 8., 민원인
- 민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첨부 2]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계약의 방식에 관한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함
- 같은 항 제8호 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그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제3자에게 자유로운 계약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바, 법령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자 간 경쟁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 결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정한 것일 뿐, 제3자에게 자유로운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의 예외적인 계약 형태인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음

- 감사원 감사사례 : (소관기관) ○○시 등 9개 지자체 (감사기간) '19. 12. 2. ~ '20. 1. 14.
-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첨부 2]

-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법령에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한국환경공단과 다르게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폐기물처리업자와 체결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음

3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시·도 및 시·도 관할구역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로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는 기술용역, 학술용역 이외의 **일반용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2019. 11. 4. 공고하였음**(공고 제2019-1401호)

※ 적격심사는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울산시 관내 5개 구·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게 됨
- 세부기준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용역”을 적용받게 되며,
-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3], [별표4], [별표5]를 적용받게 되고, 제5조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세부기준 [별표1] 가항에 따르면, 적격심사는 해당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입찰가격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심사는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의 3개 항목을 심사함

[표 6.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단순노무 등), [별표1] 가.항]

(금액 : 추정가격,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합계			100	100	100	100	
1. 해당 구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 내 구역이행실적	35	25	10	-	
	경영상태	• 재무비율	30	20	15	10	입찰자 선 택
		• 신용평가등급					
	특별신인도	• 해당구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구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	-	+2	
	신인도	가.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경제기업 라. 중소기업 마. 공동수급체 구성 바.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자~카. 계약질서준수 등	+5.25 ~ △8.0	+5.25 ~ △8.0	+5.25 ~ △8.0	+5.25 ~ △8.0	구역수행능력배 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계		65	45	25	10	
2.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	
3.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30	50	70	90	

- 세부기준 [별표1] 나항에 따르면, 세부심사기준은 해당구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인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요소 및 등급별 평점**을 정하고 있으며, 이행실적은 최근 3년 내 구역이행실적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표 7. 세부심사기준(단순노무 등), [별표1] 나.항]

(금액 : 추정가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이행실적	배점한도		35	25	10	-		
	• 최근 3년 내 용역이행실적	가) 100% 이상	35	25	10	-		
		나) 75% 이상 ~ 100% 미만	31.5	22.5	9			
		다) 50% 이상 ~ 75% 미만	28	20	8			
		라) 25% 이상 ~ 50% 미만	24.5	17.5	7			
		마) 0% 이상 ~ 25% 미만	21	15	6			
경영상태 (선택)	배점한도		30	20	15	10		
	• 재 무 비 율	자기자본	A. 100% 이상	15	10	8	5	
			B. 70% 이상 ~ 100% 미만	13.5	9	7.2	4.5	
			C. 40% 이상 ~ 70% 미만	12	8	6.4	4	
		총자산	D. 10% 이상 ~ 40% 미만	10.5	7	5.6	3.5	
			E. 10% 미만	9	6	4.8	3	
			유동자산	A. 100% 이상	15	10	7	5
		B. 70% 이상 ~ 100% 미만		13.5	9	6.3	4.5	
		C. 40% 이상 ~ 70% 미만		12	8	5.6	4	
		유동부채		D. 10% 이상 ~ 40% 미만	10.5	7	4.9	3.5
				E. 10% 미만	9	6	4.2	3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30	20	15	10		
		기업어음	29	19	14	9		
		기업신용평가등급	28	18	13	8		
		(등급별로 평가)	27	15	10	6		
			24	-	-	-		

- 세부기준 [별표3]은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별표4]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5]는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등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업체 낙찰자 선정 불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일반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게 되며,
 -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나, 현행 세부기준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업체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낙찰받기 불가능한 실정임
- ※ 배점차가 10억원 이상은 △14점, 5~10억원은 △10점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 불가

☑ 개선방안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용역”으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용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아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도입이 필요함
 - 현행 세부기준으로는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신규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 불가하므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의 배점한도(등급별 평점) 등을 완화하고 낙찰자 결정의 종합평점 적용 등을 개선하여 신규업체의 입찰 진입제한 해소가 필요함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신규업체의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제공 및 고충민원 해소
- ※ 생활폐기물 심사기준 별도 적용 : 6개 시·도(서울, 대구, 세종, 전북, 전남, 경남)

개선방안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도입

-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은 별도 세부기준 없어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구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별표1]
- (개정) 「울산광역시 일반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가로 도입 [별표1-1]
- (개정내용)

[산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구역”이란 일반구역 중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구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운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2. ----- ----- ----- ----- ----- 구역 ----- -----. (삭제)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구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구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구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구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구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 ----- ----- ----- ----- ----- ----- ----- (현행과 같음)

개선방안2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등 완화

• **(현행)**

- 해당응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의 배점차가 14점(10억원 이상), 10점(5~10억원)으로, 최저가로 입찰하여도 신규업체의 낙찰자 선정 불가
- “경영상태”의 배점한도가 30점(10억원 이상)으로, 타시·도와 비교 시 현행 기준이 높은 편임(서울 15점, 대구 20점, 전북 10점, 경남 20점)
- 낙찰자 결정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단순노무 등 적용)

• **(개정)**

- 해당응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배점한도 조정 및 배점차 완화(10%→5%)
- 이행실적 외 “수행능력(수집·운반차량 확보)” 심사분야 평가항목 추가
 - * 적용현황 : 서울, 대구, 전북, 전남, 경남 5개 시·도 생활폐기물 용역에 적용
 - ** 평가방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정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수집·운반 차량 등의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
- 기업체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 적용(3년→5년)
- 신규업체 재무상황을 고려한 “경영상태” 배점한도 조정 및 배점차 완화(10%→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 시 **중대재해 예방능력(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 등을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 등 **신인도 심사분야 평가항목 신설**
 - * 적용현황 : 서울(2022. 1. 20.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예정
 - ** 평가방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2점),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1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1점)
- 낙찰자 결정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인 자(일반응역 동일 적용)

• (주요개정내용)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등 개정안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배점한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합계				100	100	100	100	
1. 해당구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용역이행실적 (3년 → 5년)	가) 100% 이상	35	30	25	20	
			나) 75% 이상 ~ 100% 미만	31.5	28.5	22.5	19	
			다) 50% 이상 ~ 75% 미만	28	27	20	18	
			라) 25% 이상 ~ 50% 미만	24.5	25.5	17.5	17	
			마) 0% 이상 ~ 25% 미만	21	24	15	16	
	수행능력 (신설)	• 적정장비보유 -수집·운반 차량확보비율	가) 100% 이상	-	15	-	10	
			나) 80% 이상 ~ 100% 미만	-	13.5	-	9	
			다) 80% 미만	-	12	-	8	
	경영상태 (선택)	• 재 무 비 율	자기자본	A. 100% 이상	15	10	10	8
				B. 70% 이상 ~ 100% 미만	13.5	9.5	9	7.6
				C. 40% 이상 ~ 70% 미만	12	9	8	7.2
				D. 10% 이상 ~ 40% 미만	10.5	8.5	7	6.8
				E. 10% 미만	9	8	6	6.4
			유동자산	A. 100% 이상	15	10	10	7
				B. 70% 이상 ~ 100%미만	13.5	9.5	9	6.7
				C. 40% 이상 ~ 70%미만	12	9	8	6.3
				D. 10% 이상 ~ 40%미만	10.5	8.5	7	6
				E. 10% 미만	9	8	6	5.6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30	20	20	15	
			기업어음	29	19	19	14	
			기업신용평가등급	28	18	18	13	
			(등급별로 평가)	27	17	15	12	
				24	16	-	-	
	신인도	•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변경사항) 자. 부적정처리가능성 적용(△3점) 타. 안전보건 확보(+2점) 파. 안전보건 위반(△2점)	+5.25 ~ △8.0	+7.25 ~ △13.0	+5.25 ~ △8.0	+7.25 ~ △13.0		
			계	65	65	45	45	
	2.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5	5	5	5	
	3.입찰가격		동일 적용(낙찰하한율 87.745% 보장)	30	30	50	50	

• (개정내용)

[신규 대조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일반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합계			100		합계			100	
1. 해당구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 내 구역이행실적	35		1. 해당구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구역이행실적	3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30	※입찰자 선택		수행능력	◦ 수집·운반차량확보	15	
		2) 신용평가등급	30			1) 재무비율	20	※입찰자 선택	
	신인도	◦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5.25 ~ △8.0	구역수행 능력배점 한도에서 합산적용		2) 신용평가등급	20		
계			65		신인도	◦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7.25 ~ △13.0	구역수행 능력배점 한도에서 합산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5		계			65	
3. 입찰가격		(생략)	30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5	
					3. 입찰가격		(생략) ※ 낙찰 하 한 율 87.745%	30	
나. 세부심사기준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단위 : 점)					1) 이행실적 :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이행실적	◦ 최근 3년 내 구역이행실적	가) 100% 이상	35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구역이행실적	가) 100% 이상	30	
		나) 75% 이상~100% 미만	31.5				나) 75% 이상~100% 미만	28.5	
		다) 50% 이상~ 75% 미만	28				다) 50% 이상~ 75% 미만	27	
		라) 25% 이상~ 50% 미만	24.5				라) 25% 이상~ 50% 미만	25.52	
		마) 0% 이상~ 25% 미만	21				마) 0% 이상~ 25% 미만	4	
〈신설〉					2) 수행능력 : 15점(신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수행능력	◦ 적정장비 확보	가) 100% 이상	15		수행능력	◦ 적정장비 확보	가) 100% 이상	15	
		나) 80% 이상~100% 미만	13.5				나) 80% 이상~100% 미만	13.5	
		다) 80% 미만	12				다) 80% 미만	12	

현행			개정안				
나. 세부심사기준(계속)			나. 세부심사기준(계속)				
2) 경영상태 : 30점			3)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left(\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right)$	가) 100% 이상 나) 70% 이상~100% 미만 다) 40% 이상~ 70% 미만 라) 10% 이상~ 40% 미만 마) 10% 미만	15 13.5 12 10.5 9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left(\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right)$	가) 100% 이상 나) 70% 이상~100% 미만 다) 40% 이상~ 70% 미만 라) 10% 이상~ 40% 미만 마) 10% 미만	10 9.5 9 8.5 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left(\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right)$	가) 100% 이상 나) 70% 이상~100% 미만 다) 40% 이상~ 70% 미만 라) 10% 이상~ 40% 미만 마) 10% 미만	15 13.5 12 10.5 9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left(\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right)$	가) 100% 이상 나) 70% 이상~100% 미만 다) 40% 이상~ 70% 미만 라) 10% 이상~ 40% 미만 마) 10% 미만	10 9.5 9 8.5 8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A		AAA	30.0	AAA		AAA	20.0
AA+ AA° AA-	A1	AA+ AA° AA-	30.0	AA+ AA° AA-	A1	AA+ AA° AA-	20.0
A+	A2+	A+	30.0	A+	A2+	A+	20.0
A°	A2°	A°	30.0	A°	A2°	A°	20.0
A-	A2-	A-	30.0	A-	A2-	A-	20.0
BBB+	A3+	BBB+	30.0	BBB+	A3+	BBB+	20.0
BBB°	A3°	BBB°	30.0	BBB°	A3°	BBB°	20.0
BBB-	A3-	BBB-	30.0	BBB-	A3-	BBB-	20.0
BB+ BB°	B+	BB+ BB°	29.0	BB+ BB°	B+	BB+ BB°	19.0
BB-	B°	BB-	28.0	BB-	B°	BB-	18.0
B+ B° B-	B-	B+ B° B-	27.0	B+ B° B-	B-	B+ B° B-	17.0
CCC+이하	C 이하	CCC+	24.0	CCC+이하	C 이하	CCC+	16.0

현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응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항응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합 계			100	
1.해당응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 내 응역이행실적	25		1.해당응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응역이행실적	2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20	※입찰자 선 택		수행능력	◦ 수집·운반차량확보	10	
		2) 신용평가등급	2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신 인 도	◦ [별표 3] 2.신인도 평가기준	+5.25 ~ △8.0	응역수행 능력배점 한도에서 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3] 2.신인도 평가기준	+7.25 ~ △13.0	응역수행 능력배점 한도에서 합산적용
2.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3.지역업체 참여도	5		2.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3] 3.지역업체 참여도	5	
3.입찰가격		(생략)	50		3.입찰가격		(생략) ※ 낙 찰 하 한 율 87.745%	50	
나. 세부심사기준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단위 : 점)					1) 이행실적 :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이행실적	◦최근 3년 내 응역이행실 적	가) 100% 이상		25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응역이행실적	가) 100% 이상		20
		나) 75% 이상~100% 미만	22.5	나) 75% 이상~100% 미만			19		
		다) 50% 이상~ 75% 미만	20	다) 50% 이상~ 75% 미만			18		
		라) 25% 이상~ 50% 미만	17.5	라) 25% 이상~ 50% 미만			17		
		마) 0% 이상~ 25% 미만	15	마) 0% 이상~ 25% 미만			16		
〈신설〉					2) 수행능력 : 10점(신설)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점
수행능력	◦적정장비 확보	가) 100% 이상		10	수행능력	◦적정장비 확보	가) 100% 이상		10
		나) 80% 이상~100% 미만	9	나) 80% 이상~100% 미만			9		
		다) 80% 미만	8	다) 80% 미만			8		

현행			개 정 안				
나. 세부심사기준(계속)			나. 세부심사기준(계속)				
2) 경영상태 : 20점			3)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가) 100% 이상	1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가) 100% 이상	8		
	나) 70% 이상~100% 미만	9		나) 70% 이상~100% 미만	7.6		
	다) 40% 이상~ 70% 미만	8		다) 40% 이상~ 70% 미만	7.2		
	라) 10% 이상~ 40% 미만	7		라) 10% 이상~ 40% 미만	6.8		
	마) 10% 미만	6		마) 10% 미만	6.4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가) 100% 이상	1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가) 100% 이상	7		
	나) 70% 이상~100% 미만	9		나) 70% 이상~100% 미만	6.7		
	다) 40% 이상~ 70% 미만	8		다) 40% 이상~ 70% 미만	6.3		
	라) 10% 이상~ 40% 미만	7		라) 10% 이상~ 40% 미만	6		
	마) 10% 미만	6		마) 10% 미만	5.6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A		AAA	20.0	AAA		AAA	15.0
AA+ AA° AA-	A1	AA+ AA° AA-	20.0	AA+ AA° AA-	A1	AA+ AA° AA-	15.0
A+	A2+	A+	20.0	A+	A2+	A+	15.0
A°	A2°	A°	20.0	A°	A2°	A°	15.0
A-	A2-	A-	20.0	A-	A2-	A-	15.0
BBB+	A3+	BBB+	20.0	BBB+	A3+	BBB+	15.0
BBB°	A3°	BBB°	20.0	BBB°	A3°	BBB°	15.0
BBB-	A3-	BBB-	20.0	BBB-	A3-	BBB-	15.0
BB+ BB°	B+	BB+ BB°	20.0	BB+ BB°	B+	BB+ BB°	15.0
BB-	B°	BB-	19.0	BB-	B°	BB-	14.0
B+ B° B-	B-	B+ B° B-	18.0	B+ B° B-	B-	B+ B° B-	13.0
CCC+이하	C 이하	CCC+	15.0	CCC+이하	C 이하	CCC+	12.0

현행			개정안	
[별표 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별표 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2. 신인도 평가기준			2.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점)		심사항목	배점(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등에 의한 용역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 등에 의한 용역에 한함) 1) ~ 2) (생략)		△6.0	아.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 등에 의한 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한함) 1) ~ 2) (현행과 같음)	△6.0
자. 부적정처리 가능성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 3) (생략)	△3.0		자. 부적정처리 가능성 (폐기물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한함) 1) ~ 3) (현행과 같음)	△3.0
차. ~ 카. (생략)			차. ~ 카. (현행과 같음)	
			타. 안전보건 확보(신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0
			파. 안전보건 위반(신설)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1.0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2.0
			[주] 13. “타”목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한다. 14. “파”목 안전보건 위반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화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IV. 제도개선 권고



☑ 권고사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업체 낙찰자 선정 불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일반입찰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경우, 낙찰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게 되나,
- 현행 세부기준으로는 신규업체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낙찰받기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권고사항 :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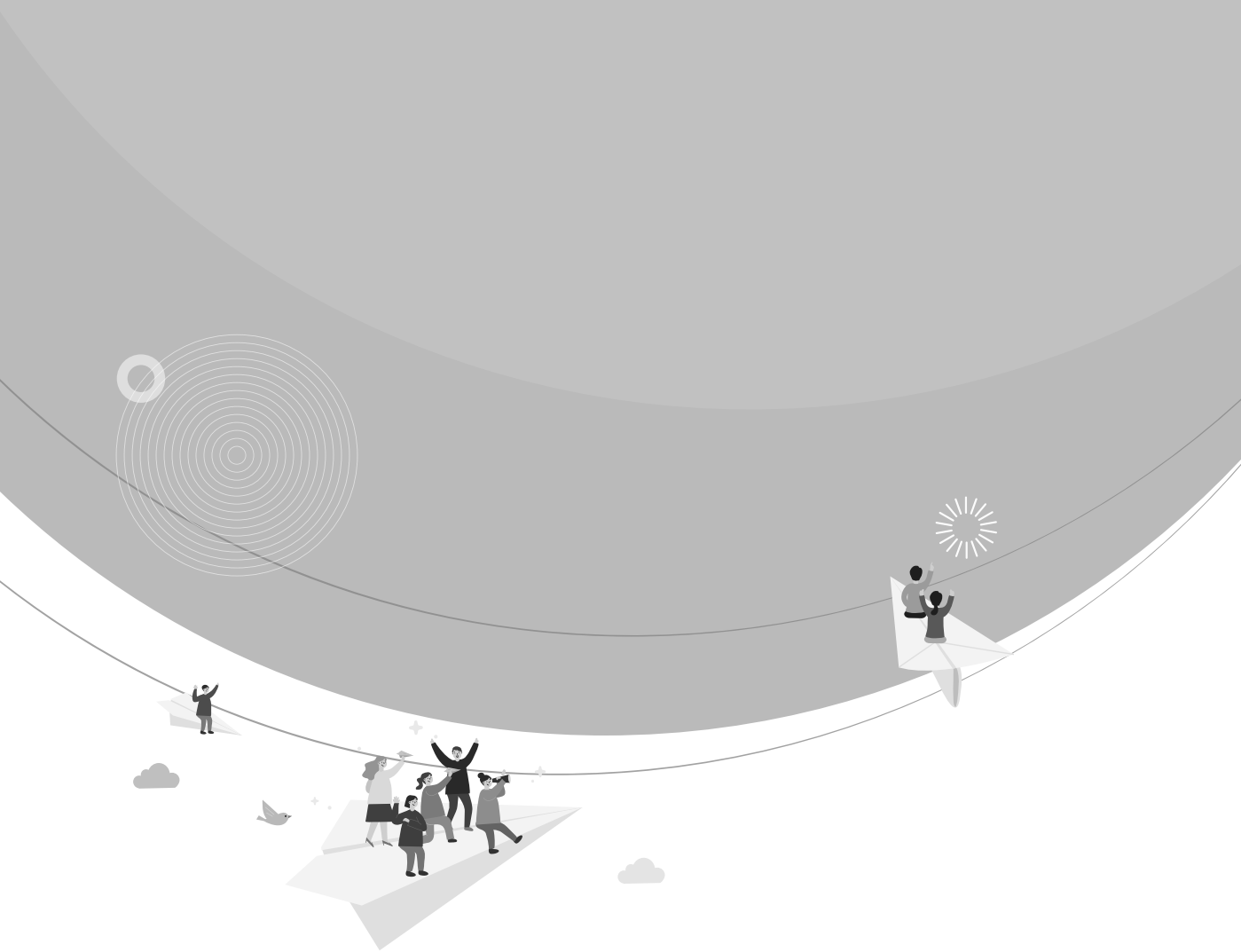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용역”의 기준을 적용하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용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한도(등급별 평점)를 완화·조정하는 등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신규업체의 입찰 진입제한 해소 등으로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제공 및 고충민원 해소
- 아울러, 위원회에서 개선방안으로 검토한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정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등의 원활한 입찰 및 계약체결, 용역 수행 등이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 관리 등 철저

☑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장(회계과장)

조치결과 ⇒ 권고 수용(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기타 활동 분야 실적

1. 시민고충민원상담실 운영
2.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 국제 옴부즈만기구 회원가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역량강화

1

시민고충민원상담실 운영

☑ 운영배경

-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권익침해 및 불편·부담 사항에 대해 상담위원과 민원인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공간 필요
 - 고충상담에 있어서 타인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 가능
- ※ 민원접수 : 총 78건 (방문 57, 인터넷 10, 우편 6, 팩스 5)

☑ 운영방법

- (상 담 실) 울산광역시 의회 1층, 위원 1명 상담실 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7:00 (6시간)
- (민원상담) 민원 상담에 있어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는 해당 절차를 알려주거나 상담 통해 해결 가능한 민원은 상담하면서 처리
 -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접수하고 조사과정을 거쳐 고충민원 해결

☑ 기대효과

- 위원이 직접 상담함으로 민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민원인은 민간위원으로부터 직접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민원처리의 신뢰성 확보

2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운영목적

- 구·군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청취와 상담,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
-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생활민원 상담(법률, 노무, 금융, 세무 등) 등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분기별 1회 운영 계획이며, 2022년은 코로나19와 조직개편, 위원교체 등 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1회 운영
- 위원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2022. 9.)하고, 11. 28.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총 10건의 민원상담을 하여 6건에 대해서는 현장 처리하고, 4건은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

☑ 고충민원 처리현황 : 총 4건 (심의안내 2, 기각 1, 각하 1)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2022. 11. 28.,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 국제 옴부즈만기구 회원 가입

☑ 가입배경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익보호기구로서 대내외적 위상 제고
- 세계의 우수 옴부즈만 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우수한 제도 및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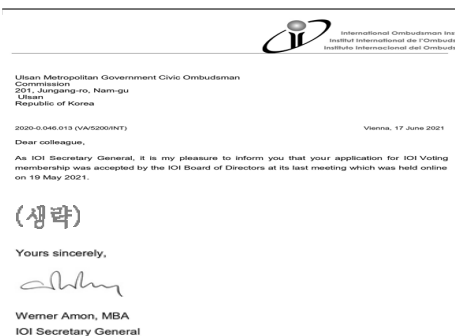
☑ 가입현황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2021. 3. 2. : 가입 신청서 제출 (사무국 : 오스트리아)
 - 2021. 5. 19. : 정회원 가입 (투표권 및 입후보권을 가짐)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 Ombudsman Association)
 - 2022. 3. 14. : 회원가입(정회원) 신청 (사무국 : 파키스탄)
 - 2022. 10. 18. : 이사회 승인 (임시회원 지위 획득)
- ※ 2023년 : 총회개최 → 정회원 가입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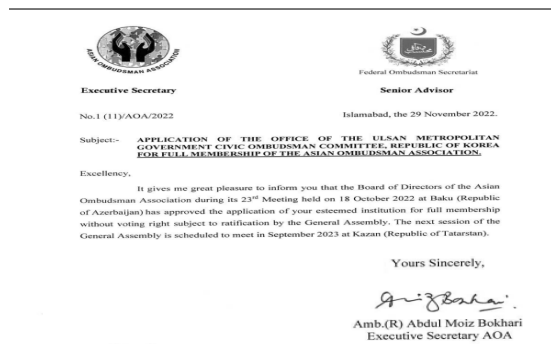
☑ 향후계획

- AOA 정회원 가입과 국제기구(IOI과 AOA)와 상호 협력방안 모색

IOI 정회 가입 승인



AOA 이사회 승인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역량강화

☑ 추진배경

- 민원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응대 방법,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절차,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민원업무 처리능력 배양
- 관련 법규를 숙지시키고 위원·조사관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력 제고

☑ 추진현황

- 2022. 9 28. : 신규 위촉위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 참석 위원 5명, 위원의 업무 소개 및 역할 안내
- 2022. 11. 2.~3. : 중앙정부(국민권익위)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참석
 - 3명 참석(위원 2, 조사관 1), 고충민원 처리제도·대응기법, 보고서 작성 방법
- 2022. 11. 7. : 위원회 역량강화 자체 워크숍 개최
 - 참석 10명(조사관 3, 위원 5 등), 타 시·도 위원회 운영 및 고충민원처리 사례, 고충민원 처리방안 및 위원회 역할 등 발표·토론

☑ 향후계획

- 민원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 지속 추진
 - 중앙정부 교육, 자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민원처리 사례 검토 등

역량강화 워크숍 (2022. 11. 7.)





참고

1. 주요 언론 보도사례
2.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언론보도 사례

경상일보

민선8기 울산 시민고충처리위 본격 가동

기존의 시민신문고위 강화

고충민원 담당 전문성 제고

민선 7기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민선 8기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8일 시청 시장실에서 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민선 8기 시는 시민신문고위원의 사무 중 고충민원 처리 업무 중 기능이 유사한 인권담당관실 업무와 합쳐 권익인권담당관실로 통합하고, 고충민원지원계에서 시민고충처리위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재홍 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 부위원장은 시의회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윤정복 전 시의원. 위원에는 강승모 변호사, 박호수 전 남구 경제복지국장, 이상일 전 시 농수산 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위촉했다.

시 고충민원지원계에서 조사 업무 담당 2명을 지원하고, 1명은 국민신문고와 관련된 시 업무를 총괄한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시민신문고위원과 달리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한다. 보수는 5급 상당 수준으로 지급한다.



2022년 09월 29일 (목)
02면 종합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시청사무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 윤정복 부위원장 등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

시는 고충민원 처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신변 보장을 강화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보다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충환기자 bono@kailbo.co.kr

울산신문

2022년 11월 25일 (금)
02면 종합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첫 운영

세무·노무 등 생활민원 상담

울산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과 다양한 생활민원 상담을 위해 이번에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찾은 곳은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다.

현장에서 울산시와 소속기관 등의 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등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하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세무·노무·금융 등 생활민원까지 함께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에 약속 하거나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는 전문가의 답변과 조사가 필

요한 내용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직 시의원, 변호사, 교육·행정직 출신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지난 9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말 현재까지 중구 혁신도시 내 오수관 약취 관련 고충민원 해결 등 20여 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불만사항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을 위해서 보다 많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주요 언론보도 사례

울산매일TV

HOME > 포토 > 포토뉴스

민선8기 제1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우성만 기자 | ⓒ 승인 2022.11.28 17:17



민선8기 제1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8일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해결과 생활민원 상담처리의 시간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민선8기 제1회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8일 중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해결과 생활민원 상담처리의 시간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경상일보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개최

우수 민원해결 사례 등 공유

울산·경남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성과와 우수 민원 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울산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울산·경남 지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읍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2개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된 지자체인 시와 울산 남·북구, 울주군, 경남 양산시가 참석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 설치를 검토·준비 중인 울산 중·동구 관계자도 함께했다.

협의회에서는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상호 협력 강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민고충처리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의 활동 내용과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결한 우수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의 집단 민원 해결 사례를 통해 민원 처리 기법과 노하우도 소개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 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도 빠른 시일 안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주요 언론보도 사례

2023년 02월 06일 (월)
03면 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울산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 양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 발표 및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울산매일"

2023년 02월 06일 (월)
03면 종합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울산시 권익인권담당관·시민고충처리위원, 양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우수사례 발표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7-26 조례 제 1874호

(일부개정) 2020-10-29 조례 제 2244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2-09-08 조례 제 26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법 제35조의 준용 규정인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구·군(시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9조(전문가의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 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 부국장,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사무 부국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운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⑬ 생략

- ⑭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으로 한다.

⑮ ~ ⑳ 생략

부 칙 (개정 2022. 9. 8. 조례 제263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제3조제5항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계속 중인 고충민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12-29 규칙 제 100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의안작성·배부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주심위원(해당 고충민원의 안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5조(활동비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하한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 이외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합의·조정서 작성)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사결과보고서) 주심위원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하 또는 이송: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0조(결정의 통지) ① 법 제49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별지 제10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11조(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사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3조 제3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자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조사대상 기관의 처리결과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17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민원 서류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 수 번 호	제 -고- 호	처리기간
접수년월일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				
기타참고사항		· 소송 또는 다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인터넷 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일로 부터 처리 완료일 및 문서 보존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고충민원 신청자의 당사자 적정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단체명칭)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29-3961~3964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20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조사관	위원

위원장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	주소		
파신청인	○○○	접수일	20	. . .

1. 신청취지
2. 파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쟁점
5. 관계법령
6. 조사자의 의견
7. 제도개선 필요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 없음
8. 법률구조 필요여부

☐ 법률구조 필요 ☐ 의견 없음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 (인)

※ 관계법령, 출장 결과보고서, 출석조사서 등 붙임

[별지 제8호서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주문

신청취지

이유 별지와 같다.

20

위 원 장 (서명)

주심위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이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관계법령
5. 판단
6. 결론

[별지 제9호서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

의 안 명 :

소관기관 :

결정사항 :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 원 장 (서명)

주심위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이유

1. 현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별지 제10호서식]

가. 조사대상 기관의 장 통보용(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피신청인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불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이유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	----

시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0000 팩스번호 052-229-3929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나. 신청인 통보용(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신청인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의견)를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존중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	----

시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0000 팩스번호 052-229-3929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다. 제도개선(피신청인) 통보용(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신자 피신청인

(경유)

제 목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1.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불임 의결서 기재와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의견표명)하니, 조치기한 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개선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0000.00.00.까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 귀 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이후 1개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	----	----	----	-----	----

시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일련번호(접수일자)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전화번호 052-229-0000 팩스번호 052-229-3929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02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http://www.ulsan.go.kr>

편집 울산광역시 권익인권담당관(052.229.3931~4)

디자인·인쇄 인쇄마을 052.227.3040